

인권정보자료실
R1.1.3

인권하루소식

합본 Ⅲ 호
(제201~300호)



1995. 4

민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합본 Ⅲ 호 1995. 4

인권정보자료실
R1.1.3

민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8월분 총목차(218호-238호)

일일	호	면	기 사 제 목
8/17	228	1	강기훈, 이제야 나왔다, 17일 새벽 만기출소, 강씨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2	'대량구속은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는 구태', 재일인권단체, 재일정치범 및 양심수 석방 촉구/경상대교수 소환·수사철회' 서명운동 본격화, 13일 학문·사상·표현공대위/전해투 하계수련회, 8월 18-20일/경상대 『한국사회의 이해』 강의 폐강/인터뷰: '유서대필 사건'으로 만기출소한 강기훈씨
8/18	229	1	경상대교수, 강좌폐지에 방생항의농성, 충북대교수 28명, 정치적 이유로 폐강 철회해야, 사상·학문의 자유침해에서 교권, 교육권 유린으로, 당국에 무조건 동조하는 언론의 자세 반성 촉구, 17일 충북대 교수
		2	이창복 의장, 황인성 집행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시한넘겨 영장발부, 긴급구속요건 미비"/변호인접견 거부한 서대문경찰 임종처벌 요구, 변협, '현재에서 확인된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 위배/여성의 전화, 민우회등 상담교육 시작/고압제 후유증에 시달리다 자살
8/19	230	1	이창복·황인성씨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 촉구, 국제사면위 17·18일 연이어 입장 발표, 국보법, 표현·결사의 권리등 국제기군 어긋난다
		2	"교수들은 교권, 학생들은 수업권 침해당했다", 학문·사상·표현 공대위, 경상대 총장에 항의서한/법대회 불법 사전규정은 일제 예비검속 논리, 민가협 목요집회 경찰, '폭력시위 발생' 예단/황석영씨 환송심 치공판, 다음 공판 9월 8일/이창복, 황인성씨 18일 검찰송치
8/20	231	1	민교협, "반지성적, 반양심적 박홍총장 사퇴", "경상대 교수에 대한 사상탄압중단"도/부산·경남 민교협, 『한국사회의 이해』 폐강항의 방문/불교인권위, 철도·지하철 노동자 돕기 모금, "불교계의 사회적 약자 등한시 반성"/노동법 교실 개최
		2	단체탐방 29 /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8/23	232	1	올 3-7월 시국구속자 현정부 1년 구속자보다 감질, 22일 민주당 집계통계, 국보법중 이적표현물 소지·배포혐의 33.6%/북한, 비전향장기수 즉각 송환 촉구, "한국국적 획득은 생계유지 위한 부득이한 것"/폐강항의 경상대 방문/사회발전 2차 준비회의 참석, 인권협 등 3개 민간단체
		2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사건이 던지는 의혹
8/24	233	1	민간위로금 철회·전쟁범죄 인정·개인배상, 정대협, 일본의 민간위로금안에 강력 반발, '유엔 공식 조사활동에 협조해야'/경찰의 과도한 시위진압 책임 인정, 서울민사지법, 김귀정씨 유족에 배상판결
		2/3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유엔 첫 공식조사, 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작성위해 아시아국가 방문/최내무장관등 경찰간부 15명 '불법감금' 피소, 부경총련, 범민족대회관련, 손해배상청구도 계획중/성모옥 사건 항소심 공판
8/25	234	1	검찰, 경상대교수 심야 구인 시도, 민교협, "검찰, 문명세계의 웃음거리 자초"/신공안정국 돌파 논의, 민가협 수련회
		2	"『한국사회의 이해』 사법처리 제2막 올라", 24일, 경상대교수 구인시도 의미/기청동 기소, 1명 석방/경상대교수의 강제구인 및 사법처리를 반대하는 사회학교수 90인 성명(전문)
8/26	235	1	"문국진씨, 고문으로 정신병 생겨", 배기영 신경정신과 의사 증언, 문국진씨 제4차 손배소송/외국인노동자 증계실 개설, 8월 29일, YMCA/학문·사상의 자유 대토론회, 8월 29일 공대위/강좌폐강 철회 주력,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외대 용인캠퍼스 3명 구속, 3일동안 잠안제우고 수사
		2	국제인권소식//사회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담 2차준비위 개막, 가난 제거, 생산적 고용, 사회통합 등 다뤄, 여성, 노동, 장애인, 노인, 아동단체등 적극 참가
8/27	236	1	안기부, 사민청 이적단체 몰아 9명 구속, 사민청 85년 결성, 25일 새벽1시경 압수수색, 유초하 교수3등 수배/경상대교수 "구인응할 터", 경찰 대학진입 용납할 수 없어/장애인 고용촉진정책 포기, 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서 1%/공무원 임용탈락 장애인 정강용씨 구제 공대위 결성
		2	단체탐방 30 /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
8/30	237	1	경상대교수 수사, 기본권적 자유 어디까지 추락?, 김영삼정부의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공청회, '통일정책 추진 방해되는 진보학문 탄압 전초전'/YMCA, 외국인 노동자 증계실 열어, '법률구조, 상담, 의료활동등 사업계획'
		2	정신대문제 해결에 한국정부가 나서야, 29일 정대협 토론회, '일본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 필요'/권력에 영합한 사람, 헌법재판관 부적절/민정연간부 긴급구속/경상대교수 구인 응할 것/민교협, 수배 유초하 교수 수배해제 촉구
8/31	238	1	권력야합 정치판사, 헌재재판관 자적없다, 대한변협·민변, '정치판사' 안우만 전 대법관 소장 내정 반대, '헌재민주적 구성' 공청회, 서명운동등 예정
		2/3	<인권하루소식> 8월분 총목차(218호-238호)

인권하루소식

94년 9월

(제239호 - 제255호)

<이달의 주제 -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 사회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약하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장애물의 제거를 통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남총련사건 공판 본격시작

남총련 폭력과 경찰 과잉진압등 논쟁의 장 되어야
 재판부, '학생행위 옳지않다'는 발언 재판공정성 우려

6월 18일 'UR국회비준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 참석차 상경과정에서 열차정차와 홍익대 사태로 무더기 구속을 당했던 남총련의 '6·18' 구속자 58명에 대한 재판이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31일 하루만 해도 서일석(조선대 전기공학4)씨를 포함해 18명이 '기차·선박등 교통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의 혐의 공판에서 징역4년-2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18일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부장판사 이광열) 심리로 진행된 도남준씨등 7명에 대한 공판에서 서울지검의 이호철 검사는 시종일관 남총

련학생들의 열차정지와 폭력시위를 확인하는 수준의 심문을 벌였다. 반면 문한성변호사등은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여의도집회 참여를 원천봉쇄와 최루탄등 과잉진압으로 막은데 원인이 있다"며 "정부가 비준반대에서 비준불가의 입장을 표명하고, 민자당의 국회비준 강행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피의자는 부모 등 농민들의 농촌현실 인식을 위해 UR 비준저지를 위한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피의자 도남준(조선대 산업공학3)씨는 "6백만 농민의 생명이며 국민의 밥상인 UR문제를 두고 강의실

에서 재판보고 있을 수 없었다. 만약 경찰의 강경진압이 없었다면 집회는 무리없이 치뤄졌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편 담당재판부는 심리중에 "잘개방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안할 수 없다. 안한다면 우리나라는 더욱

큰 국제적 문제가 생길 것이다. 허가된 집회라는 이유로 학생들의 행동이 정당화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이런식으로 기차나 탈취해 반대시위를 하면 이는 후진국임을 증명하는 것이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해 공판이 공정하게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학생들의 폭력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채 송정리역 열차정차에 관한 진위등은 제대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검찰의 경상대교수 영장재청구 방침에 비난 빚발 장상환교수등 밤샘농성 계속

장원지법 최인석 판사는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 장상환(43, 경제학)·정진상(36, 사회학) 교수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창원지검은 최태룡(39, 사회학)·이창호(40, 법학) 교수등 5명에 불구속기소를, 김의동(38·무역학)교수등 2명에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창호교수는 영장기각에 대해 "당연하다"는 한마디로 대신했다. 그러나 검찰이 8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구분한 점에 대해 "우리는 공동강의와 공동집필을 했기에 분리하는 옳지 않다. 사법처리를 받는다면 함께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며 계속해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검찰의 영장 재청구 방침에 대해 "법적용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연합, 민교협, 전

국연합 등은 31일 각각 발표한 성명을 통해 검찰의 영장재청구가 학문·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고, 더구나 영장이 기각된 마당에 재청구를 하려는 검찰 태도가 반시대적인 처사라며 △검찰의 영장재청구기도 철회, △학문적 성과를 사법적으로 재단하려는 반민주적 기도 중단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영장기각 이후 교양강좌 『한국사회의 이해』 폐강에 대해 경상대 박구부 교무처장은 폐강은 학교자체의 결정이었다고 전하면서 "이미 학생들이 수강변경을 한뒤라 힘들지만 학내 분위기에 따라 올해 2학기에는 회강을 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일 현재 장상환교수등 8명은 경상대 사회과학대 도서관에서 계속 밤샘농성 중이다(관련자료 2면).

<공청회>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 일시 : 94년 9월 1일(목) 오후4시
-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강당
- 내용
 - 설문결과 발표-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추계발표
 -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인선에서의 참여필요성, 방법 (이승우 경원대 교수)
 - 헌법재판소의 인선방법의 문제점(차병직 변호사)
 -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성향 분석(한상희 경성대 교수)
 - 시민이 원하는 헌법재판관의 상(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
 사법감시센터
 한국공법학회

노동부의 '유령노조' 해산방침, 지금도 유효한가

포항제철 노조 해산 요구 노동자 구속

29일 아침 8시 30분경 포항제철 해고노동자 4명과 가족들은 포철의 '유령노조' 해산과 노조정상화를 위한 단식농성을 서울 포철사무소 앞 인도에서 평화적으로 개최돼 중 남대문경찰서로 연행되었다. 29일 연행과정에서 이정기씨는 경찰로부터 목을

조이고 도로에 내팽겨쳐져 짓밟히는 폭행으로 전치 1주 이상의 상치를 입었고 현재 경찰은 남규원(31, 해고노동자)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긴급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전해두 관계자 10여명은 남대문서와 을지2가 파출소로 향의방문을 갖고 연행된 해고노

동자들은 남대문서에서 강제연행자 처벌과 사과를 요구하며 농성중이다.

포항제철노조는 지난 2년간 조합비 납부, 총회등 일체의 노조활동이 정지된 상태이며 노조원도 14명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포항제철측의 지원을 업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노조원 14명은 지난 7월 29일 총회

소집권자 지명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노조총회를 열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지난 8월 포항제철 노조가 사실상 유령노조라고 판단하고 해산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으나 집행되지 않고 있어 '유령노조'의 해산 및 노조재건설의 행보를 더디게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최인석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전문)

1. 이 사건 강의교재의 내용에 급진좌경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이 우리의 눈에 거슬리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 그 내용이 시중 서점에서 유통되는 진보적 사회과학저작이나 간행물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사상적 건강상태가 그 정도의 내용을 소화해내지 못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보며,

나. 피의자들은, 자신들은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 방법론으로서 마르크스주의를 택하고 있을 뿐이지, 자신들의 사상이 마르크스주의적인 것은 아니며, 자신들은 북한의 체제 및 사회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특히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그들이 남한을 '식민지반자본주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독점적 주권을 갖고 있는 것과 한국에서의 고도자본주의 발전을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이론이며, 수령론, 후계자론등도 독재 및 혈통세습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시대착오적인 이론이라는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고, 그 변명과 비판내용의 깊이의 정연함이 임시로 끈경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기에 는 쉽지 않으며,

2. 피의자들이 강의시간외에 별도로 소위 주사파 등 운동권학생들을 지도하거나 접촉, 교류한 사실이 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이를 강의교재로 한 강좌는 이미 폐강된 점, 학문의 자유 또한 법이 보호하여야 할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인 점등에 비추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 건과 같은 경우, 강의과목이나 고재의 선택과 그 내용에 관한 것은 국가공권력의 개입보다는 대학자신의 자율적 조절기능에 맡기는 것이 여러모로 낫다고 생각되며,

3. 피의자들을 비롯한 집필교수들이 처음에는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나 결국 자진해서 구인에 응하거나 자진하여 출석, 진술하였으므로 도주의 우려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4. 피의자들이 집필대표인 점외에는 이 건 강의교재중 피의자들의 집필부분에 대한 진보성의 정도가 다른 교수들의 집필부분에 비하여 두드러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불구속처치하기로 한 나머지 교수들과 신병처리를 달리하여야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결국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한다.

1994. 8. 31. 판사 최인석

검찰의 이성적인 판단을 촉구한다(발췌)

경상대교수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및 기각에 즈음하여

그동안 검찰의 소환에 불응해오던 경상대교수들이 8월 30일 검찰에 출두하였다(중략).

이들의 이러한 합리적인 행동에 대한 검찰의 반응은 도저히 이성적인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검찰은 자진하여 구인에 응한 장상환, 정진상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직 국립대학 교수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이번 처사는 검찰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과거의 비민주적인 타성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당당히 밝히고 당국의 부당한 출두요구에 의연히 응한 교수들을 구속수사하겠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처사이다(중략).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은 사실상 이는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이해」가 결코 「이적표현물」일 수 없으며 저자들의 행동이 결코 「이적행위」가 될 수 없다는 판단과도 같다. 이와같은 판단은 법조인으로서의 양심과 지식인으로서의 양식에 지극히 합당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와같은 정의로운 결정을 내린 법원의 용기 있는 행동에 깊은 경의와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이번 결정은 이 임혹한 공안상황에서도 이 땅에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행위로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의 이와같은 조치에 대해 검찰이 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공언하였다. 만약 검찰이 「이적표현물 제작·소지」 등의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혐의를 걸어 위 교수들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이는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만행을 되풀이하는 처사가 될 것이다. 우리 민교협 교수들은 검찰이 하루마써 이성을 회복하여 경상대 교수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검찰당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검찰은 경상대 두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는 기도를 철회하라.

1. 검찰은 학문적 작업을 사법적으로 재단하려는 반민주적 기도를 중단하라.

만약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를 강행하여 교수들이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가 빚어진다면 우리 교수들과 지식인들은 비상한 결의로 비상한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학문·사상·양심의 자유 등 국민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994. 8. 31.

민교협 - 공동의장 고철환·고홍서

<이달의 주제 -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은, 사회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약하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장애물의 제거를 통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헌법재판소 긴급 진단- '퇴보 우려'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자격검증 반드시 거쳐야 한다'

88년 임명된 제1기 헌법재판관의 임기만료를 14일 남겨놓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한국공법학회」는 1일 변호사회서초별관에서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의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 선출방법, 시민참여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발표에 나선 이승우(경원대 법학)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헌법보호기능, 권력통제기능, 헌정생활의 안정과 정치적 평화를 보장하는 기능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모든 결정이 모든 국소비자연맹 기획실장)씨의 '시민이 바라는 헌법재판관상'발제로 시작된 2부 토론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국회동의 과정의 의결정속을 제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관 후보자의 추천권자 및 결정절차에 있어 대통령에게 임명된 대법원장이 재판관 3인을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교수는 재판관 임명에 있어 재판관 임명절차에 국민 참여절차가 전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면서 해결방안으로 인사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제대로 된 청문회를 위

해서는 사전에 임명대상자에 관한 자료수집과 정리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많은 시민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이끌어갈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경성대 법학)교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성향분석'의 발표에서 "6공화국 등장이나 3당합당등의 사건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성향은 헌법이 아닌 법률우선적, 정치우선적 사고가 전면에 나서고 있다"고 심각성을 짚었다.

법과대학생, 헌법재판소연구관, 변호사등의 참여하여 홍규애(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씨의 '시민이 바라는 헌법재판관상'발제로 시작된 2부 토론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국회동의 과정의 의결정속을 제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관 후보자의 추천권자 및 결정절차에 있어 대통령에게 임명된 대법원장이 재판관 3인을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교수는 재판관 임명에 있어 재판관 임명절차에 국민 참여절차가 전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면서 해결방안으로 인사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제대로 된 청문회를 위

헌법재판소 재판관임명이 정치 세력의 자리나누기식이 된다면 헌법재판소의 퇴보는 당연하다. 나아가 헌법재판소 폐지론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로서는 제도상 개선은 어렵고 결국 2기 헌법재판소의

평화우호 교류계획, '일본 영향력 확대 위한 문화사업' 정대협, "일 수상 담화는 전쟁범죄, 국가책임 면피용"

일본 무라야마 총리가 전후 50주년이 되는 내년부터 '평화우호 교류계획'등을 내용으로 한 전후문제 처리담화를 발표함에 대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가 "과거 아시아각국의 민중에게 저지른 범죄와 악행에 대한 처리방안을 언급조차 않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정대협은 1일 '무라야마 회에서 이명홍(헌법재판관 연구관)씨는 "헌법재판관 선출에 있어 전문성의 결여와 권력집중구조가 인사문제에서 나타난다"며 대법원 결정절차에 있어 대통령에게 임명된 대법원장이 재판관 3인을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교수는 재판관 임명에 있어 재판관 임명절차에 국민 참여절차가 전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면서 해결방안으로 인사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제대로 된 청문회를 위

정대협은 또 "과거 역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역사도서 자료의 수집, 연구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앞서 일본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자료들

등"이라고 지적했다. 이석태변호사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비민주성과 폐쇄성, 밀행성이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하면서 재판관 임명에 있어 인선범위 추축이 어렵고, 임명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까다로운 점을 짚었다. 따라서 "임명 내정자를 미리 알아내서 비판하는 수준의 참여방법정도 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관련기사 2면).

을 당장 공개하는 일부터 시작, 위안부의 총 수, 명령체계 등을 밝히는 3차진상보고서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도 살아서 과거 일본군의 만행을 증언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무라야마 총리는 지난 8월 31일 담화를 통해 "소위 중군위안부 문제는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이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반성과 사과의 뜻을 표한다"고 밝히고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의 복지 등의 분야에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다"고 밝혔다.

무라야마 총리는 △역사도서, 자료의 수집, 연구자의 지원, 지적교류, △청소년교류 등을 통한 상호이해 증진 등을 골자로 하는 '평화우호 교류계획'을 10년간 일천억엔 상당의 사업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준청문회 반드시 필요’

헌법재판소 설문결과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오계식·홍성우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교수)에서는 1일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에서 밝힌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통하여 지난 6년간 헌법재판소의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우선 6년간 헌법재판소의 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55.8%로 부정적 평가 15.2%를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헌사유지 수준을 고수(9.3%)하지 말고 기본권 신장을 위한 사법적극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72.1%가 대답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가운데 잘못된 것으로 꼽히는 것은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 제한에 대한 위헌 결정(27.3%), 사회보호법상 필요적 보호감호에 관한 위헌 결정(14.5%), 집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취소결정 위헌(12.2%)등의 순이다. 반면, 가장 잘못된 결정은 사립학교에 대한 합헌결정(25%), 국가보안법 7조 등에 대한 합헌결정(21.5%), 제3차 개입금지에 대한 합헌결정(20.9%)으로 나타났다. 성격별로 형벌권 행사 및 형사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적법절차에 노력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반면 악법의 혐의를 받았던 법률에 대한 합헌결정들이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에 한인철 교수(경원대 법학)는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정치권력에 대한 독립성을 추구하면서 기본권 신장과 헌법정신 수호에 이바지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기본권 보장과 합법수호의 차원에서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한 재판관은 변정수 재판관이 55.8%를 차지했고 반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재판관으로는 한병채(22.1%), 최광률(15.1%) 재판관이 거명되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법관자격으로 한정(15.1%)하기보다는 일정경력(15.1%) 학사(64.0%), 나아가 비법률가에게도 문호를 개방(20.9%)해야 함을 지지하고 있다.

헌법소원의 대상 가운데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60.4%로 압도적이었다.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대다수 94.2%는 인준청문회가 바람직하다고 보았고 과반수 이상이 현행법상으로도 인준청문회가 가능(61.1%)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임명 방식에 있어서도 합법재판관 전원에 대해 국회의동의나 인준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81.4%가 주장하고 있다.

고 김남주시인 부인 월간조선 명예훼손 혐의 고소

고 김남주 시인의 부인 박광숙(44)씨는 1일 『월간조선』 9월호에 실린 “김일성 사망에 애도표명” 민예충에 정부는 올해 2억6천6백만원을 지원 결정”이라는 기사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잡지 편집인 안병훈씨와 조갑제 부장, 최홍렬 기자 등 3명을 형법 제308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박씨는 조갑제 부장등은 『월간조선』 9월호에 민예충의 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김남주 시인을

‘간첩혐의자’로 기술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김시인의 문학적 업적과 생애를 편협하게 왜곡, 결과적으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박씨는 이와 함께 이날 이 잡지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언론중재위에 냈다.

진폐보호 대상안되는 사업장 진폐환자는 어디로?

진폐증 환자, 진폐증 적용범위 확대 요구

직업병인 진폐증 환자 1천3백여명은 1일 태백 KBS 공개홀에서 「전국진폐재해자협회」(회장 전태복) 제15차 정기총회를 갖고 일반사업장의 진폐노동자들도 진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등 6개항의 대정부 건의서를 채택, 청와대, 노동부 등에 보냈다.

진폐피해자협회는 “현행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진폐법)이 진폐법 적용사업장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해 광산, 채석장 등 광물성 분진작업장을 제외한 일반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진폐증에 걸려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진폐법 적용사업장을 확대해 사업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진폐환자들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진폐재해자들은 또 “진폐환자 등급이 1.3.5.7.9.11급 등 6개 등급으로 한정돼 있어 11급 이하의 진폐환자들은 장애판정을 받지 못하고 무장으로 처리돼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장애등급 13급을 신설해 대상자 2천3백여명을 구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진폐법 시행령 제3조에는 진폐법의 적용범위를 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채굴광업 등 8개분야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

『월간조선』 9월호는 문제가 된 기사에서 “민예충이고 김남주 시인을 민족예술상 수상자로 선정했다”는 사실에 이어 “김남주는 민예충 이사를 맡았다. 김남주는 79년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기도한 남민전 사건에 간첩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는 등의 보도를 했다.

하는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3일 원진재취업 촉구 결의대회

「원진레이온 살인계제 중국이전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이흥주, 지원대책위는 3일 ‘원진레이온 재취업약속 이행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민주당사 이기택대표실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원진레이온 노동자는 88년부터 7년동안 작업환경 개선과 직업병 인정을 요구하는 수많은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합의서 불이행 반복, 재투쟁, 또다시 합의서를 얻어내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지난해 11월 폐업과 관련 노·사정 3자 합의서에는 직업병환자 치료 대책으로 산재종합병원을 설립하고 실업자가 된 6백여명의 노동자들을 도시철도공사, 농수산물유통센터 등 정부투자기관에 재취업 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원진노동자는 섬유업계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2기 지하철을 크게 떨어 뜨리게 될 것”이라며 재취업 약속이행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지하철공사 직업훈련소에서 기술교육 실시”를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달의 주제 -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은, 사회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약하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장애물의 제거를 통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사회보장기본법안 실효성 의문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김포지움’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사회보장기본법’을 앞두고 행정실무자, 법학·행정학 교수들간에 줄속입법이라는 평가와 함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져 시급히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2일 경실련이 주최로 연대 장기원기념관에서 열린 사회복지심포지움에서 전광석(한림대 법학)·정무권(연대 행정학) 교수는 ‘한국사회보장법제의 발전방향’의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문제제기 했다. 전 교수는 개인이

한 개인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동체적 사회연대성 형성을 통한 사회통합기능과 개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기회균등의 추구등이 기본법에 보완될 점으로 들었다. 그리고 법제화를 통해 개인은 사회보장법에 의해 어떠한 위험이 보호되는지 파악이 되어야 하고, 질차를 개인이 잘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용부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등의 공동참여가 있을 수 있으나 사회역외에도 소외계층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은 “사회의 밑바닥에서 최저생활수준에도 못미치는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국가는 사회적 안전장치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킴으로서 국민적 공동체 형성과 연대에 기여해야”한다고 말했다.

위원회 구성을 대통령령에 의한다는 것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사회복지위원회가 실질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 전문가, 노·사·정 및 이익집단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에 나선 차용호(면목 사회복지관 관장)씨는 “기본법 마련에 있어 얼마나 실무자나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있는지 회의스럽다. 오히려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민간단체에 무게를 지우려는 의도가 많다고 본다”고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정경배(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씨는 “사회복지정책적 요구를 현실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재정적 무용리 산하에 설치될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주성과 전문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심의

원된다면 청구권 소송을 통한 뒷감당문제를 우려했다. 강수림(민주당 보사위) 의원은 “사회보장은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 사회복지기본법 초안은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되면 9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사회복지심포지움에는 “국제화, 민주화, 사회복지”의 제목아래 주성수(한양대 정치학)교수가 ‘한국사회의 국제경쟁력’을,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의 주제아래 이해경(연대 사회복지학) 교수가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경찰, 조계사진입 전기협 간부 연행 불고인권위등, 사찰 공권력 투입 강력항의

총로경찰서는 1일 오후 6시경 조계사에 진입하여 지난 6월 27일부터 65일째 농성을 하고있던 전기협 의장 서선원씨를 비롯하여 7명을 구속 연행하였다. 이에 즉각 불고인권위원회, 전국승가대학인연합, 대구자비의 전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반박성명을 통하여 “신성한 사찰에 공권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바라보며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의 허용만을 뒤집어 쓴 문민독재정권임을 또 다시 확인하였다”고 밝히며 스승계사침탈에 대한 사과와 관계자들 징계, 스승로기준법 준수, 스승로지하철 노동자들의 구속, 징계, 파면철회 등을 요구하였다.

말로는 책임 인정, 실재는 전쟁책임·배상회피 대한변협, 일본정부 전후보상 처리방안 반박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은 2일 ‘일본정부의 전후보상처리방안을 반박함’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정부의 ‘평화우호 교류계획’등이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만행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회피하겠다는 기만적 술수”라고 규정하고 “말로는 전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이나 보상을 회피하는 이중적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대해 개탄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또 ‘평화우호 교류계획’등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삼천년 50주년이 되기전에 전쟁범죄 인정, 스승로기간중의 비인도적 행위에 관한 철저한 진상규명, 스승로군위안부, 징용, 학병, 군속, 원폭피해자, 사할린 잔류동포 등 모든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 실시 등을 요구하였다.”

단체탐방 30 / 서울·경인지역 육아시설활동단체연합회 산하 시설문제연구회

끼 달게 탄 죽을 훔아먹는 고아들 앞에서 통닭파티를 벌이는 나라들의 모습이 그 내용과는 달리 경쾌하게 그려지는 뮤지컬, 올리버 트위스트, 기숙학교의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는 제인에어, 엉뚱한 고아 빨간머리앤 등을 보며 흘린 눈물의 기억 속에 다른 영상이 겹쳐진다. 부서진 질터에서 울고있는 전쟁 고아들, 그들이 자수성가 드라마의 주인공을 가장 많이 연기하면서 성장한 오늘, 풍요로운 오늘 속에 존재하는 아동들의 모습이 겹쳐지면 왜이리 세상이 뿌옇게 보이는지 모르겠다.

**“때리더라도 제발 얼굴은 안 때렸으면 좋겠어요”
폐쇄된 환경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일**

서울·경기 지역에 있는 육아시설 관련 활동가들이 모여 만든 「시설문제연구회」는 이 뿌연 화면에 입김을 불어넣고 소매로 뛰어가는 모임이다. 이 모임은 대학생 몇몇이 동아리를 만들어 육아시설방문활동을 벌인 데서 시작되었다. 작은 뜻과 풋풋한 정을 모아 찾아간 곳, 그러나 그곳의 아이들은 제대로 된 '보호'나 '인자'한 원장선생님과과는 거리가 먼 환경 속에 있었다. 개별 동아리로 활동하던 이들이 뭉치게 된 계기 또한, 그곳에서 벌어진 성폭행사건 때문이었다. 88년 11월, 폐쇄된 환경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한 조직적인 활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11개 동아리(중앙대 '푸름', 외대 '실천사랑'등)가 연합회와 「시설문제연구회」를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대학생들만이 아니라 직장인이 된 선배들이나 시설종사자, 관련분야 사람들과의 연대를 도모하게 되었고, 활동의 폭도 넓히게 되었다.

현재 조직은 회장(이진복), 부회장(김혜경)과 현장활동부, 연구부에 소속된 40여명의 회원과 후원회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의 현장활동은 '학습지도'를 중심으로하여, 국민학생 대상의 지점토, 기타, 한자, 문예반 등의 특별활동, 중고등학교생 중심의 상담활동이 있다. 상담은 주로 시설에서 고민, 퇴원후의 취업문제 등에 관한 것이다. 18살이 되면 시설을 나서야 하는 이들의 직업진출에 대한 분석 등은 전무하며 자립금 1백20만원(이른 대도시의 경우이고 지방은 60-80만원정도)을 쥐고 세상에 나선 이들의

뒤를 보살피 줄 곳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연구활동은 육아시설활동가 교육과 직원들의 근로조건 현황과 개선, 시설내의 성폭행문제들과 사회복지전반에 관해서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 2월에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법

심포지엄을 가진 바 있으며, 관련 세미나에서 시설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주제강연을 한 바 있다. 과거에는 전쟁고아, 부모가 없는 진짜(?)고아가 대부분이었다면 현재는 급속한 사회변화, 가족해체로 표현되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한 생(?)고아들, 즉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가정과단, 양육포기, 아동의 장애를 이유로한 유기등으로 인해 시설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있다. 이들을 만 18세까지 보살피는 보육사들은 법적으로 아동 14명당 1인으로 되어 있는데 한사람이 14명의 학습,정서,건강 등에 세세하게 신경쓴다는 것이 불가능할 뿐더러 또한 시설의 물질적 기반이 보장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세탁, 요리, 청소 등을 떠맡아야 한다면 무게는 더 커진다. 그래서 '사랑'으로 버텨보겠다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머무는 기간은 평균 2.4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기에 못미치고 관두는 경우가 많다. 38-40만원의 보수, 외출, 휴가 등이 거의 없던 시피한 여건에서 버틸 재간이 누구에게 있을까?

이처럼 많은 시설의 문제를 첨예하게 드러내는 시설내 성폭행의 문제를 살펴보자. 일반적 특징으로 피해자는 자기방어 능력이나 범죄인지능력이 부족한 아동이거나 장애인이며, 직원이 피해자인 경우도 있다. 피해대상이 1명인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여러명이며 피해기간도 지속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가해자는 최고 운영진이나 이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87년 이후에야 이런 사건들은 사회민주화와 관련된 성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 증가, 인권의식의 확대, 시설내 자원활동가들의 의식과 활동의 급성장등에 힘입어 공론화되

게 된다. 그러나 가해자가 처벌받은 경우는 극소수이고, 성폭행이 발생한 시설에는 보조비 착복과 같은 재정비리, 강제노동, 아동유기, 직원근로조건 열악 등 총체적인 모순구조가 존재함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문제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그중 최고는 시설장들의 '시설사유화'이다. 자신의 재산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부의 보조금이 1백%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이 일정정도의 재정을 확보하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또한 법인자체를 주로 자신의 친·인척에게 세습하고 있는 상황은 사유화의식을 더욱 강하게 해주는 요인이다. 결국 시설은 시설자의 것이라는 사유화의식은 시설에 보호되는 사람들도 '자신의 것'이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자신의 것은 자신의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는 비뚤어진 고정관념을 갖게 한다. 물론 인정과 사랑으로 아동의 삶과 함께 하는 분들도 있다. 문제는 아동이 그런 사람을 만나느냐 못만나느냐로 아동의 보호의 질이 결정된다는 데 있는 것이다.

아동의 권리는 '제도'로 뒷받침되어야지, 어떤 사람의 '인정'에 맡길 문제는 아닌 것이다. 시설에 대한 사유의식을 버리고 공적개념을 받아들이는 것,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 시설보호가 아동의 권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끝으로 성폭력 사건을 겪은 한 육아원 원생의 글을 읽어보고자 한다. "변화된 것이 없다. 외출 금지령이 더욱 심해졌다. 우리들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다. 너무 슬프고 불안하고 쓸쓸하다. D회 언니 오빠들이 방문하지 못하게 되서 섭섭하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렵다. 자유 줘 주세요 진짜 저희들은 일요일만 되면 꼭 감옥에 있는 것 같아요. 반찬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때린다고 해도 얼굴은 안 때렸으면 좋겠어요....."

주소 :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90-36 (☎ 313-5701)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이달의 주제 -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은, 사회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약하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장애물의 제거를 통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국제법률가협회, '위안부' 해결위해
중재전문위원단 구성·긴급배상등 권고**

2일 일본, 한국등 관련정부와 민간단체에

국제법률가 단체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의견 표명

국제적인 권위를 지닌 국제법률가협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CJ)가 일본의 전후문제처리방안중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권고를 관련국가에 함으로써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제법률가협회는 지난 2일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관한 모든 자료를 완전히 공개하고 피해자가 그들의 요구를 주장하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기 위한 행정적 포럼을 6개월내에 만들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완전한 배상을 실시하여 희생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실시할 것"을 일본정부에 권고했다. 지난 2일 일본정부의에도 한국정부, 필리핀정부 및 기타 관련국 정부와 민간단체에 권고문을 보낸 국제법률가협회는 또 "일본이 위 문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정이나 중재전문위원단을 구성, 이의 결정사항에 피해자 및 가해자가 승복해야 할 것"등을 권고했다. 또 국제법률가협회는 "관련정부의 (권고안에 대한) 논평이 있을 경우 오는 10월 공식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권고문 2면).

이와 관련 「한국정신대문

부에 권고했다. 지난 2일 일본정부의에도 한국정부, 필리핀정부 및 기타 관련국 정부와 민간단체에 권고문을 보낸 국제법률가협회는 또 "일본이 위 문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정이나 중재전문위원단을 구성, 이의 결정사항에 피해자 및 가해자가 승복해야 할 것"등을 권고했다. 또 국제법률가협회는 "관련정부의 (권고안에 대한) 논평이 있을 경우 오는 10월 공식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권고문 2면).

를가협회의 권고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 답변할 것"을 촉구했다. 정대협은 또 최근 일본정부가 '아시아교류센터' '민간위로금'등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범죄를 은폐, 축소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문경찰관 고소, '공소시효 지났다' 기각에 불복 항고
"고문은 공소시효 따질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

수사기관에 불법연행되어 고문을 당한 함주평(무기수수로 12년제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씨등 66명이 고문수사관을 집단고소한데 대해 정기용검사등은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함씨등 9명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함씨등은 3일 서울지검에 낸 항고장에서 "공소시효는 범죄자를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취지에서 생긴 것이나 오히려 형사사법기관이 행정편의나 직무태만을 면책받으려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과거 독재정권이 저지른 인권범죄를 처벌하기 보다는 은폐하는데 급급한 것은 아닌가"고 비판했다.

고문을 당했다. 항고계기자(숫자는 사건발생 년도):함주평(83-월남자사건), 김성만(85-구미유학생 사건, 10년 복역), 황대권(85-구미유학생사건, 10년 복역), 정영(83-남북어부사건, 12년 복역), 박근홍(81-행불자 가족사건, 15년 복역), 박동운(81-행불자가족사건, 14년 복역), 박수관(83-제일교포, 12년 복역), 김태룡(79-월남자가족사건, 16년 복역)

원전노동자, 민주당사 앞 밤샘농성중

「원전레이온 살인기계 중국이전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이홍주)는 3일 탑골공원에서 재취업보장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현재 민주당사 앞에서 밤샘농성을 벌이고 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 공 판 안 내 ◆

- 9월 6일(화)
 - 조준희, 국가보안법, 10시, 318호, 6회
 - 박병욱등, 특수공무집행방해(남총련), 11시, 318호 1회
 - 박덕환등, 특수공무집행방해(남총련), 2시, 318호, 1회
- 9월 7일(수)
 - 박정철등, 특수공무집행방해(남총련), 2시, 425호, 1회
 - 임웅구등, 기차선박교통방해(남총련), 2시, 425호, 1회
 - 박정미, 국가보안법, 10시, 321호, 속행
 - 정제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4시, 31호, 10회
 - 김지환의 2, 업무방해, 10시, 319호, 속행
- 9월 8일(목)
 - 황석영, 국가보안법, 10시, 404호
 - 이남수, 국가보안법, 10시, 421호, 속행
 - 이진삼, 폭력행위등, 11시, 422호, 속행
- 9월 8일(목)
 - 박치관, 국가보안법, 10시, 421호, 속행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철폐해야” 전국연합, 긴급구속장 남용한 서울경찰청 파면등 요구

「민주주의민중동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구속중, 전국연합)은 지난 3일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가보안법의 반동일성, 반민주성을 전국민에게 알리고 이의 철폐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국연합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1백여명의 지역, 부문별 실무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94년 전국연합 간부일꾼 하계수련회'를 갖고 '전국연합 하반기 사업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김

영삼 정부의 무능력과 사회의 발전을 두려워하는 수구세력의 준동이 불러온 공안통치의 분쇄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히고 “세계적으로 지탄받는 군사정권의 전제 국가보안법을 정기국회에서 철폐, △긴급구속장을 탈법적으로 남용한 서울경찰청장 파면, △김영삼 대통령은 군사독재를 능가하는 공안통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앞에 사죄, △반민주 수구세력의 주동 김종필 대표와 최형우 내무장관 해임 등을 요구했다.

국제법률가협회의 권고

(전문생략, 번역 : 정대협)

1. 일본은 모든 자료를 완전히 공개하고, 피해자 그들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기 위한 행정적 포럼을 6개월내에 만들어야 한다.
 2. 위에 권고한 것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 전적으로 희생자들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원상회복이란 의료택, 주거 및 이와 비슷한 생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완전배상을 의미한다.
 3. 일본이 전 '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위와 같이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나라의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정이나 중재전문위원단 같은 기구를 가능한 속히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단체나 피해자 개인이 그들 자신의 권리요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은 법정이나 중재전문위원단이 정한 규칙과 결정에 순복해야 한다.
 4. 위의 (2), (3)과 같은 권고가 계속중인 동안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그들의 권리나 주장에 손상시킴이 각 피해자 개인의 재판을 위해 미화 4만불 정도를 증도시급해야 한다.
-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민간단체는 일본정부에게 피해자들의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5. 만약 일본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현재 방침을 계속 고수한다면,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민간단체는 적합한 관계기관이나 UN의 전문가에 이 문제를 계속 상정하며 법적 문제에 대한 권위있고 분명한 해석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권고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6. 한국정부와 필리핀 정부는 즉시 국제사법재판소에 '관련조약에 대한 해석'(예 : 한국정부의 65년 한일협약-번역자 주)을 제소해야 한다.
 7. 연합군의 가맹국들은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재판과 배상을 올바른 조치를 책임있게 취하도록 이 문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 만약, 관련된 정부의 논평이 있을 경우, 이를 참조하여 94년 10월에 국제법률가협회 공식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백골단 집단구타로 평화집회 이수리장

지난 3일과 4일, '진보세력 탄압중지와 국가보안법 철폐 결의대회'와 「서울철거민연합」 창립대회가 백골단의 집단구타등으로 이수리장이 되었다. 3일 2시 탈골공원에서 「민중정치연합」(대표 김철수) 등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명동성당까지 행진하는 과정에서 백골단에 의해 강제해산 되고 17명이 연행되었다. 「서울철거민연합」(대표 양해동)은 4일 오후 2시 종로공원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종각을 거쳐 명동성당에 도착, 집회를 갖던중 백골단에 의해 해산당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 1명이 집단구타로 백병원에 실려갔고, 풍물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이마가 찢기고 이빨이 부서지는 부상을 당했으며, 집회참가자

중 53명이 연행되었다.

불교계, 전기협 지도부 연행에 또 다시 강력 항의

지난 1일 조계사에서 농성중이던 전기협 지도부 연행을 계기로 불교계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1일의 불교인권위원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의 전기협 지도부 연행 규탄성명을 낸 데 이어,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승가대학 등 전국승가대학학인연합,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17개 단체의 전국불교운동연합, 불교인권위원회 등 37개에 이르는 불교계단체는 5일 성명을 통해 “불교에 대한 각종 압력의 철폐와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 보장, 근로기준법 준수와 전기협 관계자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 인권 간행물 ◆

- 한국의 사회복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경실련)
·주요내용 : 한국사회복지의 국제경쟁력(주성수)/한국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이혜경)/한국사회보장정책의 발전방향(안병영)/한국사회보장체계의 법적발전방향-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에 즈음하여(정무권) 등
-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참여연대등)
·주요내용 : 헌법재판소의 기능 및 역할과 시민참여의 관계(이승우)/헌법재판관 선출방법과 문제점(차병직)/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성향 분석(한상희) 등
-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문결과(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주요내용 : 헌법재판관의 임명절차등
-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제1차 자료집
·주요내용 : 사건일지/학문·사상·표현자유 공대위 활동보고/「한국사회의 이해」 각 단체별 평가자료/사회단체 형성명서
- 후원회소식(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주요내용 : 출소장기수를 찾아서(김중중 선생님편)/양심수 가족을 찾아서(제5기 전대협회장 김종식씨 어머니 안옥희님)/20대 청춘을 거리에서 보낸 내 아들을(박성래, 조혁 어머니) 등
- 주책가 생활도로 정책 개선방안 및 학교권역 설치에 관하여(시민교통환경연구소, 전화 332-6044)
·주요내용 : 주책가 생활도로의 정책과 개선방향/구로구 생활도로 실태 및 개선방안/주책가 생활도로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민참여방안/학교권역 설정 방법/학교권역의 효과적 운영방법 등

<이달의 주제 -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은, 사회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약하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장애물의 제거를 통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오늘,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지령 243호, 문민적 정부의 '인권파수꾼' 역할

인권주명, 기획기사 강화 계획

팩스로 발행하는 일간 인 권소식지 <인권하루소식>이 창간 1주년을 맞았다. 93년 8월 4일 준비1호를 발간하고 같은 해 9월 7일 창간호를 냈던 <인권하루소식>은 일주일에 5회씩 발행(일·월요일 제외)하며 1년 만인 9월 7일, 지령 243호에 이르렀다.

국내의 인권정보를 각 단체 및 개인들과 공유하기 위해 창간된 <인권하루소식>은 경찰이나 검찰에 잡혀가고 감옥에 가는 것을 인권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때에 장애인, 노인, 여성, 교육, 아동의 권리 등 사회권과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다뤄 때로는 '이것이 인권이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 '국제인권소식'란을 마련하고, 94년 2월 20일 인권위활동을 모니터링하는 등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례와 유엔기구의 인권에 관련된 사

항을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보도하고자 했다.

<인권하루소식>이 전한 특종도 만만치 않다. 올 8월 26일 이후로 급격한 것만 추리면 '경실련 주최의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제241호, 9월 3일), '남측선 사건 공판 본격 시작'(239호, 9월 1일), 'YMCA의 외국인노동자 중계실 개설'(237호, 8월 30일), '사회개발에 관한 세계 정상회담 2차 준비위 개막'(235호, 8월 26일) 등으로 보도기능에서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편집인 및 <인권하루소식> 기자들은 “인권전문지” 역할을 다할려면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앞으로 '인권주명', 기획기사 확대 등으로 인권전문지의 이름에 걸맞는 <인권하루소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

◆ 행사 안내 ◆

- 폭력남편 살해혐의 이순심씨 항소심
·일시 : 9월 7일(수) 오후 2시
·장소 : 서울고법 302호
- 토론회-작은학교의 앞날과 교육개혁의 과제
·일시 : 9월 8일(목) 오후 3시30분-9시 30분
·장소 :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
·발제 : 농촌사회의 변동과 작은 학교의 앞날(김성수, 서울대 농업교육학)
·논평 : 이병수(교육부 지방교육기획 과장)
·조율자(서강대교수, 문화인류학)
·주최 : 크리스찬 아카데미(766-7326. 7, 박상영가사)

폭력남편 살해혐의 이순심씨 항소심 열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순심(40세)씨가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방청인단과 변호인단은 “아내 구타에 대한 사회적 법적 대책이 전무한 현실속에서 이순심씨는 20년동안이나 남편에게 구타당해온 피해자이다. 우리는 이순심씨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경찰들에 의해 연행 되었다. 연행된 김성룡(27세)씨등 3인은 현재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연행과정에서 김성룡씨와 김현정(27세)씨는 긴급구속영장이 제시되었으나 신지애씨 경우는 영장없이 불법연행된 후 6시간만인 12경노량진 경찰서에서 긴급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또한 6일 오전 6시 30분경 배영미(27세)씨도 긴급구속영장에 의해 연행되었다. 6일 가족 및 「민주주의민중동일 부천연합」 소속 회원 10여명은 남영동 대공분실로 찾아가 면회를 가졌으며 이기욱 변호사와의 접견도 있었다. 변호사 접견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은 “부천지역에서 대중활동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한누리 노동청년회를 이적단체로 지목하고 내부소식지인 '한누리'를 이적표현물로 조사중이다”라고 밝혔다. 한누리 노동청년회는 부천지역 노동청년들이 모여 93년 10월 민주화와 통일을 목적으로결성한 대중단체이다.

국제사면위 한국일본 지부 인권교육 행사마련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는 10일 오후3시-6시 대구 중구청 강당에서 일본지부와 공동으로 '인권교육과 지구시민공분실로 찾아가 면회를 가졌으며 이기욱 변호사와의 접견도 있었다. 변호사 접견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은 “부천지역에서 대중활동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한누리 노동청년회를 이적단체로 지목하고 내부소식지인 '한누리'를 이적표현물로 조사중이다”라고 밝혔다. 한누리 노동청년회는 부천지역 노동청년들이 모여 93년 10월 민주화와 통일을 목적으로결성한 대중단체이다. 문의 : 053-426-2533

창간 1주년 기념 기획 1

신공안정국과 국가보안법

변호사 이덕우

편집주 :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을 맞아 이덕우 변호사의 글에 이어 장애인, 양심수, 외국인 노동자 등 각 분야의 현안을 점검하는 기획을 마련하였다.

군부독재 분위기와 유사한 요즘

최근 우리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은 현재 우리의 정치적 상황이 군부독재시대의 분위기와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하다. 그 뚜렷한 근거를 들 수는 없으나 유신이나 5.16공의 암울했던 시절과 흡사한 무엇인가 풀리지 않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유신시절 국민 학생 때부터 국민교육헌장을 달달 외우게 하고 한국형 민주주의라는 관제 캠페인이 전국을 휩쓸 때 어린 나이에도 "민주주의란 이런 것이 아닌데"라고 느꼈던 기분같다고나 할까.

냉전체계의 붕괴와 전세계적인 화해와 공존의 흐름과 국내 정치상황을 비교할 때 더욱 참담한 느낌이 든다. 이념과 체제보다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어제의 적이 동지가 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며 세계는 급속하게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며 변화하고 있다.

도저히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을 듯 하였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평화공존의 길을 걷자고 하고 북한과 미국 사이의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왜 우리 정권 담당자들은 외면하려는 것일까. 이러한 흐름을 역행하여 가면서까지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해묵은 반공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정국을 불안하게 몰고가려는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 많은 국민들은 정확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불안한 눈으로 정국의 흐름을 바라보고 있다.

언론, 사제들이 반복 이데올로기

확산에 앞장서

지난 3월 정부 당국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이후 이른바 북한의 불바다 발언 파문으로 전쟁분위기를 조장하고 반북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기 시작하였다. 당시 정부당국이 비공개 회담에서 나온 말을 언론사에 제공하여 대대적으로 보도시키자 외신기자들은 국제 관례상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더구나 양측 대표들의 신경전 끝에 나온 말을 앞뒤 상황을 모두 자르고 북한 대표의 한두마디 말 중 "불바다"라는 부분만 골라 강조하며 일제히 보도시킨 것은 의도적으로 전쟁분위기를 조장하려 하였

안분위기를 선도하고 나서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언론의 선도적 역할은 철도파업, 조문논란, 한총련배우 등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다. 단적으로 박총총장의 근거가 불투명한 발언을 극찬하며 "박총장을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 "제2의 박총장이 필요할 때"라는 식의 민간(?)캠페인을 주도하며 정국의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다.

다시보는 로마병정, 백골단

언론의 선정적이고 이성을 잃은 선도투쟁(?)에 힘입어 정부 당국은 특히 학생운동에 대하여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남총련에 이어 한총련까지 일방적으로 주사파 또는 친북세력으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적용,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전국 181개 대학 주변에 233개 중대 2만 7천명의 병력을 배치하기에 이르렀고 140명의 학생을 수배하고 1천만원의 현상금까지 내걸었다. 소위 문민정부에서도 우리는 5, 6공때 신물나게 보았던 로마병정들과 백골단을 거리 곳곳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과연 5, 6공때보다 학생들의 시위가 더욱 과격하여지고 정권에서 말하는 체제전복을 지향하는 쪽으로 극렬일변도로 흐르고 있는 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반대로 5, 6공때나 마찬가지로 정권의 유지에 커다란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일까.

아뭏든 통계에 의하면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지난 7월 말까지 구속된 양심수는 634명인데 이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자는 전체의 44.63%에 해당되는 283명이다. 그런데 올 6, 7월 2개월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의 수는 102명으로 그 전까지의 구속자 수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공안정

(2면에서 계속)

“인간의 존엄성을 신장시키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굳건히 하며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도모하는 길은 국가보안법 철폐로부터”

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정부 당국의 의도대로 언론은 대대적으로 전쟁분위기를 고취시키며 불안을 증폭시켜 나갔다. 그러나 국민들이 중요하지 않자 안보불감증이라는 등 일면 철없는 어린 아이들을 대하 듯 걱정하고 부추키던 정부와 언론이 의도대로 국민들이 중요하고 부유층 가정에서부터 생필품 사재기에 나서자 하루 아침에 비난을 하고 나서는 촌극을 벌이고 말았다. 그야말로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느냐고 머쓱한 표정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카터의 방북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듯 하자 이러한 분위기가 일순 주춤하는 듯 하였다. 그러나 예기치 못하였던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조문논쟁으로 기세를 올리더니 박총총장의 잇따른 주사파 발언으로 절정에 달하였다.

과거 정부 당국에서 억지로 반공이데올로기로 캠페인을 벌이면 마치 못해 장단을 치던 언론이 오히려 공

(2면에서 계속)

국이라는 말이 생긴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가보안법 7조 '한정합헌', 역사적 책임져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의 수를 분석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아직 그러한 분석 결과를 본 일이 없으나 정권의 위기 또는 실정으로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할 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급증하고 정치적으로 커다란 변환기에서 굼직한 국가보안법 사건의 터져 나왔던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고 헌법정신을 깃밟고 있으므로 폐지하여야 한다고 외쳐왔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수차례 개폐논의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4년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하여 한정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일도 있다. 물론 다수의견이 한정합헌이라는 묘한 이론으로 위장하기는 하였어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한 것이다.

그러나 한정합헌이란 판결을 받은 7조가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약 90% 이상 적용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있다. 최근에는 컴퓨터통신이나 장작노래극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대학교재와 태백산맥 등에 대하여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겠다는 데까지 이르고 말았다.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7조만이라도 사형선고를 내려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말이다. 그랬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구성 자체가 국민들의 참여와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면이 있어 국가보안법에 대한 사형선고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구성 자체가 어찌 되었건 재판관들의 성향이 어떠하였건 위 결정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은 져야 할 것이다.

헌법위에 군림하는 국가보안법

또한 국가보안법이라는 칼자

두를 권 자에게 언제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자에게는 휘두를 수 있고 따라서 휘두르도록 만들고 마는 일종의 마성을 지니고 있다. 제 아무리 교육을 잘 받고 천성이 선량하여도 손쉽게 눈에 거슬리는 자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귀찮고 힘들 뿐만 아니라 승패가 불분명한 토론과 협상을 할 것인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마법의 지팡이 국가보안법이 있는데 이것을 쓰지 않고.

이렇게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이루어진 국가보안법이 헌법위에 군림하는 한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란 한낱 장식품에 불과하다. 체제의 건강성과 국가안보는 획일적인 사고를 강요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수많은 국민들의 피를 보았던 우리가 어떻게 40년전 미국에서 밟았던 것과 똑같은 전철을 밟아 나가고 있는 것일까. 한 대학 총장의 뚜렷한 근거가 없는 발언에 전국민이 매카시에게처럼 놀아나 이성을 잃고 광기에 들며 날뛰어야만 하는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의 피와 젊음을 지불하여야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분위기에 새로운 사고와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토론문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일까.

진정 지금 이 순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둠의 세력을 누구일까. 혹자는 국가보안법이 없다면 당장 북한의 남침위협이 커지거나 국가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할 지 모르나 매카시즘의 열병을 앓고 난 미국의 연방수사국이 매카시에 대한 수사결과를 내린 것을 보면 이해할 지 모르겠다. "매카시는 반공의 명분에 해를 입혔으며,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공산주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정당한 노력에 대해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신장시키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굳건히 하며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도모하는 길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나서야 가능할 것이다. 이런 국가보안법 철폐주장도 북한의 주장과 같다고 하며 국가보안법 7조위반(북한의 활동에 동조)으로 몰릴지도 모르겠다. 지금이 신공안정국이라는 데.

서울지하철노조 재파업 경고 부산지하철 노조위원장 실형1년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석치순)는 6일 오후 2시 군자기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3일부터 시한부 재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하철노조는 "지난달 16일부터 파업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해 공사측과 4차례의 본교섭과 2차례의 실무교섭을 가졌으나 공사측이 노조의 일방적 양보만을 요구해 교섭이 결렬돼 조합원총회를 거쳐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지하철노조는 공사측과의 협상을 통한 파업유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으나 "공사측의 태도로 볼 때 대단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노조측은 사태해결을 위해 △고소 고발 취하, △파업기간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 철회, △정계 철회,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 △이미 합의된 사항의 이행 등 5개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한편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수철 판사는 6일 부산 지하철 파업과 관련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부산교통공단 노조위원장 강한규(37)씨 등 노조 간부 13명에 대한 업무방해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 등 선고공판에서 강씨에게 징역 1년을, 부위원장 이강근(37)씨 등 7명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프락치힘의 사망 관련 4명 기소

서울지검 형사3부 김홍일 검사는 6일 경찰의 프락치 혐의를 받아 학생들의 조사를 받은 후 병원에서 사망한 전귀희(38)씨 사건과 관련, 고려대 학생복지위원장 정영철(25, 심리3)씨를 상해치사 및 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 학교 이광훈(21, 경제2)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협박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창복, 황인성씨 6일 기소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검사)는 6일 지난 8월에 열린 제5차 범민족대회와 관련해 지난달 9일 구속된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 공동본부장 이창복(57, 전국연합 상임의장)씨와 집행위원장 황인성(42, 전국연합 상임집행위원)씨 등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 및 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서준식

<이달의 주제 -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 사회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약하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장애물의 제거를 통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국보법, 고등학생에게까지 가다 경찰, 진술할 내용 '가르쳐' 주며 조서 받아

밀실수사 끝에 청소년단체 회원 3명 구속

지난 9월 2일 오후 6시경 서울지방경찰청 대공분실은 구로·영등포 지역의 청소년단체 '샘'(회장 고영국, 구속중) 회원등 13명을 '샘' 사무실, 거리, 집, 학교 등에서 연행·조사한 끝에 9월 4일 고영국(21)씨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샘' 회원 추교준(20)씨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연행당시 이들과 같이 있었던 고등학생 4명은 훈방조치했다. 경찰은 또 이와 관련 최은철(21, 부회장)씨등 2명을 수배중이다. 경찰은 가족과 친지들이 서울 시내 경찰서를 찾아다니며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했음에도 4일까지 가족에게 소재지를 전혀 알리지 않았다. 연행된 이들은 의무와 완전히 차단된 채 옥인동 대공분실 밀실에서 3일 오전까지 잠을 전혀 못자게 한 채로 이적 표현물을 읽었는지, '샘'의 활동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4일

풀러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은 특히 조서를 작성하면서 문영기(19, 구속)씨에게 「주체혁명의 조직관」이라는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으로 공부했다고 적어라"고 강요하고 또 위 책의 내용을 일부 읽어주며 받아 적게하기도 했다. 또 최장민(16, 구로고 1년)씨에게는 "문영기가 김 주석을 애도했고 '김 주석은 좋은 사람으로 존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 정부에 대한 인식부분에서도 "작전지휘권이 미국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식민지이다"라고 쓰게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경찰이 어린 것 고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생을 상대로 사건을 사실보다 부풀리거나 조작한다는 혐의를 받으면서까지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이번 사건의 진상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임아무개(24,

'참배음일꾼 청소년회')씨는 "쌀 개방반대투쟁등에 적극 나섰던 '샘' 회원등을 구속하는 것은 신공안정국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청소년단체들의 활동을 묵

어 놓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청소년 단체를 중심으로 대책위를 꾸려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단체 '샘'은 15명 정도 정도의 회원이 있으며 고등학생들을 주대상으로 풍물, 노래모임, 경당 활동등을 하여 왔으며 지난 92년 7월 창립되었다. 구속자 : 고영국, 문영기, 김용오(21) / 수배자 : 최은철, 나기석(20)

인사공청회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대한변협·참여연대·민변, 후보명단 공개 촉구

헌법재판관 임기만료라 임주일 앞으로 촉박하게 다가온 7일, 헌법재판관 후보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성명서가 일제히 발표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오재석등,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국, 민변)은 각각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관 후보명단을 즉각 공개할 것과 인준 청문회 마련과 더불어 임명될 재판관 심사기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변협 상임이사장과 전국지방변호사 회장단은 안우만 전대법관의 헌법재판소장 임용반대와 △청와대, 국보위등에 파견되어 독재정권을 적극 도운 인사, △시국사건의 재판을 통제하였거나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을 한 인사,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데 적극 참여한 인사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등 구체적

인사기준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재야법조인이 총단결해 철회운동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결의문 2면 참조). 참여연대는 "헌법재판관 명단을 공개조차 않으려는 것은 여론의 감증을 피해 기습적으로 임명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공개된 후보명단에 대해 전문가단체와 여론의 감증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제기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자를 경력15년 이상의 법학교수에게도 개방해야 하고 비법률적 전문가에 문호를 개장하는 방안을 안우만 전대법관의 헌법재판소장 임용반대와 △청와대, 국보위등에 파견되어 독재정권을 적극 도운 인사, △시국사건의 재판을 통제하였거나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을 한 인사,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데 적극 참여한 인사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등 구체적

◆ 행사 안내 ◆

- 토론회-작은학교의 앞날과 교육개혁의 과제
 ·일시 : 9월 8일(목) 오후 3시30분-9시 30분
 ·장소 :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
 ·발제 : 농촌사회의 변동과 작은 학교의 앞날(김성수, 서울대 농업교육학)
 ·논평 : 이병수(교육부 지방교육기획 과장)
 조옥라(서강대교수, 문화인류학)
 ·주최 : 크리스찬 아카데미(766-7326. 7, 박상영간사)

감경의 불공정 수사, 소송진행 감시할 법대협 창립 7일 법률피해자, 전문가등 참여

검찰·경찰의 불공정 수사 등으로 인해 일어나는 법률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피해대책협의회(법대협)가 7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법률 피해자와 전문가 등 1백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발족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법률 피해자와 법률 전문가 등 3백여명의 회원이 가입한 법대협은 앞으로 불공정한 수사와 소송진행 및 위헌적인 법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등 사법감시활동을 떠나갈 계획이다. 공동대표로 이수만 베트 남고엽계피해자전우회장과 소설가 한천석씨 등 5명을 선출했다.

동을 떠나갈 계획이다. 공동대표로 이수만 베트 남고엽계피해자전우회장과 소설가 한천석씨 등 5명을 선출했다.

성남지역 노동자회 회원 경찰에 연행

지난 9월 3일(토) 오전 6시30분에서 8시 사이에 「성남지역노동자회」(대표 이병석, 성노회) 소속회원 6명이 경찰청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9월 4일 오후 6시 경찰청 보안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성노회는 경기도 성남 지역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민족혁명을 이념으로 하는 지하조직을 결성, 공단근로자를 상대로 주체사상을 학습시키고 노사분규를 배후조정한 것과 「우리가 바라는 세상」, 「북한바로알기」등 10여종의 이적 표현물을 제작한 혐의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회사, 고소·고발 취하등 약속 안지켜 전노대, '노조집행부 와해음모'

지난 8월 23일 현대중공업 노조와 회사측 사이에 합의를 본 노조에 대한 고소·고발취하등을 회사가 지키고 있지않아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회사측은 신의현 전무등 개인이름으로 이루어진 고소고발은 취하할 수 없다고 버티는 한편 상여금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교섭상의 구두합의를 파기하고 있다.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동대표 양규현등)는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현대중공업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는 전노대의 주요 사업장인 현대중공업 노조 집행부를 와해시키겠다는 목적이 깔려있고 민주노총 건설을 저지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노동운동협의회」는 7일 성명에서 "성노회는 성남지역 노동자들이 사업장의 문제를 고민하고 풍물, 문학, 역사기행등 문화활동을 도모해온 친목단체이며 문제시 된 책자는 민주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이 영장도 없이 주인도 없는 사무실을 뜯고 들어가 컴퓨터와 자료, 심지어 증거물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프린트기, 주소록까지 압수하고 이영숙씨의 경우 임신이 6개월인

상태에서 남편이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연행해가는 비열한 짓을 저지른 것에 분노"를 표했다. 연행자 명단 : 이병석(28, 회장), 김영옥(32 사무국장), 이영숙(31 교육국장), 송경숙(30, 회원), 장석철(34, 회원), 김의중(34, 회원)

폭력남편 살해혐의 이순심씨 항소심 재판부, 남성편향적 발언

20년동안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오다 남편을 살해하고 1심에서 4년을 선고 받은 이순심씨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합의2부(재판장 부장판사 이강국)심리로 열

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고의성 여부에 집중되었는데 이씨의 변호인은 신문을 통해 "20년간의 폭행으로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공포와 겁에 질린 피고가 무의식적으로 저지른 사건"임을 주장했고 검찰은 "피고인이 긴급성이 없는 상태에서 고의로 살해했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

한편 재판부는 "20년간 2남 1녀를 낳고 살아온 부부관계에서 부인이 남편의 술주정과 폭행을 참지 못하고 저지른 행동이다", "평소에 부부금슬이 좋았다고 들었다"는 등 피고인의 처지를 남성중심적인 입장에서 보는 발언을 자주 해 방청인단으로부터 야유를 받았다.

결 의 문

(전력) 대한변협 상임이사장과 전국지방변호사 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1. 과거 유신체제로부터 이어진 권위주의 군사독재정권 기간중에 청와대·국보위·중앙정보부에 파견되어 독재정권을 적극 도운 인사, 형사지방법원의 특정고위직에 재직하면서 정치권력에 영합하여 법관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저버리고 시국사건의 재판을 조정통제하였거나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을 하였던 인사와 검찰의 공안부에 장기간 소속되어 민주회복운동과 민중을 탄압하는데 적극 참여한 인사는 헌법재판소장이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2. 헌법재판소장 임명대상자로 언론에 거명되는 안우만 전대법관은 지난해 사법부 인사개혁논의 기간중에 위 1항 일부관계전역과 개혁의지 및 정직성에 대한 의혹으로 법조 안팎에서 이른바 정치판사로 지목되어 공직사퇴요구의 대상인사로서 위 임명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
3. 새 헌법재판소장과 정당의 당리당략에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과거의 행적에 의하여 그 사명과임무를 깊이 검증하여 헌법수호, 법치주의 실현 및 인권보장에 대한 의지와 문민시대에 맞는 개혁의식을 갖춘 자라야 한다.
4. 우리는 위에 제시한 기준에 저촉되는 인사가 임명될 경우 모든 재야법조인이 총단결하여 이의 철회를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한다.

1994. 9. 7.

대한변호사협회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특집 ② - 장애인 접근권은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권리'-'시혜' 아니다

10월 3시, 명동성당-탑골공원 함께걸음 시민대행진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는 사회환경의 현 주소를 되짚어 보는 '함께걸음 시민대행진'이 오는 9월 10일 명동성당, 탑골공원 등에서 열린다. 시민대행진은 84년 9월 건너갈 수 없는 횡단보도, 들어갈 수 없는 식당과 화장실 등의 턱을 없애달라며 자살한 김순석씨, 92년 3월 뇌성마비 장애인 이며 시인인 백원옥씨가 모교인 강남대에서 휠체어를 타고 내려오다 운동장에 떨어져 죽은 사례 등에서 보듯이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비장애인과의 공유할 것을 목적으로 열린다.

김성재 함께걸음 시민대행진 조직위원장(4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은 "1회 시민대행진에서 휠체어 체험을 통해 사회 교통시설이 얼마나 장애인에게 불편하게 되어있는가를 경험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2차 시민대행진은 휠체어타기 외에도 안대로 눈을 가리는 장애인 체험을 추가하여 편의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공감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목적을 밝혔다.

김 조직위원장은 또 "장애인이 사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 사회단체 대표들의 연설 등으로 시민대행진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가 10일(토) 오후 3시 명동성당에서 열리고, 이어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일반인이 안대를 눈을 가리거나 2백여대의 휠체어를 타고 탑골공원까지 이동하게 된다. 이 장애인 체험은 이번 시민대행진의 핵심으로 일반시민, 장애인, 정책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회저명인사들이 참가하게 된다. 또 4시 30분부터 탑골공원에서 진행되는 셋째마당은 일반시민, 장애인, 사회저명인사의 장애인 체험 소감, 경험담을 발표하고 국내외 국외에 편의시설을 비교하는 사진전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연락처 521-5364).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하향조정 막기 특별기구 구성 9인 소위 구성, 사회단체와 연대도 모색

지난 8월 9일 열린 정부와 민자당간의 당정협의회에서 기업활동의 규제완화를 위해 상시노동자가 3백인이상인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의 2%에서 1%로 낮출 것을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50여명에 이르는 장애인단체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결성했다.

「전국장애인인권추진회」(회장 황광식), 「부류의 진화」(대장 김경희), 「한국지체장애인협회」(회장 장

기철, 지장협) 등 19개 단체와 32개 단체가 위임한 가운데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에서 6일 열린 '장애인 의무고용률 인하 조정 전장애인계의 특별기구 설치'를 위한 모임에서 '9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 특별기구의 구성 등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기로 했다.

9인소위의 회의 소집권자로 지명된 박덕경 지장협 서울지부장은 "장애인의

무고용률을 1%로 낮추는 것은 장애인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장애인의 조직

인터뷰

김성재 함께걸음 시민대행진 조직위원장, 한신대교수

-함께걸음 시민대행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장애인들의 90% 이상이 재가장애인 현실에서 장애인들의 사회생활은 집 문턱에서부터 문제에 부딪힌다.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가진 1회 함께걸음 시민대행진은 일반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직접 사회교통시설이 얼마나 불편한가를 경험하게 하는 목적으로 열렸다. 이번 대행진은 휠체어를 타고, 안대로 눈을 가리고 장애인 체험을 하도록 했다. 이는 '편의시설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로 장애인을 비롯해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인식과 참여자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인간성을 풍부하게 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접근권은 장애인에게 왜 중요한가
=장애인들의 희망은 일반인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적 통합'이다. 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하러 직장을 가거나, 사회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무슨 일을 하던지 생활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이들의 자유는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인데 우리나라는 전혀 이뤄져 있지 않다.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의무교육이 실시되어도, 「장애인고용촉진법」을 통해 고용이 확대되어도 접근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접근권이 문제제기까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숨은 활동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성과가 이야기한다면.
=87년 생긴 연구소는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현실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과 범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편의시설에 관한 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렇듯 장애인복지문제를 자선적 차원에서 '기본권'의 차원으로 인식전환을 가져오는데 연구소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

-4월에 열린 함께걸음 시민대행진에는 정치권은 물론 사회명망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우려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점은 없다. 정부정책에 대해 연구소는 비판적 단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비판이 아닌 합리적 수준에서 정부를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왔다. 정책적 대안을 내놓는 사업은 창조적 결실을 가져다 주었다. 올 봄 교육부 내 '유아특수교육과' 신설이나 보사부내 '장애인복지과' 신설은 행정적 차원에서도 영향력을 미친 성과라 볼 수 있다. 이번 시민대행진에 공보처에서 재정지원을 제안해 와서 많은 장애인단체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이것은 연구소의 지난 사업성과와 그 정당성이 인정된 결과라 본다. 물론 우리의 입장이나 원칙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10일 시민대행진에 가는 기대는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길 바란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제도개선을 힘써주길 바란다.

된 힘으로 이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으로 구성될 특별기구는 장애인계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와의 연대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이달의 주제 -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은, 사회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약하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장애물의 제거를 통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공안바람에 짓밟힌 청소년의 권리 6일간 밀실수사로 청소년단체 '샘' 이적단체 규정

헌법, 아동의권리 등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무시돼

신공안바람속에 헌법, 형사소송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보장된 청소년들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7일 공개적인 활동을 해온 「민족사랑의 통 큰 이정표 '샘」(회장 고영국, 구속) 회원 고영국(21)씨등 3명을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등의 혐의로 구속, 강찬규(20)씨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김미영(20)씨등 3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샘'이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지난 4월의 '우투파' 라운드 국회비준 저지 국민결의대회'에 고등학생을 참석하도록 배후조종해 왔고" "서울 남부지역 11개 고교에 '학교별 단일투쟁체'를 건설한 뒤 주체사상을 교육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구금절차의 불법성, 미리 준비한 각본에 따라 사건을 맞추려했다는 의혹을 일으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신공안바람속에 주사파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폐어 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불구속입건된 추교준(20)씨등에 따르면 경찰은 옥인동 대공분실 밀실에서 팬티만 입혀거나(추교준씨 경우)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고 뺨을 때리는등(박석규씨등)의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뒤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 '조직의 비밀보장'등의 강령과 규약을 허위로 진술하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

씨등은 또 "샘'이 공개적인 대중활동을 표방하며 노래모임, 전통무예반 등을 만들어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활동을 해 온 조직이며,

시간약속 엄수, 회비 잘내기, 회원들끼리 서로 사랑하기 등의 약속을 지호조직의 규약으로 부풀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씨등은 "담당수사관이 조사시 '통일부문에서는 연방계가 좋다고 이끌어 낼 것, 주체사상의 원리를 소개할 것, 김일성을 민족의 영웅이라는 진술을 이끌어 낼 것' 등이 적힌 '주의할 사항'이라는 수사회의 결과 메모를 가지고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또 연행을 거부하는 강찬규(20)씨등 10명을 지난 9월 2일 오후 6-7시경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의동행' 형식으로 강제로 연행, 4일 오후 5-10시 사이에 석방하여 47-50여 시간 동안 불법감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의자들에게 묵비권 및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연행장소, 사유등을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는등 최소한의 합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은 고등학생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막으려는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가 가입,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는 '아동의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 접수,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다'(13조 1항),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15조 1항)고 규정되어 있다. 또 아동을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해 보다 조기에 성인연령에 달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제1조)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

'지하철 13일부터 시한부 파업' 밝혀

서울지하철노조가 6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간부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등 요구 사항에 대한 진전이 없을 경우 13일부터 시한부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는 8일 성명에서 "서울지하철이 다시 서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시측의 태도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철도-지하철 파업으로 서울지하철의 경우 사전구속영장 18명, 파면 21명, 해임 2명, 직권파면 30명, 직위해제 63명등 대량징계를 받았다.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 창립총회

·일시 : 94년 9월 10일(토) 오후 2시-4시 30분
·장소 : 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강당
·내용 : 1부 - 경과보고/ 정관심의 의결/ 임원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2부 - 대회사/ 축사 및 연대사/ 각 위원회 및 전문센터 소개/ 창립선언문 채택

내일을 여는 희망의 연대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

<인권하루소식> 창간1주년 특집③-국가보안법과 양심수

매주 목요일 계속되는 양심의 외침 - 목요일집회

목요일마다 하루도 빠짐 없이 탑골공원에서 '국가보안법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민가협 목요일집회'

가 8일로 51회를 맞았다. 93년 9월 23일 1차 목요일집회 때부터 줄곧 사회를 맡아온 민가협의 채은아(30)

간사는 "3백여명의 양심수가 석방되길 바라며 시작된 목요일집회가 50차를 넘어서는 지금 6백명이 넘는 양심수가 감옥에 있음을 본다. 바로 이것이 문민정부의 인권현실이다"며 51차를 맞는 소감을 밝혔다. '고난과 승리의 상징'인 보라색 머리수건을 두르고 아들사진을 들고 이 땅의 어머니들이 시민들과 만나 온 목요일집회를 채 간사와의 이야기 속에서 거슬러 올라가 본다.

6.7.8월 양심수 1-5월의 약 4배-현재 양심수 646명 : 민가협 결과 발표

최근 민가협은 9월5일 현재 김영삼정부 출범이후 구속자가 7백44명이며 신공안정국이 조성된 6·7·8월 구속자는 전체구속자의 50%가 넘는 4백32명이라고 발표했다. 이 기간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양심수는 1백58명으로 36.57%를 차지했다. 또한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는 모두 6백46명이며 이중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3백68명으로 56.96%로 나타났다 (아래 표 참조).

인터뷰

채은아 (민가협 구속학생학부모협의회 간사)

-목요일집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김영삼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회전반에서 기대가 많았던 것처럼 민가협 어머니들 역시 현 정권이 양심수 문제를 선결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역사상 최대의 사면이라 떠들썩했던 '3·6 대사면' 때도 양심수의 27%인 1백44명이 석방되었을 뿐이다. 광복절 때는 단 1명도 감옥문을 나서지 못했는데 더이상 어머니들은 양심수 석방에 기대를 걸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과거처럼 끊임없이 싸우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독교에서 고난일을 상징하는 목요일을 집회일로 잡게 되었다.

-목요일집회에 참석자들과 주변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 =참석하는 어머니들은 20-30명 정도이다. 매 집회마다 1백여명이 참석하는데 이 중에는 항상 목요일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탑골공원을 찾는 할아버지, 주민들이 목요일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집회준비를 도와주기도 하고 음료수등을 사다주기도 한다. 때로는 지나가는 시민이 후원금을 건네기도하고 후원회원이 되고 싶다고 민가협으로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다.

-집회에서 자주 등장한 주제는 무엇인가. =세계최장기수 김진명 석방, '조작간첩 사건', '고문', '국가보안법', '양심수' 등 많은 주제가 다뤄졌다. 요즘 들어선 '신공안정국의 인권탄압'을 주제로 삼고 있다.

-지역에 남는 집회는. =문익환 목사님 추모집회 때다. 저는 물론이고 어머니들이 참으로 많이 올었다. 목사님께서는 목요일집회에 자주 나오셨는데 그때마다 강기훈씨 사진을 들고 서계셨다. 우연찮게도 그 주 집회준비를 하는 회의에서 문목사님을 모시자는 얘기를 하던중 문목사님의 죽음소식을 듣게 되었다. 추모집회를 하면서 얼마전까지도 집회에 함께 계셨던 모습이 떠올라 슬픔은 더했다.

또 올 6월 우리나라를 찾아온 아르헨티나 오일광장 어머니들과 함께한 명동성당 집회가 유별나다. 6·10 항쟁의 상징인 명동성당에서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반인도적 범죄자처벌을 외쳤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아주 가끔 어머니들이 지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변함없는 현실을 보면서 즐기차게 외쳐온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질때가 있다.

-그간 집회의 성과는 무엇이고 앞으로 계획은. =꾸준히 국가보안법철폐와 양심수석방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구속자 가족들이 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싸움을 벌여나가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감옥에 갇힌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며 굳건히 목요일집회를 지켜나가는 것은 모든 어머니들의 다짐일 것이다.

김영삼 정권이후 양심수 현황

자료제공-민가협(단위 : 명)

94년 6, 7, 8월 구속자 현황

Table with 4 columns: 신분별 분류, 군인, 전경, 노동자, 학생, and 4 rows of data including counts and percentages.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신분별)

Table with 4 columns: 합계, 군인, 전경, 노동자, 장기수, and 2 rows of data.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의 적용법규

Table with 5 columns: 국가보안법, 집시법, 폭력, 군관계, 노동관계법, and 2 rows of data.

김영삼정부 이후 월별 구속자(총 744명)

Table with 4 columns: 93년 2월, 3월, 4월, 5월, and 4 rows of monthly data.

<이달의 주제 -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 사회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약하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장애물의 제거를 통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샘」 활동 참가 고등학생 중징계 9일 영등포여상, 지도교사에도 사표종용

지난 8일 '주체사상을 고등학생에게 전파한 이적단체 「샘」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각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징계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고등학생의 표현·결사의 자유에 대한 도전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학교별 단일투쟁체'의 한 학교라고 지목한 영등포여상에 8일 경찰이 찾아와 관련 학생들을 조사한데 이어 9일 영등포여상은 징계위를 열어 '샘'에서 94년 8월에 주최하고 출소장기수 임방규씨가 초대손님으로 동행한 '얼다지기'에 참석한 것을 문제삼아 백미라(3년) 씨등 2명을 퇴학시키고 18여명을 징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등포여상은 이들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도서부-지성과 '향기'를 해체하고 이 동아리의 지도교사 김정녀씨에게 감독소홀을 이유로 사표제출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경상대교수 소환수사 기소여부 곧 결정

창원지검 특수부(박만 부장검사)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한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공동집필자 중 정진상(36, 사회학), 이창호(40, 법학), 이해숙(37, 사회학) 교수 등 3명을 불러 이적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오는 12일 장상환(43, 경제학) 교수등 3명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

인 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조사를 받은 정진상 교수등은 오후 늦게 귀가 했다.

행사 안내

□공안통치 분쇄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시민결의 대회 (747-4364, 5)

·일시 : 9월 10일(토) 오후 3시 ·장소 : 종묘공원(집회후 명동성당까지 행진) ·주최 :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제2차 함께걸음 시민대행진 (521-5364)

·일시 : 9월 10일(토) 3시-6시 ·장소 : 명동성당(3시-3시30분)-탑골공원(4시30분-6시) * 3시30분-4시30분(명동성당에서 탑골공원 장에 체험 행진) ·주최 : 함께걸음 시민대행진 조직위원회

□출소장기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하루주점

·일시 : 9월 10일(토)오전 10시-오후10시 ·장소 : 을지로 3가 뉴시티호프 ·주최 : 천정련 장기수가족후원회 (719-2172)

□생활정치시대를 여는 초가을의 만남

·일시 : 9월 10일(토) 오후 5시-8시30분 ·장소 : 63빌딩 국제회의장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20% 지방의회여성참여 후원회 ·문의 : 274-2883, 279-6891

내일을 여는 희망의 연대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창립총회

·일시 : 94년 9월 10일(토) 오후 2시-4시 30분 ·장소 : 반호사회 서초별관 5층 강당 ·내용 : 1부 - 경과보고/정관심의 의결/ 임원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2부 - 대회사/축사/ 각 위원회 및 전문센터 소개/ 창립선언문 채택/ 축가

독선과 편견, 지배와 소외를 이기고 연대의 팔을 펼칠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 민간활동 연수 숙리산, 8-11일 3일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오늘 11일까지 3일간 숙리산관광호텔에서 50여명의 전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네스코 민간활동연수회를 열었다.

유네스코 민간활동연수회에서는 관동대 김한수총장(유네스코 한국위원회부위원장)의 '세계화추세와 교육과제'라는 주제의 특별강연과 조자룡 숙리산 에 밀레박물관장이 '지역사회와 문화풍물'이라는 주제강의등이 있을 예정이다.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특집④ 국제인권, 자결권

뉴칼레도니아의 자결권을 보장하라

민중진보 아시아 센터, 프랑스에 항의행동 조직 촉구

「민중진보를 위한 아시아 센터」(ASIAN CENTER FOR THE PROGRESS OF PEOPLES)에서는 항

라인을 통해 오스트레일리아 동남쪽에 위치한 뉴칼레도니아의 자결과 독립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

하고 아시아민중의 프랑스 정부에 항의하는 행동을 조직할 것을 호소하였다.

또 「민중진보를 위한 아시아센터」는 핫라인에서 또 △UN총회에서 공표된 카나키 민중의 자결과 독립에 대한 권리를 존중할 것, △카나키 민중의 독립을 결정짓기 위해 98년에 치르게 될 국민투표라는 합의 과정을 존중할 것, △민중과 노조, 정치정당 그리고 98년 카나키의 독립

「민중진보를 위한 아시아센터」에서 보낸 핫라인(발췌) 프랑스 정부, 카나키(KANAKY)의 자결권 침해

46년 프랑스에 의해 해외영토가 된 뉴칼레도니아는 정치·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프랑스는 84년 뉴칼레도니아의 독립을 무기한으로 연기하는 지방선거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카나키민중해방전선」(FLNKS)의 노력으로 거부당했다. 뉴칼레도니아 민중의 80%가 이 선거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84년 12월 카나키민중해방전선(FLNKS)은 뉴칼레도니아의 독립을 선언하고 「카나키국」이라고 이름지었다. 프랑스는 선거를 취소하고 협상을 시작했으나 독립활동가 40여명이 우익단체와 보안군에 의해 살해당하기도 했다.

86년 12월 「카나키민중해방전선」은 9월 총선에서 다수를 획득했다. 유엔총회에서도 카나키 민중의 자결권과 독립권을 선포하고 「카나키민중해방전선」이 뉴칼레도니아의 합법적인 대표자로 인정받을 것을 제안했다.

현재 뉴칼레도니아의 독립을 지지하는 정치적 압력단체인 「오세아니아 민주주의를 위한 회의」의 지도자 윌리엄 출신의 알로이시오는 프랑스 정부에 의해 탄압받고 있다. 그는 누메아에 있는 프랑스 경찰을 지휘하고 있었으나 카나키의 독립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국무장관 파스카에 의해 직무정지 당하였다. 카나키인들은 프랑스 정부가 알로이시오를 처벌하려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가 뉴칼레도니아의 독립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뉴칼레도니아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자원과 군사상의 이유 때문이다. 뉴칼레도니아는 크롬, 철, 코발트, 망간 그리고 해저에 있는 폴리메탈리 노들뿐만 아니라 세계 두번째로 큰 니켈 저장소를 가지고 있다. 또한 무로로아 환초에는 프랑스 핵실험 장소를 위한 지원지와 쿠루에 있는 우주발사센터 뿐만 아니라 항구시설과 6천 병력이 주둔해 있다.

뉴칼레도니아는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동남쪽으로 1천 1백30km 떨어져 있으며 인구는 대략 16만명으로 베트남인, 중국인, 폴리네시아 소수민족뿐만 아니라 멜라네시아 태생의 선주민과 카나키인, 칼도쉬인(프랑스 이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카나키인들은 비참한 조건속에서 교육적 차별을 받으며 실업에 직면해 있다. 경제정부의 원천인 관광산업과 광산 그리고 큰 호텔들은 프랑스 정부와 사업가들의 소유이다. 경지의 2/3가 1천여명 이주민들의 소유이고 토지의 50%이상 5%미만의 유럽인 토지소유자의 것이다. 그래서 카나키인들은 경제적 불평등을 중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독립을 원한다.

항의 편지 보낼 곳-국내 주한 프랑스 대사관 연대의 편지 보낼 곳-USTKE-POUR LA COMITE DE SOUTIEU A SAKO ALOISIO BP 4372, 98847 NOUMEA, NEWCALEDONIA 전화 : 687-277210 / 팩스 : 687-277687

을 위해 만들어진 여러 조직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 카나키의 독립을 지지하는 압력 단체 「오세아니아 민주주의를 위한 회의」의 지도자인 윌리엄 준장 알로이시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도 요구하였다(「핫라인」 원문).

김주석 애도, 국보법 구속 울산 남부경찰서는 9일 김일성주석 사망을 애도하는 대자보를 교내에 부착한 울산대 심부석(21, 화공과3)씨등 2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인권 간행물 ◆

□녹색교통(창간호)-녹색교통운동 발행(720-7879)

·주요내용 : 기획특집-인간중심의 교통, 여기서부터 풀자/학생들에게 안전한 등하교길을/대량구속과 해고가 해결책인가(정운광)/지하도-육교가 보행자 권리 빼앗는다(임삼진)/교통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개선으로(I)(진장원)/시내버스 노선의 문제점과 개편방향(정행교) 등

□amnesty international-COUNTRY DOSSIER LIST 1993 ASIA AND THE PACIFIC(국제사면위의 1993년 아태지역국가 문서목록)

·참고 : 긴급구원행동(Urgent Action)을 제외한 1993년 국제사면위의 아태지역 29개국 관련 문서 목록

□김영삼정부와 학문·사상·표현의자유(토론회 자료집)

·주요내용 : 신공안정국과 학문·사상·표현의 자유(김상곤)/「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학술적 평가(이종오)/학문·사상·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신장수) 등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변호사법 등의 개정에 관한 청원-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추진연합회

·주요내용 :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대한 청원서 및 입법청원의 요지/제안이유에 대한 보충설명 자료-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사법개혁방안(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추진의 헌법적 당위성(조병윤), 사법개혁을 위한 제도적 방안(양건) 등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

재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한가위 전에 은행으로 발걸음을 돌려주세요

<이달의 주제 -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 사회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약하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장애물의 제거를 통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인권은 직접적 활동·체험을 통해 배우는 것”

엠네스티 한국지부 9일 「한국·일본 인권교육과 지구시민학습」 개최

지난 9월 10일, 대구에 있는 엠네스티 한국지부 주최로 「한국·일본 인권교육과 지구시민학습」이라는 주제의 강좌가 열렸다. 이날의 강사는 10여년간 국제앰네스티, 유네스코, 유네스코 등에서 인권교육활동을 담당해온 아와노 신조씨로 현재는 일본국제교류협회의 사업과장을 맡고 있다. 이번 강의는 엠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 40여명의 참석자들이 모두 원으로 둘러앉거나 일어서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교육이란 원칙이나 규범으로 교실의 의자에 앉아 일방적으로 교육되는 것이었으나, 인권은 직접적 활동·체험을 통해 마음속으로 배우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재미있게 즐겁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진행된 교육은 ‘친구찾기’, ‘눈가리고 산책’, ‘바라는 것’, ‘10명의 소중한 사람’ 등 흥미로운 것으로 짜여졌다. 이중 ‘눈가리고 산책’의 경우 낯선 사람과 짝이 되어 5분씩 교대로 한 사람은 눈을 감고 한 사람은 안내를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둘은 서로 말을 해서 안되며 언어의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안 내자는 눈을 가린 사람이 주변의 사물을 다양하게 접촉할 수 있도록 소음이 심한 곳, 계단, 꽃·풀, 자동차 등으로 이끈다. 짧은 시간의 경험이지만 사람들은 서로 느낀 것을 토론했다. 둘은 서로 말을 해서 안되며 언어의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안 내자는 눈을 가린 사람이 주변의 사물을 다양하게 접촉할 수 있도록 소음이 심한 곳, 계단, 꽃·풀, 자동차 등으로 이끈다. 짧은 시간의 경험이지만 사람들은 서로 느낀 것을 토론했다. 둘은 서로 말을 해서 안되며 언어의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안 내자는 눈을 가린 사람이 주변의 사물을 다양하게 접촉할 수 있도록 소음이 심한 곳, 계단, 꽃·풀, 자동차 등으로 이끈다. 짧은 시간의 경험이지만 사람들은 서로 느낀 것을 토론했다.

◆ 공 판 안 내 ◆

- 9월13일(화) · 조흥영, 국보법, 421호, 10시, 1회 · 최은열, 국보법, 317호, 10시, 속행 · 남총련사건 권성호등 12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318호, 10시, 2회 · 남총련사건 손동철등 14명, 319호, 10시, 2회 · 김남곤, 국보법, 321호, 10시, 1회 □ 9월14일(수) · 김상현, 국보법, 421호, 10시, 1회 · 남총련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박재봉등 16명, 423호, 2시, 2회 · 조승희, 국가보안법위반, 424호, 3시, 속행 · 남총련사건 박정철등 16명, 425호, 10시, 2회 · 구국전위 이영기등 3명, 국보법, 425호, 2시, 1회 □ 9월15일(목) · 김희경, 국보법, 424호, 10시, 선고 · 남총련사건 배제섭, 319호, 10시30분, 2회 · 정태조, 국보법, 320호, 10시, 선고 □ 9월16일(금) ·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418호, 11시, 속행

하고는 전면금지당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8월20일 남씨를 면회한 최병모변호사와 김형태변호사와 9월 9일 강희철씨를 면회한 오창래(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씨등 2명이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데서 밝혀졌다.

천주교인권위(위원장 최병모)는 12일 성명을 통해 “공안 기류에 편승해 전국 교도소들이 양심수들에 대한 면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인권유린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교도소 관계자는 “양심수들의 경우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 면회를 허가하게 되면 교정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면회를 금지하라는 법무부의 지침이 전국 교도소에 하달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성폭력 피해 여성위한 「열림터」 14일 문열어

국내 최초로 성폭력 피해 여성만을 위한 피난처 「열림터」가 14일 문을 연다.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가 운영하는 열림터에서는 △일정기간 피해여성들 보호 △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의료, 법률분야 자문위원과 연계아래 전문적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용기간은 30일 이내, 속식은 무료제공.

개소식은 14일 오후2시 30분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에서 갖는다. 문의: 576-7128(장윤경 간사)

전국 교도소 공안정국 편승 양심수 면회 가족의 금지

강희철(일본관련 간첩사건, 대전교도소 복역중), 남진현(사노맹사건, 제주교도소 복역중)씨등 양심수들의 면회가 가족을 제외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특집⑤-외국인노동자

추방된 산재노동자 신체적·경제적 이중고에 시달려
정부 3년 소급 보상금 지급 약속 지키지 않아 시민모임 찾아주기 나서

12일 「귀향한 외국인 노동자 체불임금, 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시민모임」(공동대표 박승룡·이상경·박무영, 시민모임)은 보상금 없이 추방당했던 방글라데시, 네팔 산재자들 23명의 보상금 지급 요청서를 노

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였다. 노동부는 지난 2월 7일 경실련 농성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산재보상금을 3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적극적인 노력을 사실상 하고 있지

않다. 현재 65명만이 노동부에 요양신청을 한 상태이다. 시민모임에서는 지난 6월에도 외국인노동자에게 산재보상금이 적용되도록 '본국송금 및 재입국허가를 위한 청원서'를 노동부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으나 "파악해서 주면 보상하겠다, 검토하겠다" 등의 형식적인 발언만을 했다고 한다.

시민모임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재오씨를 찾아가 보상금 찾아주기 운동에 대한 몇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노동계 연석회의 구성
포철유령노조 해산 나서

지난 9월 9일 세실레스트 랑에서 정인숙(가톨릭노동사목협의회 회장), 신철영(경실련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사무처장),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등 노동계 및 시민운동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포철유령노조해산과 올바른 노사관계정립을 위한 시민노동단체 연석회의」를 구성하였다.

연석회의는 성명서를 통해서 "노동부가 해산시점이 지난 노동조합에 대해 소집권자의 지명을 허용하여 유령노조를 연장하려는 포항제철측에 새로운 면죄부를 준다면 그것은 바로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비호하는 것이며 유령노조해산을 방기하는 직무유기에 다름없다"고 밝혔다.

앞으로 연석회의는 노동부장관 면담 및 업무보내기 운동, 포철해고노동자 지지방문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우만·정경식씨 현재 재판관 임명 철회 요구
「참여연대」, 「대한변협」

안우만 전대법관과 정경식 대구고검장의 헌법재판관의 임명 움직임에 대해 재야법조계와 관련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대한변협」은 임명강행시 사퇴를 위한 모든 행동을 벌일 것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12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홑있는 인사들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허구화시키고 민주주의의 진전과 개혁의 추진을 크게 후퇴시키는 것"이라 주장했다. 변협은 7일 결의문을 통해 안우만 전 대법관을 '정치권력에 영합하여 법관으로서 송고한 책무를 저버렸다'며 대표적인 정치판사로 지목하고 현재 재판관 임명을 반대하 바 있다. '초원복국집' 사건과 관련된 정씨는 대표적인 '공안검사'이다.

범민족대회관련 전국연합
채규업씨 조사받고 풀려나

범민족대회와 관련해 채규업(전국연합 정책위원장)씨가 10일 오후2시경 연행되어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12일 오후 1시10분경 풀려났다. 서울시경은 채씨를 인천 친척결혼식장에서 연행하면서 긴급구속장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

재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서준식

한가위 전에 은행으로 발걸음을 돌려주세요

<이달의 주제 -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은, 사회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약하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장애물의 제거를 통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강기훈씨 어머니 수기집 출간

한겨레신문 출판부 「너를 위한 촛불이 되어」

유서대필 사건으로 알려진 강기훈씨의 어머니 권태평씨가 쓴 수기집 「너를 위한 촛불이 되어」(단행본, 236쪽, 5천원, 한겨레출판부)이 출판되어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주에 전국 서점가에 선보이게 된다. 권씨가 6개월동안 쓴 수기집에는 자식의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과정과 그 속에서 변해가는 어머니 자신의 모습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은 유서대필사건을 겪으면서 인정을, 검찰, 판사들에 의해 누명을 벗을 수 있다는 희망이 좌절되어가는 과정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부록으로 강기훈씨 사건의 경과와 의미를 기록한 이봉현(한겨레21) 기사는 "강기훈씨 사건은 20세기 말 우리나라의 인권과 법 집행, 언론의 문제를 알려주는 사건이다.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책이 많이 팔릴 것이라는 것보다는 기록을 남기자는 뜻에서 출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이 기사는 강기훈사건의 객관적 자료가 93년 나온 「유서사건종착료집」에 담겼다면, 강기훈

씨의 인간적 면모와 사건 당시의 여러 정황등을 알 수 있는 수기집 출간은 그가 '파렴치범'으로 알려진 것은 잘못된 것이며 결코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수기집의 제목 「너를 위한 촛불이 되어」는 권씨가 강기훈씨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의 내용에서 제목을 따왔다. 지난해 여름 남편이 위독할 때 '남편은 중환자실에 아들은 감옥에 두고 잘못 이루고, 미칠 것 같았던' 밤들을 보내며 에전부터 쓰고 싶었던 수필을 써내려가다가 아들의 이야기를 쓰게 되었다는 권태평씨. 자신의 하고픈 말뿐 아니라 사실을 기록하는 일이라서 어려움을 느꼈다고 한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이것저것 쓴 것이 많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식 학력은 국민학교졸업으로 이후 야간 고등공민학교를 다니기도

많은 기록을 남기자는 뜻에서 출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이 기사는 강기훈사건의 객관적 자료가 93년 나온 「유서사건종착료집」에 담겼다면, 강기훈

있는 아들 기훈이의 결혼식등 바쁜 일을 치르고 나면 계속 글을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수들의 사법처리 반대
경상대 교수 3백11명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 6인에 대한 검찰조사가 끝나고 기소여부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경상대 박우동(51·사회과학대 심리학) 교수등 3백11명은 사법처리반대서명을 마쳤다. 전 교수 5백여명중 62%가 넘게 참여한 서명은 13일 일제히 청와대, 안기부, 검찰총장,장원지검, 대검공안부장, 교육부 상임위원장, 각정당으로 보내졌다.

서명에 나선 교수들은 「한국사회의 이해」 사태는 학문의 다양성에 대해 공안당국이 사법처리를 시도한 데서 비롯되었다면서 지난 한달간의 논란과 진통을 겪으며 이 문제는 대공민학교를 다니기도 많이 팔릴 것이라는 것보다는 기록을 남기자는 뜻에서 출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이 기사는 강기훈사건의 객관적 자료가 93년 나온 「유서사건종착료집」에 담겼다면, 강기훈

한편 정진상교수등은 장원지검에서 9, 10일 「한국사회의 이해」 내용을 집중

적으로 조사를 받았다. 정진상(사회학, 「한국사회의 이해」중 「한국사회의 기본사상」, 집필) 교수는 "한국사회를 보는 틀로 맑스주의 방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집필한데 대해 맑스주의이념을 선동한 것이 아니냐는 추궁을 12시간의 조사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장상환(경제학, 「한국사회의 이해」의 과정과 방향) 교수의 경우 '사회운동을 통해 폭력선동을 한 것 아닌가'는 식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했다.

제1차 인간사회개발
한국 포럼 개최, 14-15일

95년 3월 1-12일까지 코펜하겐에서 UN주최로 열리는 '사회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SSD)'의 주요개념으로 등장한 "지속가능한 인간적 사회개발"에 대해 국내 민간단체들간의 토론자리가 마련된다. 14-15일 '사회개발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한국민간단체포럼' 주최로 YMCA 다락원 캠프장에서 열리는 제1차 인간사회개발 한국 포럼 안내는 "지속가능한 인간적 사회개발"을 우리 사회 속에서 고찰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14일 오후4시부터 진행되는 포럼은 강문규(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씨, 서대원(외무부 국제기구심의관)씨가 발제한다.

바로잡습니다
13일자 2면 '전국연합 채규업씨'는 최규업씨입니다.

알림

□한국성폭력상담소 피해자들의 쉼 곳 '열린터' 개설식
일시:9월14일 오후2시30분-4시30분
장소:중로5가 기독교연합회관 4층 중강당(☎ 706-4184)

헌법정신·개혁의지 상실한 헌재 재판관 임명

헌법대법관 임용을 둘러싸고 문민시대의 개혁의지를 잃어버린 것은 물론 과거 군사정부의 굴종된 사법부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처사라는 비판속에서 김용준(전대법관) 헌법재판소장등 7명의 헌법재판관이 13일 오후 임명되었다.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추천한 김용준·정경식(대구고검장)·김진우(현 헌법재판관), 대법원장이 추천한 고중석(전 광주고등법원장), 민자당이 추천한 신창인(부산지검장)·김문희(현 헌법재판관), 민주당이 추천한 조승형(변호사)씨등이며 「대한변협」등에서 정치판사로 임명철회를 요구해온 안우만 전대법관은 제외되었다.

한편 민주당 박지원대변인은 13일 아침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9명중 5명의 임명은 헌법재판소 구성상 문제가 있다는 국민적 평가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편집자주 제2기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 등에서는 12일 성명서를 일제히 발표했다. 구체적 인물에 대한 임명거부에서부터 인사청문회를 통한 헌법재판관 임명의 요구까지에서 다양하게 쏟아진 의견들 속에서 제2기 헌법재판관의 상을 찾아볼 수 있는 계기였다. 이런 의미에서 이미 국회동의를 거쳐 확정발표된 상황에서도 각 단계에서 발표한 성명서는 유효하다고 생각되어 요약해 실는다. 단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했다.

새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논평

(중략) 우리는 임기개시를 불과 2,3일 앞두고 대다수의 헌법재판관이 전격적으로 지명 또는 추천되고 있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헌법재판관 임명문제가 미리 공론화되어 그 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칠 것을 거듭 요구해왔다.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계속 묵살되는 악패는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대통령이 안우만, 정경식씨를 지명하는데 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위 두 사람은 지난 권위주의 시절 사법의 독립과 검찰의 중립에 역행한 대표적인 정치판사와 공안검사였을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는 대통령이 지난해 사법개혁을 요구하던 국민을 향해 "정치판사는 없다"고 강변하던 안우만씨의 물음치한 모습이나 지난 대선 때의 이른바 부산 초원복집 사건의 주역의 한 사람이었던 정경식씨의 전력을 벌써 잊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지명에 대해 새삼 의혹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에서 추천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유독 김문희 재판관만이 유입되어야 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 지금까지 검찰이 걸어온 길을 반주해 볼 때 과연 검찰 출신이 두 명이나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어야 할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며 특히 신창인씨는 박종철군 사건이 거론될 때마다 거명되는 인사임을 상기시키고 싶다. 민주당에서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조승형씨에 대해서는 그 개인적인

평판을 떠나 과연 민주당에서 당내나 시민사회에서의 충분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친 끝의 추천이었는지 의문이다.

우리는 제2기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이 거의 직업법관과 검찰출신으로 채워짐으로써 그것이 헌법수호와 관점에서 다양한 국민의 이해관계를 통합할 헌법재판에 파행적 요인이라도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제야 법조인이나 법학자의 진취적이고 열려 있는 신선한 헌법관이 반영될 기회가 봉쇄된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다.

1994. 9.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헌법재판관 임명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 -반민주적인 임명안에 반대를 분명히 한다-

(중략) 우리는 여론 조사를 통해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의 차원, 일관성있는 소신과 헌법재판관을 가진 재판관에 대한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공법학 교수나 변호사 등 법전문가들에 의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변정수 재판관은 제외되고, 긍정적인 평가를 전혀 받지 못한 김문희 재판관이 재임용된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라 할 것이다. 과거 행동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긍정적 평가를 얻은 인사만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안우만 임명철회 내용 중략). 더구나 공안검사로서 인권탄압의 선두에 섰던 정경식 대구고검장이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되었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이에 국민의 인권보장 의지를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정경식씨의 임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인사는 과거 권위주의적인 사법, 검찰권 행사에 기여해 왔던 인사들에 대하여 일종의 포상이자 헌법재판소를 권력의 의도에 맞게 조정, 통제하려는 저의가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이같은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임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민주화의 시대에 부응하는 헌법재판관으로 제2기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1994. 9. 12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성명서 법치주의와 개혁을 거스르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용납할 수 없다

(중략)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그 재판관 임명의 중요성은 법조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다. 변화와 개혁을 표방하는 문민정부가 참신하고 개혁성향이 있는 인사를 제쳐둔 채 굳이 이와같은 문제인물을 재판관에 임명한다면 이는 개혁을 외면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판정한다.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이 위 두 인사(안우만·정경식)에 대한 임명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헌법수호에 보다 적합한 인물을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1994. 9. 12

대한변호사협회

<이달의 주제 - 장애인 권리>
장애인은, 사회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약하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장애물의 제거를 통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학문목적 이적서적 소지, 국보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무리한 이적표현물 소지혐의 수사에 제동

이적·용공성향의 표현물이라도 학문을 연구할 목적으로 소지해 읽거나 토론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소지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용공·이적표현물을 단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적발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14일 전북대 사회대 학생회장 이기인(26), 전 전북대생 이상희(23)씨등 2명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상고심 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국가보안법 위반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등이 가지고 있던 책과 노트등이 용공성향의 표현물인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대학생으로서 빈부격차, 분배의 공정성, 현실모순 등에 대해 비판적, 학

문적 관심에서 이를 독서 또는 소지, 토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등이 구입하거나 독서한 책들은 대부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공산주의 및 사회학에 대한 이론서인데다 자신들의 전공과 무관하지 않은 내용이 인정된다"며 "이를 이용해 토론등을 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 위

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등은 전북대 정의과와 사회학과에 재학중이던 지난 91년 1월 「변증법적 유물론」, 「세계철학사」, 「사적유물론」등 10여권의 사회과학 서적과 마르크스의 계급론 및 전략전술론 등을 요약한 학습교재를 소지, 탐독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지법 22부, 재야단체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힌 듯 14일, '구국전위' 첫공판 재판 공정성 우려 남총련 공판때도 "살개방은 할 수 밖에 없다"

지난 6월 「구국전위」 사건으로 구속된 이영기·유성찬·박화국씨등 3명에 대한 공판이 14일 오후 2시 30분 서울형사지법 합의 22부(재판장 부장판사 이광열) 심리로 열렸다.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화국(29)씨는 공소장에 기록된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구국전위 관련여부를 계속 부인했으나 강압에 의해 진술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재판관은 시종일관 위압적인 자세로 취조하는 듯 이끌 어갔으며 재야운동단체의 활동에 대한 개인의 비판적 시각을 피력하기도해 방청객들의 불만이 쏟아지기도 했다.

박씨의 경우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류낙진씨와의 관련여부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그러나 피고인 박씨는 "류씨로부터 구국전위에 대한 말을 들은 적도 없다. 다만 류씨가 강령과 규약을 보여준 적은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강령과 규약으로 「민주주의 민족통일 부산연합」 일을 하고 있어 참고로 보여준 것이었다"고 대답했다. 특히 당시 본 강령과 규약이 경찰조사과정에서 본 것과

다르다고 말하며 "경찰의 강압에 의해, 다른 사람들도 이미 진술했다는 얘기에서 체념적으로 경찰조사를 인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피의자의 진술서 '부동의'에 대해 재판부는 류낙진씨를 증인신청할 것을 검사측에 제시했으며 검사는 류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되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진술하게 해줄 것과 류씨의 1회 공판이 끝난뒤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관의 강압적인 태도에 대해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재판부는 "부산연합이 뭐하는 단체며 어떤 조직이나" "소속단체인 부경총련, 전교조 부산지부등 11개 단체가 하는 일은 뭐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 부산연합이 지역현황과 민주개혁, 민족통일촉구등의 일을 한다고 대답하자 "그런 막연한 일을 하기에는 부적당한 것 같다"는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또한 "부산연합이 장기수나 간첩으로 알려진 류낙진등과 자주 접촉하는 이유는 뭐냐" "생활 형편이 어려워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유독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뿐이냐"등의 추궁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형사지법 합의 22부는 지난 남총련 1회 공판에서 UR개방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펴 재판관의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본지 239호 참고). 다음 재판은 10월 19일(수) 오후 2시.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한가위 전에 은행으로 발급음을 돌려주세요

성폭력 피해여성의 쉼터 '열림터' 개설

14일, 성폭력상담소

의료·심리치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14일 오후 2시 30분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는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열림터 개설식'을 가졌다.

개회사를 통해서 최영애 소장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오랜 숙원사업의 하나로 열림터를 개설하게 되었고 전문적인 상담소와 쉼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이우정(국회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의원은 축사에서 "성폭력의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가해자의 인격도 결국 파괴하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국가차원의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민간단체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국회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폭력중에서도 물리적 상해가 큰 경우와 근친상간 등은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격리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곤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열림터'는 성폭력을 당한 여성에게 격리를 위한 보호소 기능을 물론 의료적, 심리적, 법률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열림터는 성폭력 피해여성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보호와 안정치유뿐만이 아니라 개별, 집단상담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열림터라는 명칭은 '모든 피해여성들을 위해 언제나 열려 있으며 이들의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게 하는 터'라는 의미에서 채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열림터 이용 기간은 30일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며 10여명을 수

용할 수 있다고 한다. 지난 93년 12월에도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48시간안에 증거를 확보하고 심리적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성폭력 위기센터'를 개설한 바 있다. 열림터는 위기센터와 유기적 연결을 통해서 긴급한 성폭력 상황에서 피해여성

"국민위한 정치의사 있다면 원진문제 해결하라"

원진비대위, 14일 김영삼대통령에 서한

"취업 안 돼 고향에도 못갈 편" 호소했다.

「원진레이온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상봉, 원진비대위)는 14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면 하루속히 원진레이온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원진비대위는 서한에서 "6백여명의 원진레이온 노동자는 직업병환자로 낙인 찍혀 다른 직장에 재취업을 했다가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 원진레이온 출신으로 밝혀지면 모두 해고 당하는 등 재취업의 길이 가로막혀 생계대책이 감감, 교통비와 선물을 마련하지 못해 그리운 고향에 내려갈 수 없는 형편"이라며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불효 자식을 만드는 정부당국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들을 보호, 치유하고 재환하도록 돕는데 노력할 방침이다.

열림터는 7인의 운영위원회가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을 이끌고 1백여명의 자문위원들이 6개월 단위로 자문활동을 담당한다. 자문위원으로는 의료분야에는 박금자(산부인과 전문의), 법률분야에는 이종걸(변호사), 김강자(서울시정민원실) 등이 활동한다. 일반상담 02-529-4271~2 위기상담 02-573-1888

◆ 행사 안내 ◆

- '유초하 교수 수배를 해체하고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라' 성명발표회
- 일시 : 9월 15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민교협 사무실(☎ 888-3683)
- 내용 : 현직 교수 80여명 명의의 성명서 발표/유초하교수와 진보운동 탄압에 반대하는 교수모임의 향후 활동계획 등

지명요청에 관한 법률적 자문을 구한 결과 포항제철의 노동조합이 해산상태가 아니라는 결론을 얻어냈으며 이에 따라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받아들여 포항제철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광고시간확대는 여성 상품화 가속시킬 것

14일 민우회 성명

「한국여성민우회」(회장 이경숙, 민우회)는 14일 "방송광고시간의 확대는 남녀차별철폐와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의 제검토를 요구했다. 민우회는 "방송광고시간 확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광고는 선정주의와 전통적인 여인상을 함께 부각시키며, 가치관을 혼란시키고 왜곡된 성문화를 앞장서서 유포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광고의 확대는 여성의 상품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대교수협, 유초하교수 수배해제촉구

「충북대교수협의회」(회장 주수중)는 14일 이 대학 철학과 유초하 교수가 사민청 활동혐의로 수배된 것과 관련, 유교수의 수배 해제를 촉구했다.

교수협의회는 성명에서 "유교수는 그동안 『철학연구』 등의 학술지를 통해 주체사상을 날카롭게 비판해 왔으며 폭력혁명으로 남한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운동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취해온바 있어 그가 이적행위를 했다는 수사당국의 발표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히고 "수사당국은 수배조치를 해제해 유교수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달의 주제 -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은, 사회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약하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장애물의 제거를 통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사회개발정상회의(WSSD), 민간단체 논의 본격화

14일, '제1회 인간사회개발 한국 포럼' 열려

내년 3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사회개발에 관한 세계 정상회의(WSSD)를 준비하는 국내 민간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7월 결성된 '인간사회개발 한국포럼(Korea NGO Forum for Social Development)'은 지난 14일-15일 '한국사회와 지속가능한 인간적 사회개발'을 주제로 의정부 YMCA 다락원에서 제1차 포럼을 개최하여 사회개발회의(WSSD)의 배경과 주요 내용, 지난 8월 뉴욕에서 열린 제2차 준비위의 진행상황 및 국내 민간단체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로써 지난 7월 기사연 주최로 열린 두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사회발전회의 준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온 국내의 민간단체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국, GNP는 선진국 근접, 인간개발지수는 후진국 근접

강문규 YMCA사무총장은 기초발제에서 "한국이 GNP는 선진국에 가깝지만 유엔개발계획(UNDP)이 제시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에서는 오히려 후진국에 가깝다"고 지적하면서 사회개발정상회의를 국내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양적이고 물질적인 경제성장 모델을 보다 정의롭고, 참여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개발모델로 전환하는데 국내 민간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어서 제1, 2차 준비위원회에 한국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 외무부 국제연합 심의관인 서대원 국장은 유엔이 사회개발회의 개최를 결의하고 지금까지 준비해온 과정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나서 가난, 고령화, 사회통합의 세가지 큰 주제 이외에도 의체, 공식개발원조기금(ODA), 이주(외국인) 노동자, '20:20 계약' 등 이번 2차 준비위의 정부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의 상반된 입장을 설명하였다.

보편적 가치와 약자의 대변하는 민간단체 참여 중요

또 인권협 대표로 이성훈씨가 제2차 준비위의 참가 활동과 민간단체회의의 진행 상황을, 경실련의 곽창규 국제국장이 민간단체와 유엔개발계획의 주요 제안, 기사연의 이신태 선임연구원이 국내 민간단체 준비에 대한 제안과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각각 발표하였다.

이성훈씨는 "빈곤과 실업, 사회제동 지구촌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방안 제시보다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가 급급한 정부대표들의 태도를 보면서 보편적 가치와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간단체의 적극

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함을 다시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신태씨는 2차 준비위에 여성, 인권, 개발등의 민간단체 이외에도 장애인, 노인, 아동, 청년등 다양한 단체들의 참여했으며 양한 단체들의 참여했으며 상대적으로 여성단체의 활약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하면서 "국내준비과정에서 보다 폭 넓은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갈등 해소 위한 합리적 제도 마련 계기 삼아야

이어서 정수복 박사는 '한국사회에 있어 사회개발의 전개과정과 향후 과제'란 주제의 강연에서 근대화론, 종속이론, 신홍공업국(NICs)등의 개발/발전에 관한 이론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나서, '외부관찰자'가 아닌 '내부경험자'의 관점에서 한국의 사회개발과 관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및 국제연계개발계획의 주요 제안, 기사연의 이신태 선임연구원이 국내 민간단체 준비에 대한 제안과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각각 발표하였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

-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한가위 전에 은행으로 발걸음을 돌려주세요

정경식 '공안검사', 헌법재판관 부적절

인권억압인사 헌법재판관 임명, 정부 개혁의지 의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15일 성명에서 "변화와 개혁을 기치로 내세운 문민정부가 과거 헌법을 유린하는데 적극 참여하고 인권을 억압한 반개혁적 인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한 것은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히고, "헌법재판관 임명과정에서 헌법수호의지와 인권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등이 검증되지 않은채 여야의 당리당략적 이해에 좌우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변협은 또 "법조 및 시민단체에서 극력 배제를 주장해온 정경식 재판관이 포함된 데 대하여 놀라움과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정경식 재판관은 유신체제에서 공안검사로 있으면서 민주화운동과 인권회복운동을 벌인 수많은 시민 및 학생들을 긴급조치 위반사범으로 몰아 구속, 소추했고, 5공화국 출범 이후 국보위에서 미민주적인 인권억압행동을 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또 정경식 재판관이 "법률가의 양심과 시대정신에 입각하여" 스스로 헌법재판관의 자리에 서 물러나기를 촉구했다.

유초하교수 수배해제촉구

「유초하교수와 진보운동 탄압에 반대하는 교수모임」(공동대표 양재혁·안현수·윤구병)은 15일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 사건과 관련, 지명수배조치를 내린 유초하교수에 대한 수배해제조치와 자유로운 학문활동보장을 요구했다. 교수모임은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문제삼

고, 국립대 정교수를 마치 현행범이라도 되는 양 지명수배를 내린 것은 상식에 비추어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또한 "유교수에 대한 조치는 우리 사회에 '자유민주주의'란 말은 있어도 자유와 민주주의 실질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유교수에 대한 수배해제와 진보운동 단체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정대협, 군위안부 해결 위해 14-18일 일본방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등, 정대협)은 오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일본을 방문하여 정신대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일본의 민간단체와 정부를 방문하고 있다.

윤정옥 정대협 공동대표, 강덕경 할머니등 11명의 대표단은 15일 오후 일본의 「국제중재재판소를 지원하는 모임」과 공동으로 정신대문제의 국제중재재판소 회부를 촉구하는 모임의 발대식을 가졌다.

또 16일에는 참의원 제2의원회관에서 일본정부가 계획중인 '관민합동의 위로금' 모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며, 일본정부의 계획에 대한 규탄집회 및 시위를 「재일위안부 재판관 지원모임」, 「필리핀인 전 중군위안부들을 지원하는 모임」 등과 공동으로 도시마 구민센터에서 17일 개최한다. 연락처: 81-3-3364-2895 문의: 정대협(263-2802)

◆ 인권 간행물 ◆

□제1차 인간사회개발 한국포럼 - 한국사회와 지속 가능한 인간적 사회개발-인간사회개발 한국포럼

·주요내용: 사회개발 세계정상회의(배경, 특성, 의제와 쟁점, 준비과정/사회개발정상회담 2차 준비위원회 민간단체 참가보고서(구성과 진행, 주요행사일정, 주요내용과 쟁점, 한국 민간단체 준비에 대한 제안, 향후 행사일정) 등

□사회개발정상회담 자료모음집-제2차 준비위원회 관련자료(영문)-인간사회개발한국포럼

·주요내용: 사회개발정상회담 소개 및 안내문서(사회개발정상회담 개최배경 및 의제-유엔 홍보국, 유엔주도의 각종 세계회의의 현황과 민간단체가 참가할 수 있는 방법 소개)/유엔문서(선언문과 행동계획 초안 및 1차수정안)/정부와 유엔기구 문서(한국정부대표의 빈곤 및 고용에 대한 발언문)/민간단체 입장 및 발언(주요 민간단체의 입장)/ESCAP과 아태지역 NGO 문서 등

□국제앰네스티(94년8월)-한국지부(053-422-1956)

·주요내용: 특집1-아시아·태평양 지역대회 이모저모/특집2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앰네스티/집중기회-자유와 최일선(튀니지)/국가별 캠페인: 압제와 죽음의 땅, 동티모르/주제별 캠페인:실종과 정치적 살인에 대한 캠페인/난민캠페인:스리랑카 난민/인권교육:난민을 위한 활동 등

□열린터 개설식 자료집-성폭력상담소(576-7127-8)

·주요내용: 열린터를 열며/열린터의 필요성과 기능-성폭력 피해 후유증은 이렇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본 열린터의 필요성, 열린터는 이렇게 운영됩니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열린터 운영위원 소개)

□나눔터 제12호(94년 8월)-성폭력상담소

·주요내용: 이런 일을 했습니다/여기는 상담실/이렇게 도왔습니다-후유증/더 좋은 상담을 위하여/기획- 성희롱, 바로알자/특집-서울대 조교 성희롱 판결을 둘러싼 매스컴 태도 분석(최상진)등

□우리가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 및 규약, 규정집 -대우자동차 노조, 032-520-2942-4)

·주요내용: 우리나라 노동법의 성립과정/노동법 개정의 정치·경제적 배경/ILO공대위의 노동법 개정 핵심요구안/노동관계법/노조 단체협약의 여러 규정 및 규약 등

□한울노동법강좌5호-한울노동문제연구소(593-6501~3)

·주요내용:노동법 교실-기업의 조직변경과 근로관계 이전/판례모음 및 판례해설 등

□노동운동(94년9월)-도서출판 승리(766-4803)

·주요내용: 94상반기 노동자투쟁의 평가와 교훈(김연환 등)/기획:하반기 정세와 노동자투쟁의 기초(박용식), 노동법개정 투쟁 이제는 전조함원의 투쟁으로(박승호)등

□노동과 건강-노동과 건강연구회(☎ 866-9175)

·주요내용: 특집-정부의 산재예방정책/저비용고효율 산재예방기법의 보급에 대한 각계의 의견(강순중등)/개정 업무상 재해 인정안에 관한 검토(노동과 건강연구회 정책실)/외보 연대회의에 듣는다(조홍준)/지상중재-산재보험의 합리적 운영체계구현에 관한 공청회 등

□어깨동무 9(이내창열사추모사업회(821-3212))

·주요내용: 제5기 이내창 열사기제를 다녀와서/하반기 추모사업회 사업방향 등

<이달의 주제 -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은, 사회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약하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장애물의 제거를 통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재일정치범 류정식씨 면회 외국인 이유로 거부

일본 「류정식회」 14-16일 한국방문 "감옥안팎에 있으나 서로 통함을 믿어"

일본의 「류정식씨를 지원 하는 회」(대표 와다 데루오 동경대학교수, 류정식회) 회원들은 14일 입국하여 안동 교도소에 수감중인 류정식(재일정치범, 무기징역, 75년 구속)씨의 면회를 신청 하였으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92년 「류정식회」가 생긴 이래 1년에 3번정도 방문했으나 그때마다 번번히 같은 이유로 되돌아가곤 했다. 그러나 이마오가 후미고(63·「류정식회」 사무국장)씨는 "비록 면회가 되지 않아도 류씨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도 알리라 생각된다. 감옥안과 밖에 나뉘어 있어도 서로 통하는 것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한국 교도소측에 일본에서도 류씨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도 면회가 되었지만 '다음에는 면회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돌아간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이마오가씨는 민주당 인권위에 류정식씨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면회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인권단체들이 노력해 줄 것을 희망했다.

현재 일본에는 재일정치범을 후원하는 모임이 「류정식회」를 포함 13개가 있고, 「전국회의」등 전국적 연대모임을 갖고 있다. 1백명여의 회원으로 이뤄진 모임 「류정식회」는 일본 시민이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류씨를 알리는 홍보활동과 석방을 바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상남비리 고발 전 경장, 파면처분취소 소청

참여연대 고발지원센터 동참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의 내부비리 고발자 지원센터(소장 박연철)는 16일 오후 양천경찰서 신정1파출소 김석원 전 경장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김경장과 함께 접수했다. 김 전 경장은 지난 8월 23일 파출소내 비리와 관내업소에 대한 월정금 수수 비리를 SBS등 언론에 폭로, 징계위에 회부돼 8월 29일 파면되었다.

원진문제 노동부 왜곡

9월 14일 국회 노동환경위원회에서 남재희 노동부장관은 "93년 7월 5일 원진례이은 폐업당시 취업자는 811명, 직업병으로 휴업급

자를 받은 자는 345명, 취업확정자 60명, 기타 자영업 종사자는 300명"이라 밝혔다. 그러나 원진례이은비상대책위(위원장 이홍주)측은 "폐업 이후 55명만이 휴업 급여를 받았고, 실제 취업

한가위맞아 찾아간 전해투 농성장

'가을투쟁' 재정 마련 한창 "집에 내려가면 겨울옷 챙겨와야지요"

작년 한가위때는 등근 보름달을 바라보며 '내년 추석엔 떡값 받게 되기를' 희망했던 전국의 해고노동자들.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94년 9월 16일 오후, 여의도 민주당에 자리잡은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임시위원장 강준철 코리아타코마 해고노동자, 전해투) 사무실은 분주히 움직이는 노동자들로 활기차 보였다. 투쟁소식란엔 '전해투 재정마련 추석세트' 품목이 적힌 홍보물이 붙어 있었다. 전통건강선물세트, 녹기삼 세트, 북한 명주등을 가득 싣고 전국 대공장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김경장과 함께 접수했다.

김 전 경장은 지난 8월 23일 파출소내 비리와 관내업소에 대한 월정금 수수 비리를 SBS등 언론에 폭로, 징계위에 회부돼 8월 29일 파면되었다.

1년에 몇 번 못찾아가는 집이지만 올 추석엔 본부를 지키는 몇 명을 제외한 모두 내려갈 준비로도 바쁘다. 여름옷을 가방에 넣고 다시 겨울옷을 챙겨와야 한다는 말에도 생기가 넘치는 것은 기자의 착각인가.

작년 이맘때는 마포 민주당사에서 단식농성자 10명을 포함해 모두 30여명의 해고노동자들이 싸움을 벌였다고 한다. 올해도 연휴기간 투쟁은 계속된다. 포항제철, 의료보험, 풍산금속 해고자들이 텐트농성을 벌일 계획이고 있다. 칠판 한귀퉁이엔 구속동지 면회현황이 지금의 전해투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본격적 투쟁에 들어서게 된다고 한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라는 인사와 함께 안경호씨는 "올가을 투쟁에는 박수도 좋고 '지지도' 좋지만 이제는 함께하는 투쟁이 필요하다"며 웃어보였다. (김수경)

자는 27명이다. 현재 재취업을 희망자는 600명에 이른다"고 반박하였다.

제2회 시민인권상 양길승 서울변회 23일 시상식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창국)는 제2회 시민인권상 수상자로 양길승(성수의원 원장)씨를 선정하였다. 시상식은 9월 23일 오후 6시 30분 인터컨티넨탈 호텔.

<인권하루소식> 252호는 9월 27(화)에 발간합니다.
풍족한 한가위 되십시오.

단체탐방 31 /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한국지부

탈출을 시도하는 숨막히는 영화를 보면, 높은 감시탑에서 빙빙 돌아가는 감시의 빛을 쫓아 없애고 싶다. 그 빛앞에서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란 없고 '자유'는 불가능해 보인다. 방어를 할 수 없는 철축같은 어둠속에 '아찔'하게 비추는 빛! 그 빛과 대조적인 빛이 여기에 있다. 철조망에 둘러싸여 조용하고 따스한 촛불 하나! 그것이 국제엠네스티의 상징이다. 엠네스티의 활동은 간단히 말해 대중적인 관심의 등불을 탄압의 피해자들에게 그리고 고통을 가하는 정부당국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름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박한 실천이 모아졌을 때 그것은 권력자들에게 자신들의 행동이 주시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신들의 행동을 개선하도록 촉구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자유와 정의를 밝히는 대중적인 관심의 등불

61년, 자유를 위해 건배한 죄목으로 7년을 선고받은 두 명의 포르투갈 학생이 있었다. 이들에 관한 보도를 본 영국인 변호사 피터 베넨슨씨는 불의의 희생자들을 구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의 생각은 항의의 편지로서 정부관계자들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었다. "사면"을 위한 탄원, 1961"이라 이름붙인 이 캠페인은 정치적·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수감된 전세계 수인들의 석방을 위해 평화적이고 중립적인 탄원을 벌이도록 사람들에게 촉구하였다. 이 수감자들은 '양심수'로 불렸으며 이로써 이 새로운 어휘는 국제적인 명칭이 되었다. 이 캠페인은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불렀으며 이로써 단순한 폭로를 위한 노력으로 시작한 일이 영구적인 국제적 운동으로 전환되었다. 이것이 엠네스티의 시작이다. 오늘날 1백50개국의 백만이 넘는 회원, 지지자, 정기적 후원자들이 엠네스티 운동을 지원하며 이들을 6천개 이상의 지역그룹들이 전세계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 해마다 이 운동은 수천에 이르는 인권침해 희생자들을 위하여 끊임없는 탄원을 보내고 있고 자료조사와 재판감시 혹은 정부당국자와의 접촉을 위해 다수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공식적인 관계를 확립해 오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엠네스티의 활동을 국내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 지난 '아-태지역 엠네스티 회의'의 서울 개최시 북한인권문제를 떠들어대기도 했고, 똑같은 언론이 93년에는 '비전문가의 인권판정'이라는 칼럼을 통해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비전문가 몇명이 그렇게 평가해도 되느냐는 식으로 엠네스티 발표를 깎아내린 예도 있다. 덕분에 엠네스티가 한국에서 유명해졌다고 웃어넘기는 엠네스티 한국지부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대구 시내에 자리한 지부사무실의 문에서도 예의 그 따스한 촛불의 빛이 먼저 반겨주고, 세계 곳곳에서 그 빛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양심수들의 얼굴포스터가 가득하다.

엠네스티 한국지부는 70년대 중반, 몇몇 재야인사와 나길모신부(외국인)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 처음부터 국내적으로는 유신체제하에서 반국가단체로 인식되어 탄압받을 수 밖에 없었고 밖으로는 자국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 엠네스티 지침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런던국제사무국과 갈등을 빚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던중 80년에 주요 간부가 구속되면서 서울과 광주를 중심으로 했던 모임이

다 깨질 수 밖에 없었다. 82년 다시 재건을 시도했으나 탄압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소극적이고 친정부적인 활동으로 전락했으며 그 당시 민정당 간부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 돈을 많이 내는 회원이 주를잡는 비민주적인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활동 그룹은 존재하지 않으면서 지부사무실만 서울에 존재했다. 이에 허창수신부(독일인)와 배영근신부(벨기에인)를 중심으로 엠네스티 본래 정신과 민주적 운영을 회복하자는 노력이 시작되었고 국제사무국에 탄원서도 냈다. 이에 친정부활동과 엠네스티 규약을 어긴 것으로 판명

되어 85년 서울지부가 공식적으로 폐쇄되었다. 이때부터 지부는 없이 그룹활동이 시작되었다. 엠네스티 정신에 충실한 실질적 활동을 하면서 그룹도 늘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한국연락위원회, 조결위원회로의 발전, 92년 사무실 운영 재개, 93년 3월에 지부로 재승인받게 되었다.

그들이란 엠네스티 운동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는 회원들이 일상적인 지역사회에 근거를 두고 참가할 수 있는 조직을 말한다. 그룹은 만들어진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며 폐쇄되면 그 자리는 비워둔다. 현재 서울에 4그룹(직장인 중심), 17그룹(여대생중심), 21그룹(서울대학생모임) 등이 있으며 대구에 2,10,11,13,15,16,18,20그룹과 엠네스티 한국지부가 있고 대전에 12그룹(변호사모임), 예비그룹(주부모임), 마산창원에 14그룹, 전주에 19그룹 등 한 그룹에 평균 8-10명, 총 200여명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룹은 규모가 커지면 나뉘지게 되어 그룹을 항상 새롭게 하고 '할일'이 항상있게 된다.

현지부(지부장 허창수신부)의 조직은 총회와 집행위원회(그룹대표의 모임),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사무국장 오완호)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무위원회는 캠페인(국가별, 주제별), 사형제도, 난민, 인권교육, 긴급구명, 소식지, 기금조성, 언론담당으로 나뉘어 활동한다.

한국지부는 세계적으로 볼때는 아주 작은 지부이나 아태권에서는 중간정도의 규모이다. 그러나, 한국지부만큼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지부는 없으며 그속에서 일군 성과를 볼 때 앞으로의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엠네스티활동규정 중 '자국관련활동'규정-엠네스티회원은 회원자격으로서 자국내의 인권문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 평가하거나 관련행동을 하지 않는다-에 대해 사람들이 '우리 문제도 심각한데.....'라는 반문을 많이 한다. 그러나, 엠네스티의 이름으로 자국내의 인권침해 반대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전세계의 동료회원들이 그러한 인권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러한 활동의 효율성을 배가시킨다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자격의 활동'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엠네스티 회원의 수는 명목상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실제활동가라는 점에서 힘이 있다. 이들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간헐적인 사람들이 있는 한 이들이 편지를 쓰고 탄원을 하고 피켓을 드는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류은숙)

706-600 대구 경북채신청 직영우체국 R.C.O. Box 36호
전화 : (053) 426-2533 팩스 : (053) 422-1157

<이달의 주제 -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은, 사회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약하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장애물의 제거를 통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유가협총회·시민인권상·장애우대학등 인권단체행사 줄이어 유가협 신입회장 선출, 장기수 '만남의 집' 개소

유가협, 의문사 진상규명 결의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 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지난 23일 오후 성균관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제9차 정기총회를 갖고 회장에 박정기(고박종철열사아버지)씨를 선출했다. 임기는 올 9월부터 96년 8월까지이다. 50여명이 참석한 정기총회는 신입회원 승인, 8차 회차연도 사업보고 및 결산서 승인, 9차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등의 순으로 치러졌다.

유가협은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내부 조직력 강화, △의문사등

인권침해사례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는 제도와 법, 기구의 철폐, △자주민주 통일을 위한 연대투쟁등에 힘쓰기로 했다.

출소장기수 만남의 집 개소

「민중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양심수 가족후원회'(회장 권오현)는 출소장기수들을 위한 만남의 집을 지난 9월 24일 개소하였다.

이번 집들이에는 1백50여명에 이르는 장기수선생남, 인권단체 관계자, 국회의원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권오현 후원

회장은 만남의 집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과 도와주리려 노력하는 제도와 법, 기구의 철폐, △자주민주 통일을 위한 연대투쟁등에 힘쓰기로 했다.

7기 장애우대학 개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는 제7기 장애우대학을 지난 9일 시작했다. 이번 7기에는 62명이 등록신청했고, 매주 금요일 연구소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회비는 5만원, 지금도 등록이 가능하다.

강의내용 : 장애발생의 원인과 문제점1-2(9월30일/10월7일)/장애인복지정책의 이념과 방향(10.14)/한국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10.21)/장애인 편의시설의 현황과 과제(10.28)/장애인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11.4)/언론과 장애인복지(11.8)/한국장애인고용정책의 방향과 전망(12.9)등

문의전화 : 521-5364

여성의 전화, 강서지부 개소

「한국여성의 전화」, 강서지부가 지난 24일 문을 열었다. 강서지부는 교육원과 상담실을 운영하며 부설교육원을 통해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게된다.

일반전화는 694-4050~1, 상담전화는 263-6464~5, 601-1411
주소 : 강서구 화곡3동 1013-20 서린상가 2층

◆ 공 판 안 내 ◆

- 9월 27일(화)
 - 박용진, 국보법, 2시, 320호, 속행, 3단독(판사 최철)
 - 두말분교교과회최소송, 10시, 413호, 결심, 민사13부
 - 황석영(대법 파기환송심), 10시, 404호, 고법 합의를5부
- 9월 28일(수)
 - 안재구(구국전위 사건), 국보법, 2시, 311호, 1회, 합의 21부(주심 윤강렬 판사)
 - 김민철, 국보법, 10시, 321호, 선고, 6단독(판사 하광호)
 - 신광수등, 국보법, 2시, 424호, 9단독(판사 이길수)
 - 이순심, 남편살해혐의, 2시, 302호, 항소심
- 9월 29일(목)
 - 김남근, 국보법, 10시, 321호, 선고, 5단독(판사 백현기)
 - 박현용, 국보법, 10시, 425호, 선고, 4단독(판사 박성직)
 - 김병목, 국보법, 4시30분, 320호, 3단독(판사 최철)
 - 문국진씨 국가손배소송, 2시, 559호, 민사13부
- 9월 30일(금)
 - 최은열, 국보법, 10시, 317호, 선고, 1단독(판사 변진광)
 - 김상현, 국보법, 10시, 421호, 선고, 8단독(판사 조승곤)
 - 신학철, 국보법, 3시, 422호, 속행, 항소5부

가난, 고용, 실업등 주제검토 인간사회개발한국포럼 운영위

사회개발 정상회담(WSSD)을 실무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첫 운영위원회가 기사연,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연, 영등포산업선교회 등 국내 주요 사회운동단체의 실무대표자가 참여한 가운데 26일 기사연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지난 9월 14일 열린 제 1차 포럼에서 논의된 '공동의 연대 활동의 수준 향상'과 '개별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의 보장'이라는 두가지 운영원칙에 합의하였고 월 1회 모이는 운영위원회 아래에 기획, 문서작업 및 출판 재정을 담당하는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으로 사회개발회의(WSSD)와 관련한 연구 검토되어야 할 예상주제로 사회개발회의의 3대의제인 가난과 사회복지, 고용과 실업, 사회통합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인간적 개발(SHD)', 탈냉전 시대의 유엔개혁, 아펙(APEC), 여성과 사회개발, 한국의 사회경제개발 모델 등이 거론되었는데 구체적인 행사일정은 10월 5일(수) 오후 3시에 기사연에서 열릴 예정인 기획소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연락및 조정업무를 맡을 간사단체로 기사연이 선출되었고 가급적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태지역 사회개발 각료급 회의에 각각의 참가단체들이 대표자를 파견할 것을 결의하였다.

참여연대의 『만나고 싶어요 1』

변정수 전헌법재판관 초청, 만남과 대화의 시간

□주제 :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사법부 개혁
□일시 : 9월 28일(수) 오후 7시30분-9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회의실(전화 796-8364)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각 인권단체 행사 안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창립20주년 기념미사 및 기념연

△기념미사
·일시 : 9월 27일(화) 오전 11시
·장소 : 명동대성당
·집전 : 사제단 공동집전
△기념연
·일시 : 9월 27일(화) 오후 12:30분
·장소 : 가톨릭회관 3층강당

■성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 위한 공개강좌

·일시 : 94년 9월 27일-11월 9일(매주 화,목)
·주최 : 한국성폭력상담소
·주요내용 : 여성학 개론, 성폭력 예방, 상담원리와 기법, 사례연구, 성폭력의 의학적 법적 대응방안 등
·주요강사진 : 문국진(법의학회 회장), 박금자(산부인과 전문의), 박혜란(여성학자), 구성애(성교육 전문가), 이종걸(변호사), 김강자(서울시 경민원실장) 등
·문의전화 : 576-7128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9월 월례기도회

·일시 : 9월 29일(목) 오후 7시
·장소 : 미정
·주제 : 신공안정국에서 구축된 사람들의 석방을 위한 기도회
·강사 : 남규선(민가협 총무)씨 등
·문의 : 393-4662

■두밀분교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가을 운동회

·일시 : 10월 2일(일) 오전 10시-오후 4시
·장소 : 두밀분교 운동장
·문의 : 0356-82-1750(두밀분교 폐교철회추진위원회) / 02-766-7326(두밀분교살리기 연대모임)

■천주교인

권위원회 94연례 정기모임

·일시 : 10월 2일(일)-3일(월)
·장소 : 제주도 성 이시돌 교육관 (전화 064-96-4181)
·문의전화 : 777-0643

■강기훈씨 어머니 권태평씨의 수기집 『너를 위한 촛불이 되어』 출판기념회

·일시 : 10월 6일(목) 저녁 6시 30분
·장소 :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 4층 중강당

·회비 : 1만원(책값 포함)
·내용 : △1부-강연'아들아!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권태평씨/ 강연'악마가 만들어낸 사건의 한가운데서'-강기훈씨 등//△2부-노래와 다과, 대화의 시간(출연 안치환 등)
·주최 :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선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문의전화 : 796-8364/5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미군범죄 추방 캠페인

·일시 : 10월 7일(금) 오후 5시
·장소 :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
·문의전화 : 744-1211

■한국여성의 전화 법률실 무교육

·일시 : 10월 8일(토)-12월 10일(토) 매주 토요일 오전 10-12시
·장소 : 여성평화의집 교육실
·교육일정 : 1.이혼본안사건(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청구) 2.이혼소송전의 재산보전 방법 3.형사고소장 작성요령
·강사 : 김삼화·조병룡·이종걸·배금자·최일숙 등 여성의 전화 변호인단
·교육비 및 문의 : 5만원
·문의전화 : 269-2962

쉼터 기금마련 장터에 물품협조 가능

「한국여성의 전화」(회장 이문우)는 10월 28일 가질 제9회 쉼터 기금마련 장터를 위해 기업과 개인의 물품협조를 받는다. 의류, 신발 등 생활용품과 가구, 가전제품, 어린이용품 등의 물건을 기다린다.
문의전화 : 269-2962/4

<이달의 주제 - 장애인 권리>

장애인은, 사회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약하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장애물의 제거를 통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서울구치소 추석특식 구매물에 썩은 통닭나와

50여명 식중독 증세 구치소 사과거부등 후속조치 무성의

【속보】추석특식으로 서울구치소에서 팔린 삶은 통닭을 먹은 재소자중 27일 현재 50여명이 식중독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한 재소자는 "지난 9월 17일 한마리당 6천원씩에 팔린 삶은 통닭은 제조원, 제조일자, 회사이름도 적히지 않은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이와 같은 특식을 구매한 사람은 3천여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1천6백여마리가 썩고 곰팡이가 켜거나 아주 차가운 상태였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의 2사를 중심으로 한 재소자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 지난 26일 구치소장과 면담을 통해 구치소장의 사과등을 요구했으나 구치소장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시국사건 관련 재소

자 뿐 아니라 일반재소자도 이에 대해 매우 분개하

고 있다고 이 재소자는 밝혔다.

외부인 접견, 서신 확대, 반인간적 징벌철폐

27일 변협, 행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27일 법무부가 지난 8월 25일 입법예고한 행형법 개정안과 관련, 외부교통권의 확대, 인간존엄성에 반하는 징벌폐지, 과밀수용 극복과 인간으로서의 최소생활조건 보장 등을 골자로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정부 개정안이 친족 아닌 사람과의 접견, 서신규정을 완화하고 있는 취지에 찬성한다면서 소장이 접견, 서신을 금할 수 없는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해 재소자의 외부교통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도록 촉구했다.

한 징벌에서 감식, 접견·서신 금지, 작업상여금 일부 또는 전부 삭감, 운동 정지, 도서열독 금지 등 인간 존엄성에 반하거나 교화목적에 반하는 징벌을 폐지하고 금지도 독거실에서 수용하면서 여가활동과 작업만을 금지하는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밖에도 행형법에 △차별 금지, △비인도적 처우 금지,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원칙선언 등 구급차 처우의 기본원칙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특히 미결수용에는 선전, 전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인 접견실의 차폐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변호인이 녹음기와 사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의견서는 이와 함께 행형법에 과밀수용을 지양하

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저의 생활조건을 보장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과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이들이 위원장을 호선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폐교에 따른 학생, 주민피해 의견서 요청

두밀리분교 폐교처분 취소청구 소송 5차 공판이 27일 서울고법 민사20부 제1특별부(주심 김기동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원고측이 지난달 26일 경기도의회를 대상으로 한 '조례무효확인'소송과 병행 심리로 진행되었다. 피고 경기도교육청은 "폐교를 결정한 것은 도의회 조례에 따른 것일 뿐 경기도의회나 경기도교육청도 피고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측에 두밀리분교 폐교조치가 마을주민과 어린 학생들에게 어떤 피해를 가져왔는지를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25일 오전 10시 413호.

한편 이날 공판후 두밀리주민과 두밀리학교살리기 연대모임 회원등 15명은 10월 2일 있을 두밀분교운동회의 준비등을 점검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

제 일 128-10-131017 예금주-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서준식
국민 015-21-0723-021 예금주-서준식

참여연대의 『만나고 싶어요 1』

변정수 전헌법재판관 초청, 만남과 대화의 시간

□주제 :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사법부 개혁
□일시 : 9월 28일(수) 오후 7시30분-9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회의실(전화 796-8364)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노민문연 회원등 8명 연행 불법수색도

이적단체 규정에 수사 초점

27일 새벽 5시부터 7시사이 서울지방경찰청은 '노동자민족문화운동연합'(이하 노민문연) 소속회원 및 전활동가 연성수씨등(41세) 8명을 각자의 자택과 노민문연 사무실에서 긴급구속, 홍계동 대공본실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노민문연 회원 이승구(28)씨를 사무실에서 연행하면서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3박스 분량의 자료등을 불법으로 압수하고, 이씨의 자택에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오늘 오후 접견을 한 김재안 변호사에 따르면 "조사는 노민문연 창립시 활동강령이나 규약등을 이적성으로 몰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가족들은 연성수, 임창기, 이철우씨 경우 2년전에 단체활동을 그만 두었다며 "몇년전의 활동을 문제삼는 것은 최근의 공안분위기에 편승하여 문화예술운동을 탄압하려는 것에 다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민문연은 서울지역에 구로, 중부지역 등에 지부를 둔 공개문화단체로 문화학교, 풍물,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연행자 명단 : 연성수(전 서울노동자민족운동연합의장, 전국노동자문화운동단체협의회 공동의장), 이철우(32세), 임창기(31세), 박원근(30세), 김미정(29세), 김동미(29세), 이승구, 박병철(25세)

수배자 명단 : 유기중

정보접근권은 기본권, 시민의 참여확보 중요

'새로운 언론매체와 시민 참여' 토론회 참여연대

정보고속도로 시대를 맞아 미디어의 시민참여 확보는 정보접근권의 측면에서 인권의 문제임을 주장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27일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 3인,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새로운 언론매체와 시민참여' 주제토론회에서 코닝(미국 언론민주화운동 전문가, 다큐멘터리 제작자)씨는 "의회와 정부측에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참여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케이블 TV, 지역라디오, 컴퓨터를 통한 시민네트워크 전산망화 등의 활동성패에 대한 예를 통해 시민의 기본권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미대법원이 케이블 TV 대한 시민의 접근권을 막으려는 것에 대해 싸우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민중방송검열권이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소송을 제기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의 방송참여를 통해 의회, 기업 활동이 감시되고 있으며 정치인의 활동도 비디오촬영 등을 통해 자료로 축적, 비리추방에 한 몫을 하고있다고 한다.

□청소년단체 '샘' 사건 진상규명과 고등학생 인권유린 실상 폭로 기자회견

·일시 : 9월 28일(수) 오후 2시
·장소 : 영등포 성문밖교회
·주최 : 청소년단체 '샘'

끝으로 코닝씨는 국민계몽을 통해 정보접근권에 대한 필요성을 알려내는 작업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신문에 난 기사도 국가기밀 될 수 있다"

작가 황석영씨 7년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작가 황석영씨에 대한 재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부장판사 유현)는 국가기밀누설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7일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문기사, 책 등을 통해 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도 반국가단체에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면 이는 국가기밀에 속한다"며 "황씨가 방북당시 국내 재야운동가들의 신상과 운동권동향 및 국내 해 관련 사항을 북한에 알려준 것도 국가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89년 3월, 90년 8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 당시 북한 김일성 주석과 만나고 범민련 해외본부 결성을 주도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됐으나 1, 2심에거 국가기밀 누설혐의중 널리 알려진 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상고했었다.

◆ 인권 간행물 ◆

□함께걸음 9월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주요내용: 특집- 접근권 그 현장을 가다/ 특별좌담-장애우 특별입학제도와 장애우 교육권 확보/조점-기업활동에 가로막힌 장애우 노동권리(전홍윤)/사람들-뽀뽀수첩' 만든 청각장애우 추영무씨(이태곤)

□운동본부소식 9월(통권7호)-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744-1211)

·주요내용:권두언-건전한 대미비판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이장희교수)/이달의 미군범죄-평택 최일재씨 추락사 건등 4건/기획연재-한미행정협정! 이것이 문제다/운동본부소식

□후원회소식(통권35호)-민가협 양심수후원회(☎763-2606)

·주요내용: 출소장기수를 찾아서-이구영선생님편/우리의 주장-학문·사상·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양심수가족을 찾아서-박동운님편/나의 삶 나의 일터-낙성대 이야기(조명희)/목요일의 외침-스무살 동생을 잃어낸 국가보안법(김용민)

□다시 전선으로(94 여름)-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784-6037)

·주요내용: 텐트농성 수기(의보해협등)/옥중편지(신승인등)/기획특집-해고노동자 복지문제 해결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전환점/공정회-해고문제해결을 위하여/투쟁보고(상활실)/93투쟁종합(선진국)/집중기획-93전해투 투쟁평가/국제연대 활동자료등

□통일맞이(창간준비2호)-통일맞이칠천만겨레모임(☎313-8201)

·주요내용:상반기 사업보고/하반기 사업보고/통일교양-북미회담 합의의 내용과 배경, 그리고 과제(정책연구소)

<이달의 주제 -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은, 사회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약하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장애물의 제거를 통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구국전위사건' 안재구씨 첫 공판 열려

"자주·민주·통일 운동조직일 뿐 북과 관계 없다" 안씨 모두진술

구국전위 사건으로 지난 6월 구속된 안재구(61, 전 경희대 시간강사)씨 첫 재판이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부장판사 이홍훈판사 부부장판사 이홍훈판사 심리)로 열렸다. 안씨는 모두진술에서 "구국전위는 북한의 조선노동당과는 무관한 자주·민주·통일 운동조직"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기부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조선노동당과 관련지어 반국가단체라는 틀 속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구국전위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했으나 수령관이나 영도사상은 따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는 것은 적법치 않다"고 말했다. 또한 구국전위는 일본 동경에서 본부를 둔 남한 현지조직이라고 말했다. 안씨는 그의 운동사상과 주체사상을 밝히는 부분에서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민족해방운동 속에서 창조된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30년대 당시 조국해방을 조선인의 주체적 힘으로 해야 한다는 것과 대중에 근거한 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며, 수령관이나 영도사상은 북한의 특수상황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체사상은 "민족의 자주성을 구현하는 운동으로 자주·민주·통일 운동으로 나타

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남한사회에서는 자주적 운동은 주사파로 매도당하고, 자주성을 갖고 통일을 부(부장판사 이홍훈판사 심리)로 열렸다. 안씨는 모두진술에서 "구국전위는 북한의 조선노동당과는 무관한 자주·민주·통일 운동조직"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려연방제만이 유일한 통일방안은 아니며 현실에 맞는 다양한 논의 속에서 통일안을 내놔야 하고, 남북한이 상이한 체제나 운명공동체로서 통일방안을 창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두진술을 마치고 안씨는 "독재정권하에서 학자로서의 길은 막혔고 나의 불행은 분단체제에 원인이 있다. 나는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운동한 것이 체제전복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검사측 심문에서 안씨는 조서내용을 부정하며 "송치 직후 건강이 안좋아 연기요청을 무시한 채 시작된 조사는 12시간동안 계속되었고 검사 가 육하고 난리를 피워 대충보고 찍은 것이 이런 결과를 빚었다"고 말했다. 안기부 조사과정에서도 "못듣디게 괴롭혔다"고 진술해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했다.

또 안씨는 북한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사실을 부정하며 반국가단체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강력히 부인하고, 통일운동을 위해 힘쓰는 단체를 결성하려 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사측의 60항이 넘는 질문은 4시간가량 진행되었고 변호인 반대심문은 10월12일 오전 10시30분에 있을 예정이다.

'지방자치시대와 장애인 복지' 토론회 월 1회 실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는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의 주제 아래 매달 1회씩 여는 정책토론회를 시작했다. 28일 '지방자치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렸고, 이어 '지방자치제와 각 영역별 장애우복지의 발전방향', '지방자치시대의 주민복지와 장애우 복지 실현방안'의 대주제로 95년 3월까지 7차례 토론회가 있다.

이날 가진 토론회에서 이인재(한신대 재활학과)교

수는 '지방자치와 사회복지'란 발표에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변화되어야 할 사회복지제도의 과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명확한 업무분담이 되는 지방자치와 사회복지원칙 △재원과 사회복지시설의 공공화를 통한 지방자치제도와 사회복지체계의 확립 △지방자치제와 사회복지체계의 확립 △지방자치체제하 사회복지재정문제 △지역주민들의 참여문제 등을 꼽았다.

이밖에도 김병준(국민대 행정학과)교수가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를, 이상목(송파구의회)의원이 '지방의회의 현실과 과제'를 발표했다.

한국장애인단체 일본내 시설 방문 및 세미나 참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애인위원회 위원등 15명은 지난 26일 일본 장애인 시설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10월2일까지 진행되는 일정 속에는 △일본과 미국의 장애인법 비교 △교회의 장애인복지 참여방안 △한·일 NCC 교류등에 관한 세미나가 열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김정렬 실장, 신용호 간사, 이태곤('함께걸음') 기자 등이 이번 방문에 함께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

제 일 128-10-131017 예금주-서준식
농 협 011-01-404581 예금주-서준식
국 민 015-21-0723-021 예금주-서준식

고등학생 100여명 징계 및 조사, 경찰 왜곡수사 28일 청소년 단체 '샘' 기자회견

청소년 문화단체인 '샘'은 28일 낮 2시 영등포 성문박물관에서 '샘'관련 고등학생자치활동 탄압중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샘' 사건후 고등학생의 자치활동에 대한 제한이 경찰조사와 징계라는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샘'은 기자회견에서 '샘' 활동에 참가하고 UR 반대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이 학교로 찾아와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주체사상을 공부한 사실을 인정하라"는 등의 강요와 협박을 한 사실

을 밝혔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징계 또는 조사를 받은 고등학생은 1백여명 가량으로, 대영고, 동일여고, 동일여상, 영등포여상, 장흥고 등 10여개 학교로 나타났다.

기자회견에서는 또 '샘'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입건되었던 회원들이 연행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과 옥인동 대공본실에서 있었던 강제진술서 작성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샘'을 주사과 지하조직으로 발표된 경찰수사가 왜곡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헌법재판소 제 역할 못해 안타깝다"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참여연대' 초청간담회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오재식·홍성우, 참여연대)는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첫번째 행사를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을 초청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주관으로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사법부의 개혁"이라는 주제에서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은 "원칙적이며 반쯤적인 기질보다는 헌법판단에 기초한 합리주의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그동안의 헌법재판소 생활을 회고했다.

또한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은 "6월 항쟁의 산물로 현재가 만들어졌지만 6년 동안의 활동을 돌아볼 때 국민이 부여했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안타깝다. 국가보안법과 같은 권위적인 법이 시정되지 않아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9월 2일 사법감시센터에서 조사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그는 기본권 보장과 헌법슈호의 차원에서 헌법재판

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한 재판관으로 뽑힌 바 있다.

"어머니와 살고 싶다" 이순심씨 자녀 증인신문

구타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순심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28일 오후 3시 서울고법 합의 2부(재판장 이강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2차 공판은 이순심씨의 딸과 아들이 증인으로 나와 가정환경, 살인당시 상황, 이번 사건에 대한 느낌등을 증언했다. 변호사 증인심리에서 이신애(만말 23세)씨는 "어렸을적부터 계속되는 아버지의 술과 구타로 어머니는 많은 고통을 당하셨으나 이혼하지 않고 20여년동안 살아오신 이유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순심씨의 딸과 아들이 증인으로 나와 가정환경, 살인당시 상황, 이번 사건에 대한 느낌등을 증언했다. 변호사 증인심리에서 이신애(만말 23세)씨는 "어렸을적부터 계속되는 아버지의 술과 구타로 어머니는 많은 고통을 당하셨으나 이혼하지 않고 20여년동안 살아오신 이유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순심씨의 딸과 아들이 증인으로 나와 가정환경, 살인당시 상황, 이번 사건에 대한 느낌등을 증언했다. 변호사 증인심리에서 이신애(만말 23세)씨는 "어렸을적부터 계속되는 아버지의 술과 구타로 어머니는 많은 고통을 당하셨으나 이혼하지 않고 20여년동안 살아오신 이유입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민주정치개혁모임'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두환 전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집단을 내란죄로 고발하며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전면개정된 국가보안법은 위헌임을 천명한다

민주개혁정치모임이 확인한 바, 현재 국회법령 자료실에도 정부기록보존소에도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을 통과시킨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을 통과시킨 국가보위 입법회의 회의록은 없다고 답변하면서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은 80년 10월 27일 국가보위 비상대책회의에서 상정 의결된 것으로 대한민국 법령 연혁집에 기록되어 있으나 그 회의록은 보존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80년 10월 27일에 국가보위 비상대책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입법권이 없었다. 따라서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을 상정 의결하였다면 이는 분명한 위헌행위이며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은 무효이다.

국회도서관 의회법령자료실에 있는 국가보위 입법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국가보위 입법회의의 1차 본회의는 80년 10월 29일에 개최되었다. 따라서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10월 27일, 28일 양일중에 개최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당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10월 27일 오후 1시경 대통령 전두환을 대리하여 남덕우 전 국무총리가 주재한 소위 삼청동회의에서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을 만든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회의는 전혀 입법권이 없는 회의로서 현재 회의록조차 남아 있지 않다. 이 회의는 12.12 군사반란부터 5.18 광주학살로 이어진 전두환 군부쿠데타 집단의 내란죄를 결정적으로 도와준 회의이다.

우리 민주개혁정치모임은 위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여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의 위헌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국보위법"이 공포된 지 14년이 되는 10월 28일 이전까지 제출할 것이며, 소위 "삼청동회의" 참석자 전원을 내란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헌적 기구인 국보위에 의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은 원천적 무효이며 따라서 80년 12월 31일 국보위 제14차 본회의에서 개정된 국가보안법도 당연히 무효이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그 위헌성이 분명해진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기필코 이룩할 것이다.

1994. 9. 27.

활은 어머니가 충분히 죄의 댓가를 받으셨다고 생각하며 이제 나오셔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흐느끼며 얘기했다.

이순심씨의 딸과 아들이 증인으로 나와 가정환경, 살인당시 상황, 이번 사건에 대한 느낌등을 증언했다. 변호사 증인심리에서 이신애(만말 23세)씨는 "어렸을적부터 계속되는 아버지의 술과 구타로 어머니는 많은 고통을 당하셨으나 이혼하지 않고 20여년동안 살아오신 이유입니다"라고 밝혔다.

황에 대한 질문에 "어머니는 손을 무척 떨었으며 숨도 고르지 못했고 제가 앞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한 채 눈이 허공에 떠 있어 미친 줄로만 알았다"고 증언했다.

<이달의 주제 -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은, 사회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약하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장애물의 제거를 통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성희롱 근절대책마련 활발

서울대 학내성희롱 실태조사, 학칙규정움직임등 성희롱걱정 모임 결성예정

전 서울대 화학과 조교 우아무개씨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성희롱 공동대책위)와 '서울대 총학생회'(총학생회장 강병원)는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우조교 승리주간'으로 선포하고 우조교의 재판승리를 성원하고 학내에서의 성폭력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예비작업을 한다.

성희롱 공동위와 서울대 총학생회는 9월 30일에 '우조교 승소를 위한 장터'(오전11시-오후7시, 서울대 도서관 옆), '성희롱에 관한 토론회'(오후3시, 서울대 학생회관 옆 열린마당)을, 재판부의 화학과 기기실 현장검증일인 10월 1일 오전 10시30분부터 화학과 건물 앞에서 '우조교

승소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는다.

또 '화학과 조교 성희롱 사건 서울대 대책위원회'(성희롱 서울대 대책위)는 5일 오후 3시 학생회관 옆 열린마당에서 '학내 성희롱에 관한 공청회'를 통해 서울대 내의 성폭력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학내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성희롱의 근절대책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공청회 차례는 아래참조).

한편 성희롱문화를 우아무개씨의 판결을 통해 사회문제화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추방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는 여성단체 대표, 교수, 전문인등 80여명은 10월5일 오전8시-10시에 YMCA빌딩 7층 자원방에서 (가칭) '성희롱문화를 걱정하는 모

임'을 결성할 예정이다.

엠네스티, 10월9일-25일 한국방문, 인권상황 조사활동

국제사면위원회(AI)는 오는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우리나라를 방문해 인권상황 조사활동을 벌인다. 이번 조사활동에서는 AI에서 석방운동을 벌이고 있는 양심수와 최근 연행자에 대한 정보조사, △사형제도에 관한 조사, △행형제도를 포함해 재심절차, 사법권의 독립, 배상등 연구활동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인권단체는 물론 사형제도폐지위원회, 법무부인권과, 안기부, 국회의원 그리고 수인가족들을 만나 한국인권상황 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국내인권단체 대표들과 AI가 그간 벌여온 한국 문제제언과 남북한 조사 활동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언론의 왜곡보도에 우려와 함께 전체 기자회견은 잡혀져 있지 않다. 이번엔 방문하는 조사관은

클리어 맥베이, 베에르 로베르트, 유카안자꼬(일본지구부)씨등 3명이다.

엠네스티,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캠페인 시작

엠네스티는 28일부터 내년 2월까지 인도네시아 캠페인에 들어갔다. 엠네스티의 여러 캠페인중 1년에 두 차례 벌이는 주제중의 하나로 전개되는 이번 캠페인은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와 각종 로비활동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권정책을 개선하고 실제 인권을 도모, △국제사회에 인도네시아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려 도에 관한 조사, △행형제도를 포함해 재심절차, 사법권의 독립, 배상등 연구활동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엠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는 인도네시아 정부, 주한 인도 대사관등에 직접 편지쓰기, 탄원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에서의 시위를 벌이는 한편 사진 및 비디오 전시회 등을 열 예정이다. 또 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외무부장관, 국회의무위원장 등 정치인들과 국내 인권, 종교, 언론단체등에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방침이다.

학내 성희롱에 관한 공청회(차례)

1. 학내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화학과 조교 성희롱 사건과 판결에 대하여
 - 학내 성폭력의 발생 빈도, 유형, 피해자의 대응
 - 학내 성폭력의 사후조치에 대하여
2. 학내 성폭력의 개념, 사례, 원인
3.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 구제위원회 구성의 원칙과 활동방향
 -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의 내용과 방향
 - 가해자 징계와 재교육
 - 피해자 보상과 치료보호
 -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학당국과 학생회의 역할
4.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초안

문의 : 서울대 총학생회(880-5222) / 여성민우회(269-5763*5)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

제 일 128-10-131017 예금주-서준식
농 합 011-01-404581 예금주-서준식
국 민 015-21-0723-021 예금주-서준식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 공청회 주제발표문 일부 요약

67년 제정되어 91년 첫번째 개정된 '한미행정협정'은 한미간 대표적 불평등협정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오는 10월5일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위원장 이강희)가 마련한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은 개정방향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써 중요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재학(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간사)씨는 작년 11월부터 한미행정협정개정위원회에서 연구작업을 해왔다면 "이런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보다 평등한 개정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청회 토론자로는 대한변협, 민변을 포함해 정부, 국회, 미대사관, 주한미군 사령부, 시민단체 등에서 참가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배금자변호사가 '형사관찰권 개정의 방향', 장주영변호사가 '민사청구권 개정의 방향', 임재홍연구원이 '시설 및 구역에 관한 개정 방향'을 발표했고, 최승환(수원대 법학과)교수가 '통관, 관세 및 파세 등의 특수가 관한 개정방향'을, 한이봉변호사가 '노무조항에 관한 개정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67년 2월 발효된 '한미주둔군협정'은 미군측에 지나치게 유리했고, 그 뒤 91년 개정된 문서는 본협정과 가장 문제점이 많은 합의의사록을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겨두었다. 주제발표에 들어가기 전 이강희교수는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의 개정방향에서 "그동안 한국국민은 재산권과 인권을 미군범죄자로부터 침해당한 면이 있었다. 이제 한미관계는 평등한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문민정부는 현행 행정협정상 불평등한 조항을 과감히 개정토록 미군측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형사관찰권 개정의 방향(배금자), 미군시설과 사용문제의 개정방향(임재홍)을 요약해서 게재한다.

<요약>

형사관찰권 개정의 방향(배금자, 민변)
한미행정협정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크게 침해된 가장 후진국형 협

정'이다. 그러나 개정된 현행 형사재판권 역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행 형사재판권의 내용 및 문제점

1. 전속적 재판권의 포기:한국이 갖는 전속적 재판권은 미군당국의 요청에 의해 미군당국이 협정대상자에 대해 행정적, 징계적 조치를 하는 것만으로 제계가 유효함을 인정하여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타협점에서는 유예를 찾아볼 수 없으며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다.

2. 제1차적 재판권의 포기:협정의 내용은 합의의사록에 의해 완전 변질되어 한국이 1차적 재판권 포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합의양해사항을 보면 한국의 1차적 재판권 행사를 일단 인정하고 개별적 사안에서 미국당국이 한국에 그 권리를 포기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이것은 개정전 재판권 자동포기조항과 1차적 재판권 행사 대상범죄의 제한한 것에 비한다면 나아진 것이나 실제로 한국의 재판권 행사비용은 높아지지 않았다. 91년, 92년(1-8월)에는 전체발생 1천3백57명, 6백55명의 범죄인중 각각 18명, 6명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행사해 그 비율이 1% 남짓했다. 또한 우리측이 재판권을 포기한 범죄가 미군측에 의해 어떻게 처리되든지 전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합의의사록의 규정은 폐지되어야 하며 우리측이 재판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한국 및 한국민이기 때문에 그 처리 결과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지역적 범위와 공무판단문제: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에서는 협정대상자는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범한 범죄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의 보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정대상자의 국외범죄에 대하여도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치도록 해야 한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도 공무증명서 발급은 미군측에 주더라도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법원의 판단에 맡기도록 근본적인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4. 인적범위:주한미군에 전속적 재판권 있는 경우 한국은 전혀 처벌할 수 없으며 한국측에 1차적 재판권이

있는 경우에도 '포기권'이라는 명목 하에 우리에게 재판권이 거의 주어지지 않으므로 주한미군당국이나 한국이 둘다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미군군속이나 가족은 본국으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나 얼마나 이송이 될지, 제대로 처벌을 받을지가 의문이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적용대상자도 '군법에 따르는 자'로 개정하고 군속과 가족에 대하여 한국의 사법권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형사절차상의 특례:구금 및 인도-우리가 요청할 경우 미군당국은 '인도할 수 있고' 특정사건에 대한 구금인도 요청에 대해 호의적 고려하도록 하여 인도를 안해도 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피의자가 우리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주한미군측이 요청하면 우리의 의사나 사건의 중요성을 불문하고 즉시 인도하도록 강제성을 띠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법권과 주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다.

6. 미군등 피고인의 권리:미국관리의 참가없는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인-미국정부대표의 참가가 없다고 하여 일체의 수사 및 재판절차를 할 수 없게 하는 것,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마저 전면 부인하는 것은 한국의 사법권을 크게 침해하는 불평등 규정이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재판거부권-합의의사록에는 합중국 군대의 위신과 함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검사의 상소권제한-검사의 상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사법권침해의 불평등 조항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시찰권등-규정 또한 지나치게 한국의 사법제도 및 행정제도를 불신하고 한국의 사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 및 침해의 결과를 초래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7. 미국측 사건처리의 관대화:주한미군범죄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결과를 보면 징역형을 받은 것은 90년도에 총 3백33건중 불과 30건, 91년도에 총 7백33건중 8건, 92년 1-8월까지 총 3천3백35건중 불과 6건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가벼운 주의, 견책으로 처분되었다. 무엇보다 미군당국이 적정한 형벌권행사를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8. 경찰권 행사:한미협정도 배타적인 경찰권 행사를 주한미군 당국에

주어서는 안되며 단지 경찰권이 주어지더라도 미군의 구성원이나 군속 가족에게 한정되어야 하며 그들의 행위가 우리 국민에게 침해를 주었을 때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경찰력을 갖도록 개정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은 나토협정이나 미일협정,미호주협정에 비해 불평등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부속문서가 한미협정 본문보다 평등관계를 훨씬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협정개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 당국이 미군범죄에 대한 제1차적 관할권행사를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행사하려는 적극적 실천의지가 더욱 중요하며 사법제도 개선과 구금, 행정시설의 개선이 더 요망된다.

이는 한국측이 협정발효후 현재까지 기소전에 미군범죄자를 구속한 건이 단 한건도 없다는 사실, 서울지검의 행정담당검사가 불과1명이고, 지청의 행정담당검사도 형식적이며 미군피의자에 대한 유치시설도 수원교도소의 8개 감방밖에 없다는 사실, 미군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폭력, 교통사고, 교통위반, 절도, 강간등에 대해 정작 우리 재판권이 거의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절실히 말해주고 있다.

미군시설과 사용문제의 개정방향(임재홍,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 미군기지 시설의 문제:미군기지에서 보유하는 핵등 가공할 첨단무기는 한국국토를 일순간 폐허로 만들 수 있음에도 어떠한 통제권이 한국정부에 주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한반도 민중의 생존권이 외국주둔군에 일임되고 있는 것이다.

1)법적인 문제점: 토지사용료문제-주한미군기지는 전국 1백20군데 산재되어 있으며 이들 기지가 점유하고 있는 땅은 인천시의 1.5배정도인 9천여평에 달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현재 무상으로 사용중인 사유지(2,247만평) 및 국유지(8천3백만평)에 대한 연간 임차료는 24억달러이다. 더욱이 임대료를 받기는 커녕 주둔비용을 방위부담금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고 미군기지 이전의 비용을 한국정부가 부담한다는 합의서까지 써주고 있다.

2)시설과 기지에 대한 한국정부의 관리권한-기지사용의 동의를 한 경우에도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미군 기지사용은 미군주둔의 목적이 뚜렷하지가 않다. 따

라서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나 활동범위를 확정하기 힘들고, 또한 주한미군의 보유무기 여부에 대한 통제권이 한국측에 없고 미국측에 일임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미군의 군사행동이나 핵무기등 보유에 대해서 규율할 수 있는 조항은 방위조약, 행협 기타 부속문서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기타시설에 관한 사항들-주한미군 및 그 군속등 4만명을 위한 AFKN 방송이 4천만명이 보는 우리나라의 어느 텔레비전방송보다도 좋은 VHF 채널을 차지하고 있다.

2. 시설 및 기지관련 행협조항 개정의 방향:

1)기지 및 시설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기지 및 시설은 주한미군 주둔의 목적과 관련된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미군주둔의 목적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목적에 따라 주둔군의 활동범위 및 기지의 규모도 합리적으로 재설정되어야 한다.

2)토지사용료문제-기지임대료: 민법의 임대차계약을 원용하지 않더라도 토지의 임대차계약에는 계약기간, 임대료, 계약의 재협상 조건 등에 관한 규정이 확고히 마련되어야 한다. 기지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미국정부가 현실 지가를 고려해서, 적당한 선에서 양국정부의 대표의 합의 아래 결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정부의 직간접적인 비용지원은 행정협정 제5조 위반이며 지원되어서는 아니된다.

3)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권의 확보: 한국은 주둔국인 미국에 대해서 토지 및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의 권리 내지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4)주한미군과 보유무기에 대한 통제권의 확보: 주한미군이 보유하는 무기는 주둔목적의 정신에 따르는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핵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 및 공격적 무기의 배치는 한국정부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련 정보가 한국정부에 신속히 전달되어야 하고, 미군기지에 대한 한국정부의 검색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상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행정협정 개정이 필수적이고 다음으로는 행협을 둘러싸고 있는 방위조약 및 합의의사록, 양해각서까지 포괄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결국 행협은 특권을 누리는 미국측

의 입장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개정을 할 수 없도록 개정불능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주권자적 인식과 실천을 통해 국가의 결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용산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을 반대해서 성공시킨 평택시민의 사례는 행협개정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방글라데시 노동단체, 근본주의자들 출현중지 캠페인 호소

최근 방글라데시 전역에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의 지속적인 압력과 위협이 자행되고 있다고 방글라데시 의류노동자 연맹(BANGLADESH GARMENTS & EMPLOYEES FEDERATION, 연맹)이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근본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확고하게 하려는데 다음아닌 '신성모독(BLASPHEMY)'이라는 이름으로, 71년 해방전쟁이후 지금까지의 민주투쟁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려하고 있으며, 이를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을 폭도로 매도하는 등 나라전체를 대격전 속으로 휘말리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특히, 여성노동자들이 신성모독의 주요 희생자라고 지적하며, 민주적 성취를 분쇄하려는 근본주의자들의 출현중지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가 이 신성모독에 대항하여 연대의식을 발휘, 방글라데시 정부에 성명서, 항의서신 등의 캠페인을 벌일 것을 호소하였다.

편지보낼 주소: PRIME MINISTER (수상)-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PRIME MINISTER'S SECRETARIATE TEJGAON, DHAKA, BANGLADESH MINISTER // MINISTRY OF LAW & JUSTICE(법무부장관)-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BANGLADESH SECRETARIATE DHAKA, BANGLADESH

정대협 관민합동 위로금 모금 반대 회견에 일본언론 관심 많아

정대협은 군위안부 해결을 위해 지난 14-18일 일본을 방문하여 민간위로금반대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특히, 17일 '관민합동 위로금'모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규탄행진을 가져 많은 일본인의 호응과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인권하루소식

94년 10월

(제256호 - 제275호)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노동자·여성·장애인등 생존환경 개선 필요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8집 발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인권상황은 과거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여러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관련법도 세계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변호사들은 93년도의 인권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대한변협사협회』(회장 이세중)는 『인권보고서』 제8집(1993년)에서 구속수사가 원칙이고 불구속수사는 예외적으로 보일 정도의 인신구속사례, 김영삼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되는 수사상의 고문 및 가혹행위 등 생명·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검찰, 경찰의 인식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공연물에 대한 사진검열, 컴퓨터

통신에까지 적용되는 이적 표현물 조항등 표현의 자유도 여전히 제약당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변협은 특히 김영삼정부가 아무리 제도의 합리화를 추진하는 개혁을 한다고 해도 정부당국마저 법이론적으로 위헌법률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는 한, 제도의 부분적 합리화라는 평가를 넘어서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93년에는 여성의 인권과 아동, 장애인, 노동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가 유엔세계인권대회를 계기로 강조된 해였으나 우리나라에는 정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법의 합리적 개정의 유보, 고용문제의 악화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파견법(안) 제정유지입등을 통

해 '독점대벌의 성장을 보장하고 노동자에게 고등분담을 강요'하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40만여명의 매우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에게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및 건강하게 살 권리, 400만이 넘는 장애인의 근로권과 생존권의 보장등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변협은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권리의 쟁취를 위한 투쟁이 현 정부의 등장을 결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민중부문의 사상의 자유와 정치적 결사를 제한하고 집회와 시위를 차별하고 있다. 이런 민중부문의 차별화는 수구세력의 입장을 강화하여 현재의 배분구조를 유지하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보고서』는 87년 86년 인권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시작한 이래 매년 발간되고 있다. 이번 8집 보고서 간행위원회는 박인제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김응조·문병호·차지훈·최은순변호사 등이 집필하였다.

빈민장애인 삶 사진전 '바다가 보고싶은 사람들'

『장애우권의문제연구소』(이사장 이성재)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명동 '유네스코 화랑'에서 '바다가 보고싶은 사람들'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 사회의 그늘속에 가려져 있는 빈민장애인의 삶을 보여주고 비장애인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마련하였다.

사진작가 이정철씨는 “한 번이라도 바다를 보고 싶어 하는 장애인들의 간절한 염원을 사진속에 담았다”고 한다. 장애인의 삶을 주제로 작업을 해왔던 이씨가 1여년에 걸쳐 촬영한 5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1993년도 『인권보고서 제8집』 차례

- 제1부 1993년도 인권상황 개관
- 제2부 각 부문별 인권상황
 - ▷생명·신체의 자유 : 인신구속/수사상 고문 및 가혹행위/재소자의 인권/생명권/성과와 과제
 - ▷표현의 자유 : 사상·양심의 자유/학문·예술의 자유/언론·출판·통신의 자유/집회·결사의 자유
 - ▷농어민, 도시빈민, 노인과 장애인, 아동 및 여성의 권리 : 농어민과 도시빈민의 생존권과 사회보장/노인, 장애인, 아동의 사회보장/여성의 인권
 - ▷환경과 건강권 : 환경권/건강권
 - ▷노동자의 권리 : 1993년의 주요노동지표/개별적 노사관계와 노동자의 권리/집단지 노사관계와 노동자의 권리/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자의 권리/전국교직원노동조합/여성노동자 및 미성년노동자의 권리

- ▷사법과 인권 : 수사기관과 인권/법조와 인권
- 제3부 특집
 - ▷개혁정국과 인권 : 공직자 재산공개/사정/금융실명제/개혁정국과 인권
 - ▷과거청산의 과제 : 울곡사업/12·12 사태/광주민중화운동/평화의 댐/김대중씨 납치사건
 - ▷개혁입법의 과제 : 법률개폐 및 논의상황과 문제점/개혁입법의 과제
 - ▷세계인권대회 참관기 : 인권회의의 배경과 준비과정/세계인권단체 총회/세계인권회의/한국정부와 인권단체들의 활동
- 부록
 - ▷변호인 접견실 차폐시설 철거활동
 - ▷대한변협이 발표한 각종 성명서 및 공문 모음
 - ▷1993년도 인권일지등

「인권하루소식」 9월분 총목차(239호-255호)

월일	호	면	기 사 제 목
9/1	239	1	남총련사건 공판 본격 시작, 재판부 "학생행위 옳지 않다"고 발언 재판공정성 우려 / 검찰 경 상대교수 영장제청구 방침 비난 빗발, 장상환교수등 발생농성 계속
		2	노동부의 '유령노조' 해산방침 지금도 유효한가, 포항제철 노조해산 요구 노동자 구속 / 자료- 최인석 판사 『한국사회의 인식』 교수 영장 기각 사유전문, 민교협 성명서;검찰의 이성적 판단 을 촉구한다
9/2	240	1	헌법재판소 긴급 진단-'퇴보 우려',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 평화우호 교류계획, 정대협 "일 수상 담화는 전쟁범죄, 국가책임 면피용"
		2	'헌법재판관 인증청문회 반드시 필요', 설문결과 / 고 김남주시인 부인 월간조선 명예훼손 혐 의 고소 / 진폐증 환자, 진폐증 적용범위 확대 요구 / 3일 원진재취업 촉구 결의 대회
9/3	241	1	사회보장기본법안 실효성 의문,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 대한변협, 일본 정부 전후보상 처리방안 반박 / 경찰 조계사진입 전기협 간부 연행, 불교인권위등 강력 항의
		2	단체탐방 30 - 서울·경인지역 육아시설활동단체연합회 산하 시설문제연구회
9/6	242	1	국제법률가협회, '위안부' 해결위해 중재전문위원단 구성·긴급배상등 권고 / 함주명씨등 고문피 해자 고문경찰관 고소·항고 / 원진노동자 민주당사 앞 발생농성중
		2	전국연합 정기국회에서 국보법 철폐 요구 / 백골관 집단구타 철거민연합 평화집회 이수라장 / 불교계 전기협 지도부 연행에 재차 항의 / 자료 - 국제법률가협회의 권고문
9/7	243	1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문민적 정부 '인권과수꾼' 역할 / 한누리 노동청년회원 긴급구속 / 폭력남편 살해혐의 이순심씨 항소심 / 국제사면위 한국·일본지부 인권교육 마련
		2/3	창간 1주년 기념 기획 1 - 신공안정국과 국가보안법(이덕우 변호사)
		3	서울지하철노조 재파업 경고 / 프락치혐의자 사망 관련 4명 기소 / 이창복·황인성 6일 기소
9/8	244	1	국보법 고등학생까지, 경찰 밀실수사 진술내용 지도, 청소년단체 3명 구속 / 인사공청회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대한변협·참여연대·민변, 후보명단 공개 촉구
		2	김·경의 불공정 수사, 소송진행 감시 법대협 창립 / 원중 고소·고발 취하 약속 안 지켜, 전노대 '노조집행부 와해 음모' / 성남지역 노동자회 회원 경찰에 연행 / 이순심씨 항소심 / 자료 - 대한변호사협회 헌법재판소 관련 결의문
		3	창간 1주년 특집 2 - 장애인 / 인터뷰-김성재 함께걸음시대행진 조직위원장 / 장애인 의무 고용비를 하향조정 막기 특별기구 구성
9/9	245	1	공안바람에 깃발한 청소년의 권리, 경찰 청소년단체 '샘', 이적단체 규정 / 지하철 13일부터 시한부 파업 밝혀
		2	창간 1주년 특집 3 - 국가보안법과 양심수 / 인터뷰 - 채은아(민가협 간사) / 김영삼 정권이 후 양심수 현황-민가협 제공 / 6-8월 양심수 1-5월의 약 4배, 현재 645명 민가협 발표
9/10	246	1	'샘' 활동 참가 고등학생 증징계, 영등포여성 지도교사에게 사표 중용 / 검찰 경상대교수 소 환수사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민간활동 연수
		2	창간 1주년 특집 4 - 국제인권, 자결권 / 자료-'민중진보를 위한 아시아센터', 핫라인;프랑스 카나키의 자결권 침해 / 김주석 애도 표명 대학생 구속
9/13	247	1	엠네스티 한국지부 「한국-일본 인권교육과 지구시민학습」 개최 / 전국교도소 공안정국 편승 양심수 면회 가족의 금지 / 성폭력 피해 여성위한 '열린터' 문열어
		2	창간 1주년 특집 5 - 외국인노동자 / 인터뷰-김재오(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 찾아주기 사무국 장) / 노동계 연석회의 구성, 포철유령노조 해산 나서 / 「참여연대」, 「대한변협」 안우만·정경식 현재재판관 임명 철폐 요구 / 범민족대회 관련 전국연합 최규업씨 조사받고 풀려나
9/14	248	1	강기훈씨 어머니 수기집 출간, 한겨레신문사 「너를 위한 촛불이 되어」 / 경상대 교수 3백11명 사법처리 반대 / 제1차 인간사회개발 한국포럼 개최
		2	헌법정신·개혁의지 상실한 현재 재판관 임명 / 자료 - 민변;새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논평, 참여연대;반민주적인 임명안에 반대를 분명히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법치주의와 개혁을 거스 르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용납할 수 없다

「인권하루소식」 9월분 총목차(239호-255호)

월일	호	면	기 사 제 목
9/15	249	1	학문목적 이적서적 소지 국보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 형사지법 22부 재야단체에 편견 사로잡힌 듯, 「구국전위」 재판 공정성 우려
		2	성폭력 피해여성의 심터 '열린터' 개설, 성폭력상담소 의료·심리치료등 제공 / 원진비대위 대통 령에 원진문제 해결 촉구 서한 / 남재희 노동부장관 "포철 '유령노조' 해산절차 밟겠다" / 광 고시간확대 여성상품화 가속, 여성민우회 성명 / 충북대교수협 유초하교수 수배해제 촉구
9/16	250	1	사회개발정상회의 민간단체 논의 본격화, '제1회 인간사회개발 한국 포럼' 열려
		2	정경식 '공안검사' 헌법재판관 부적절, 정부 개혁의지 의심 / '진보운동탄압반대 교수모임' 유초 하교수 수배해제 촉구 / 정대협, 군위안부 해결위해 일본 방문
9/17	251	1	제일정치법 류정식씨 면회 외국인 이유로 거부, 일본 「류정식씨 지원회」 / 상남비리 고발 전 경자 파면처분취소 소청, 참여연대 동참 / 원진문제 노동부 왜곡 / 서울변회 제2회 시민인권상 양길승 / 한가위맞아 찾아간 전혜투 농성장 '가을투쟁' 재경 마련 한창
		2	단체탐방 31 -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한국지부
9/27	252	1	유가협총회 신임회창 선출, 시민인권상 수상식, 출소장기수 만남의 집 개소, 7기 장애우대학 개설, 여성의 전화 강서지부 개소
		2	가난 고용 실업등 주제 검토, 인간사회개발한국포럼 운영위
9/28	253	1	서울구치소 추석특식 구매물에 썩은 통닭 나와 50여명 식중독 증세 / 민변 행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외부인 접견 서신 확대 반인간적 징벌 철폐 / 재판부 두밀리분교 폐교에 따 른 학생, 주민피해 의견서 요청
		2	노민문연 회원등 8명 연행, 이적단체 규정 / 정보접근권은 기본권, 시민의 참여확보 중요, 참 여연대 토론회 / "신문에 난 기사도 국가기밀 될 수 있다" 황석영씨 7년 선고
9/29	254	1	'구국전위사건' 안재구씨 첫 공판 열려, 안씨 "북과 관계 없다" / '지방자치시대와 장애인 복지' 토론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 월 1회 실시 / 한국장애인단체 일본내 시설방문 및 세미나 참석
		2	고등학생 100여명 징계 및 조사, 경찰 왜곡수사, 청소년단체 '샘' 기자회견 / "헌법재판소 제 역할 못해 안타깝다",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참여연대」 초청간담회 / "어머니와 살고 싶다", 이순심씨 자녀 증인신문 / 자료-민주당 「민주개혁정치모임」 국보법 위헌 성명서
9/30	255	1	성희룡 근절대책 마련 활발, 서울대 학내성희롱 실태조사 / 엠네스티 10/9-25일 한국방문 / 엠 네스티 인도네시아-동티모르 캠페인 시작
		2/3	자료-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공청회 주제발표문 요약)
		3	방글라데시 노동단체, 근본주의자들 출현중지 캠페인 / 정대협, 관민합동 위로금 모금 반대회 견 일본언론 관심 많아

◆ 행사 안내 ◆

- 원진레이온 노동자 재취업약속이행촉구 대국민선전전
 - 일시 : 1994년 10월 1일(토) 오후 2시
 - 장소 : 명동성당앞
 - 주최 : 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원회
 - 후원 : 원진레이온 살인기계 중국이전반대대책위원회
- 오늘의 의회 · 의회개혁 · 의정감시
 - 제1회 참여연대 의정토론회
 - 일시 : 10월 4일(화) 오후 3시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
 - 일시 : 10월 5일(수) 오후 2시
 -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강당
 - 주최 :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 두밀리분교 가을운동회
 - 일시 : 10월 2일(일) 오전 10~오후 4시
 - 장소 : 두밀리분교 운동장
 - 후원 : 두밀리 대동회, 두밀국민학교 동문회, 두밀학 교 살리기연대모임
 - 연락처 : 두밀분교폐교철폐추진위(☎0356-82-1750)
- 강기훈씨 어머니 권태평씨 출판기념회
 - 「너를 위한 촛불이 되어」
 - 일시:1994년 10월 6일(목) 저녁 6시 30분
 - 장소:기독교연합회관(종로5가 기독교회관 신관) 4층
 - 회비:10,000원 (책값 포함)
 - 주최 :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 대책위원회
- 학내 성희롱에 관한 공청회
 - 일시 : 10월 5일(수) 오후 3시
 - 장소 :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옆 열린마당
 - 주최 : 화학과 조교 성희롱사건 서울대대책위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문전박대 당하는 원진노동자 재취업알선장도 소용없어

원진레이온에 근무했던 노동자들이 민간기업체 취직과정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 해 7월 원진레이온 폐업이후 재취업을 원하는 6백여명의 노동자가 변변한 점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자리도 구하지 못한채 생활의 최저선에 시달리고 있다. 찬란한 국내 유일의 인조견사를 만들던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오늘도 재취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월 1일 전북 이리시의 쌍방울방직(주)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던 손영화씨는 “타 직장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으면 인정하겠다”라는 말을 믿고 원진레이온에서 근무한 이력서를 제출하자 해고됐다. 남편과 함께 원진레이온에서 근무했던 30대 주부 김순자씨는 지난 7월 20일 경기도 구리시의 한 식당

에서 아주머니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가 2일간 근무하다가 원진레이온 출신노동자라는 사실을 안 주인이 “집으로 가라”고 했다. 조한철씨는 지난 3월 20일 경기도 안산시의 미원모방(주)의 면접시험에 불었으나 기다리고 있으면 연락을 해주겠다는 말을 끝으로 아무런 소식이 없다.

이승균씨는 93년 12월 3일 경기도 미곡시 한국제대(주)에, 임옥자, 김선순씨는 같은 해 12월 11일 경기도 미곡시의 동양복장(주)에 노동부의 재취업알선장을 가지고 찾아갔으나 회사에서는 “언제든지 시키면 퇴사를 한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하고 있다. 5명의 원진노동자들이 93년 11월 2일 구리시의 일화계약(주)에 취업을 했으나, 올 1월 “건강검진이 나 받으십시오”라는 말과 함께 모두 해고됐다. 박광

철씨는 선반기능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93년 10월 10일 효성중공업(주)에서 실

시하는 입사시험에 합격해서 이력서등 구비서류를 인사부에 제출했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다. 박씨는 울산금속(주)에서 중업원을 모집한다는 구인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 하루동안 근무를 했으나 원진레이온에서 근무한 사실이 알려져 해고됐다.

원진폐업후 취업자는 겨우 29명

정부, 말로만 “정부투자기업에 취업알선 노력”

원진노동자의 재취업문제가 절실한 생계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흥주, 원진비대위)는 <원진신문> 제 8호(10월 8일자)를 통해 “원진노동자중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노동자는 6백여명이며, 이들중 97명은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취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93년 7월 폐업으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재취업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93년 11월 24일 이인제 전 노동부장관, 우명규 서울시 부시장, 강삼재 민자당 의원 등이 참석한 원진레이온 폐업관련 대책회의를 열어 취업을 원하는 원진노동자들에게 서울지하철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95년 완공예정인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같은 해 6월 민자당의 강삼재 기초실장은 “원진노동자들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인 폐쇄결정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진노동자들

제2기 지하철공사에 재취업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진노동자중 기능사격을 갖춘 17명과 4백58명이 제2기 지하철공사에 재취업을 원하고 있으나 목록 부달일 뿐이다.

더구나 주무부서인 노동부에서는 기본적인 재취업희망자들의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무성의를 노출시키고 있다. 지난 9월 14일 국회 노동환경위원회에서 남재희 노동보장관이 “93년 7월 원진레이온에 대한 폐업결정 당시 노동자는 모두 8백11명이었으며, 이

들중 직업병환자로 판정되어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은 3백54명”이고, “그동안 당정협의를 통하여 서울시와 경기도 산하 사업소에 25명, 도시철도공사에 17명, 사기업체 18명 등 60명이 취업 또는 취업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진비대위는 “93년 7월 폐업이전에 직업병환자로 판정받은 사람은 2백65명, 폐업이후 직업병관정을 받은 97명(퇴직자 44명, 폐업결정당시

(= 2면에서 계속)

‘유서사건’ 강기훈씨 출옥 환영회 및 어머니 권태평씨 출판기념회 「너를 위한 촛불이 되어」

때 : 10월 6일(목) 저녁 6시30분
곳 : 기독교연합회관(종로5가) 4층 중강당
회비 : 1만원(책값 포함)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문의 전화 : 796-8364 서준식)

산재사망자 작년보다 증가

경제논리 기초한 규제완화의 결과

92년을 고비로 줄어들기미를 보이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6명보다 14.2% 늘어난 1천1백48명으로 집계돼 2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 노동부가 지난해와 올해 2년간 전 기업체에 대한 산업안전정기감독을 유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가 산업안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는 사이에 재해자수를 근로자수로 나눈 백분율인 재해율도 올 상반기중 0.6%를 기록, 올해 재해율 목표 1.0%를 지키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98년까지 재해율을 0.75%로 줄이려는 목표수정도 불가능해 보인다.

산업안전감독 유예조치는 93년 5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국회통과에 앞서 경제부처들의 요청으로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정기감독대상은 주로 전년도에 작업성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가 대상으로 2년간 중대재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한 예방차원의 정기감독활동이다.

노동부가 지난해부터 완화하거나 완화를 추진중인

규제사항은 △안전보건관리자등의 총원유예기간 연장(20일에서 60일로) 및 선입기준 완화, △유해화학기기 등에 대한 방호장치의무 완화, △3백인미만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타업무보조 허용, △작업환경 측정주기 완화, △유해물질 허용농도의 완화등 1백7건에 이르며 자율적 안전보건 관리 활성화, 유해물질 표시제도의 기능보완등을 포함,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등을 목표로하는 정부의 산재예방 계획과는 모순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원진노동자 재취업촉구 대회 8일 3시 증모공원

「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흥주), 전국노협, 민변, 노동과 건강연대회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 등 21개 단체가 참여하는 「원진레이온 살인기계 중국이전 반대 대책위원회」(중국이전 반대대책위)는 오는 8일 오후 3시 증모공원에서 ‘제3차 원진레이온 노동자 재취업 약속이행 촉구 집회’를 갖는다.

중국이전 반대대책위는 이날 집회에서 원진레이온

노동자의 재취업 약속이행 등의 현안을 국회 국정감

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공익변호활동을 통해서 무

서울변호사회 『미국변호사 윤리강령』 발간 외국사례 타산지석 삼을 필요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리인이므로 법률제도의 사관이며 정의에 대해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공공의 시민이다” 이 말은 1992년 8월에 개정된 변호사 행위에 대한 「미국변호사협회」의 모범 규칙중 서문에 해당하는 변호사 책임에 관한 정의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창국)는 변호사의 직업적 윤리규정을 담은 「미국변호사 윤리강령」이란 책을 번역 출간 하였다. 이 책은 미국 변호사들의 습관적 증가에 따라 윤리적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에서 변호사의 윤리적 지향과 행동의 준칙을 담고 있다. 미국 변호사들을 규제하는 규칙들은 제정, 행정규제, 증거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독립된 윤리강령 등 다양한 법원(法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책은 가장 중요한 윤리적 법적으로 미국변호사협회가 제정된 「변호사 행위에 관한 모범규칙」(92년 8월 개정)과 「직업상 책임에 관한 모범법전」(93년 8월 개정)을 번역하였다.

「변호사 행위에 관한 모범규칙」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적절하게 대리하기 위해서는 법률지식과 숙련, 치밀함, 정보의 비밀보장이 필요하고 고문변호사로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행사해야하며 사 기간에 해결할 것을 강

요공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등을 기술하고 있다. 「직업상 책임에 관한 모범법전」은 강령, 윤리항목, 징계규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호사의 활동에 관련한 윤리적 규제가 없었던 우리나라의 경우 이 책은 외국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이 책의 발간에 주도적 역할을 한 박원순 변호사는 「미국의 변호사 윤리강령 해제」에서 “정치적 관련성만 없다면 활동상의 비리와 부정으로 인하여 자격을 잃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변호사 윤리강령과 윤리규칙을 만들어 두고 있으나 거의 적용된 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고 평가하며 “변호사에 대한 윤리적 규제를 강화하고 징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내부적 진동과 이품을 수반하지만 동시에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그 역할이 사회에 더욱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주교인권위 '94연례모임

「천주교인권위」는 지난 1일-3일에 '94 천주교 인권위 연례모임을 인권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열고 ‘종교단체의 인권운동의 방향’(오계식), 「한국사회의 종교개혁」(효림승려), 「평신도 활동과 우리의 과제」(이영섭)등의 강의를 들었다.

(= 1면에서 계속) ==> 근무자 53명)만이 60-90만원의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며 “노동부는 명백한 사실을 왜곡해가면서 재취업 희망자를 축소조작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9월 16일 현재 재취업이 되거나 확정된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은 서울시 환경미화원과 녹지관리원에 3명, 8명, 제2기 지하철공사 8명, 사기업체 7명, 경기도 산하 도로공사 3명등 모두 29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공 판 안 내 ◆

- 10월 5일(수)
 - 최영준(구국전위), 국보법, 10시, 311호, 1회, 합의21부
 - 정화려(구국전위), 국보법, 2시, 311호, 1회, 합의21부
 - 김영광, 국보법, 10시, 321호, 6단독(판사 하광호)
 - 박정미, 국보법, 3시, 321호, 속행, 6단독(판사 하광호)
- 10월 6일(목)
 - 정재관, 국보법, 10시, 424호, 선고, 10단독
 - 배계섭, 특수공무집행방해처상등, 11:30, 319호, 3회, 합의23부
 - 안호성, 국보법, 3시, 421호, 선고, 7단독
- 10월 7일(금)
 - 서준식, 보안관찰범등, 11시, 418호, 속행, 합의1부
 - 김영애, 국보법, 2시, 403호, 항소심, 항소4부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성폭력근절 위한 구체적 대안 찾기

서울대 학내성폭력에 관한 공청회 “학칙에 성폭력규정을”

전 서울대 화학과 조교 우 아무개씨에 대한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성희롱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대조교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서울대 여성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학내 성폭력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 인 토론을 진행하였다. ‘서울대 학내 성폭력실태 조사결과보고’(김수진, 어우르기 회원)에서 학내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묻는 답변에 응답자의 57%가 심각하다고 답변했으며 성폭력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여학생을 동등한 학우로 보지보다는 환락소 정도로 여기는 남성중심의 이성관과 성의 상품화, 향락, 퇴폐문화가 만연한 잘못된 성문화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성폭력을 가한 교수, 직원에게 징계와 관련하여 파면 혹은 해임을 지지하는데 동의한 응답자는 73%였고 학생에게는 학사징계가 필요하다고 78%가 대답했다. ‘학내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제안’(최은아, 자연대부학생회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활동 등 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최씨는 “이성을 동등하고 완전한 인격체로 보고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일깨우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체계적 조치를 널리 알리는 것”과 “학내 성폭력 구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성폭력 상담, △성폭력 발생시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 △가해자 징계회부 및 재교육,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등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였다. 이미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에 따르는 법적, 제도적

“미군범죄에 국민적 차원의 인식전환 필요”

5일, 한미행정협정 개정 공청회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위원장 이장희) 주최로 5일 오후 기독교회관에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주제발표는 형사관할권, 민사청구권, 미군시설과 기지의 사용문제, 통관, 관세 및 과세등의 특혜 등의 개정방향에 관한 5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어는 찬에는 김형태변호사, 박연철변호사, 성재호(성대법학과)교수, 최해근(주한미군노조 의정부지부)위원장, 김용한(평택민주실천시민모임)의장, 김정남(주한미군근절운동본부 부실행위위원장)목사등이 참석했다. 한편 민자, 민주당 양당과 의무부, 법무부 등에서는 불참했다.

박연철변호사는 민사청구권 개정에 있어 공무집행과 무관하게 발생한 문제도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를 상대로 청구하는 배상문제를 거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정남목사는 미군범죄근절을 위해 △미군범죄 전담수사관·검찰·경찰육성, △미군범죄자의 수감시설 및

장비가 미비한 현실에서 이번 공청회는 학내에서 성폭력의 범위, 구제, 제재 조치를 담은 가칭 ‘학내성폭력 근절을 위한 규정’을 학칙으로 만들자는 견해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2면에 ‘규정’ 요약).

행정시설 확충, △담당경찰관은 피의자의 권한을 반드시 알릴 것, △미국인의 인식개선을 들었다. 김용한의장은 “한국 측에도 통역관을 둘 것과 재판 중인 미군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군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법개선에 앞서 국민차원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임재홍(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원은 “한미행정협정에서 살펴본듯이 법개정을 위한 국가차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국민운동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근자변호사는 “국민들이 미군범죄하면 기지촌만의 문제로 생각할 만치 너무 모르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의 언론통제가 있었고 언론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벌어진 토론회에서는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방안, 비무장지대에서 벌어지는 미군범죄대치 방법등에서부터 실생활에서 겪는 미군피해에 대한 해결방안등이 제기되었다.

‘유서사건’ 강기훈씨 출옥 환영회 및 어머니 권태평씨 출판기념회 『너를 위한 촛불이 되어』

때 : 10월 6일(목) 저녁 6시30분
곳 : 기독교연합회관(종로5가) 4층 중강당
회비 : 1만원(책값 포함)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선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문의 전화 : 796-8364 서준식)

한국교회, 장애인에 대한 관심 계기되기를 KNCC장애인위, 일본장애인시설등 방문

지난 9월26일부터 10월2일까지 일본 오사카, 교토, 동경 등을 방문한 KNCC 장애인위원회(위원장 대행 김기택목사)는 이번 방문을 통해 일본 장애인시설을 살펴보고 일본 교회의 장애인정책에 관한 상황과 정보를 교류했다고 밝혔다. 일본NCC 장애인교회 위원회를 방문한 것은 처음인데, 이번 방문에는 김기택목사를 비롯해 이철용(장애인위원회부위원장), 김경식(한국장애인선교단체협의회)씨 등 15명이 참석했다. 황필규목사는 “일본의 장애인들은 국가연금지급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지역내 장애인공동작업소등을 통해 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며 점자블록·장애인용 버스·턱없는 도로시설등

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일본상황을 설명했다. 이번 방문취지는 한국교회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와 관심을 갖기 위해 각 교회내 장애인위원이 먼저 장애인문제에 관심과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황목사는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방문은 오는 11월26일 가질 ‘사랑의 장애인체험대회’를 위한 사전작업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1천명 규모로 열릴 예정인 장애인체험대회에는 강연회와 공연등이 있게 된다.

“외국인 노동자에 동등한 대우를”

9월 22-10월 2일 아태지역 노동자 연대회의

최근 아시아 태평양지역 이민(외국인)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시아 태평양지역 노동자연대회의’(ASIA PACIFIC WORKS SOLIDARITY LINK, APWSL)가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일본에서 개최되었다. 각국에서 발생하는 이민노동자들의 실태와 정부정책등이 보고되고 이후 이번 방향으로 이민노동자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인가가 주된 논의였다. 회의에 참석한 윤우현(전 노협 고용대책부장)씨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노동

자의 이동현상은 각국의 노동시장의 수요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각국 정부는 공통적으로 이민 노동자를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으로 차별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민 노동자의 합법화와 이를 위해서 관계법령의 철폐운동과 노사정 합의에 의한 동등한 대우 실현, 이민노동자들의 노조결성 및 가입의 자유”가 논의되었다.

대만, 말레이시아, 일본, 타이, 한국, 홍콩등 6개국 13명 노동운동가들이 참석했고 한국에서는 윤우현씨와 김재오(외국인 노동자 피난처 사무국장)씨가 참가했다.

성폭력방지를 위한 규정(안)-요약 -서울대조교 성희롱 사건 공대위

1. (목적) 이 규정은 전 대학사회구성원이 자유롭고 인격적인 교육과 근로분위에서 직업 및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폭력’을 방지하고 규제하기 위한 절차 및 담당인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성폭력이라 함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근과 요구 및 기타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물리적 행위(가) 1)수용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개인의 학업의 조건이 되는 경우, 2)거부가 피해자의 학업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피해자의 학업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르킨다.
3. (학내성폭력 구제위원회) 학내성폭력의 효과적인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대학총장, 학부 및 대학원생 대표, 교직원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학내성폭력 구제위원회’를 구성한다. 4(생략).
5. (피해자의 신고와 신고기구) 2-1), 2), 3)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역할) 신고를 받은 위원회는 학칙상 가능한 조치에 관해 신고인과 상담하고 신고인의 요청에 의해 문제의 해결을 돕는다. 7, 8, 9, 10(생략)
11. (조사방식) 1)조사의 목적은 신고된 사실의 지위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근거의 존부를 알기위한 것으로 이 목적의 범위내에서 신고인과 피신고인 및 사실확정에 필요한 사람을 조사한다. 2)조사내용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공개할 수 있고 조사담당자는 비밀준수 의무를 진다.
12. (보상 및 치료) 위원회는 1)피해자의 보상 및 치료를 위한 조치를 결정 혹은 건의하고 이를 감독할 수 있다. 2)산하에 피해자보상과 치료를 위한 기금을 설치한다.
13. (징계 및 재교육) 위원회는 1)가해자를 징계위에 회부할 수 있다. 2)가해자에게 재교육을 명할 수 있다. 3)재교육을 실시할 기구를 설치하거나 타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14. (생략)

제4차 유엔 세계여성대회와 한국여성의 발전전략 세미나

때 : 10월 7일(금) 오후 1시
곳 :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

- 제1부 (13:20)
I. 제4차 유엔 세계 여성대회의 의의와 민간단체의 역할-김현자(한국 YWCA연합회) / II. 한국여성의 지위와 발전전략-박보희(한국사회정보연구원)
- 제2부 실천계획의 분야별 토의(14:30~16:00)
1)여성과 발전
①환경공해 : 박영숙(한국 환경사회정책연구소) / ②직업개발 : 김준희(한국 YWCA연합회) / ③여성노동 :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 ④농촌여성 : 고은실(전국여성노동회) / ⑤여성건강 : 변영순(대한간호협회)
2)여성과 정치세력화
①정치참여 : 손봉숙(한국여성정치연구소) / ②정치발전전략 : 김정숙(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3)여성과 인권·문화
①성폭력 : 신혜수(한국여성의 전화) / ②정신대문제 : 권희순(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③종교와 성차별 : 한지현(원불교여성회)
- 제3부 전체토론
비정부단체(NGO) 한국위원회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가난한 아이들의 꿈, 희망 '민들레의 합창'

서울공부방연합 8일 오후6시 연세대 노천극장

도시빈민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도시빈민문화제 '민들레의 합창'이 8일(토) 오후6시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열린다. 민들레의 합창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과 그 아이들의 소중한 꿈, 가슴저린 이야기들을 서늘지만 꾸밈없는 아이들의 몸짓과 노래로 풀어헤쳐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을 만들고자 준비했다. 또한 퇴폐 향락 외래 문화의 홍수를 극복하고 건강한 문화를 보급하며 가난한 사람들과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사회적으로 확대하고자 기획하였다.

이번 공연은 진빈협 소속인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회장 김영희, 서울공부방연합)가 주관하며 진빈협을 비롯한 도시빈민 단체로 구성된 '민들레의 합창 공연위원회'가 주최한다. 정태춘, 박은숙, 노래마을이 출연하고 어린이 합창단(희망의 집), 어린이 중창단(밤꽃 아이네), 어린이 사물놀이(인천 기차길), 탈춤(삼양동 나눔의 집), 어머니 노래패(상계동 어머니학교), 교사 합창단(푸

른하늘) 등 소속 공부방 어린이 지역주민, 교사등이 참여한다. 총기획은 도시빈민 운동에 잔뼈가 굵은 허병섭 목사(생활경제연구소 소장)가 총연출은 박인배(민예총 사무차장)씨가 담당한다.

한편 어린이에게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전행사로 '무기장난감 및 폭력비디오 바꿔주기' '글 그림잔치' 등을 진행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폭력문화와 물질문제는 불법, 음란, 폭력 비디오 및 만화에 기인한다는 공감에서 건강한 놀이환경을 조성한다는 의의를 담고 있다. 7일 무기장난감과 불법비디오, 폭력만화는 교환권으로 바꿔주고 수거된 물품으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제작하여 8일 공연장에 전시하고 전쟁기념관, 타임캡슐 등에 기증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YMCA, 흥사단, 전교조초등지회와 연대하여 범 국민캠페인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공부방연합은 수도권 30여개 빈민지역에서 활동

하고 있는 공부방들이 모여 89년에 결성하였다.

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의 그늘속에 가려진 도시빈민들의 소외된 주거권, 교육권, 문화권을 획득하고 지역의 어린이들이 건강한 사회의식을 가진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하는 공간으로 '공부방'이 정착되었다.

안기부 대학교수 영장없이 연행, 긴급구속 독일유학생, 독일유학한 교수등도 연행 '북한장학금' 받은 혐의만 간접적으로 밝혀

국가안전기획부가 영장도 없이 정현백(40,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를 지난 5일 연행하여 6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긴급구속했다. 안기부는 5일 밤 10시경 이태훈(31, 자유베를린대학 사회학과 석사과정)씨를 안암동 자택에서 연행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이씨의 수첩과 여권, 환전영수증, 비행기표, 메모지 등을 압수했다. 같은 날 12시경 김홍진(송실대 독문과) 교수도 상도동 자택에서 안기부 직원에게 연행되었다.

안기부는 6일 한 관계자 발언을 통해 "최근 서강대 박홍총장이 국내 교수들중 일부가 외국유학시절 북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공부를 해 왔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유학과' 교수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왔다"고만 밝히고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명시적인 혐의사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안기부는 6일 성균관대학교 장을병 총장의 확인에 "조사할 것이 있고, 영장

없이 연행했으므로 48시간만 조사를 하겠다"고 답변하며 더 이상의 언급을 회피, 영장없이 연행해 사후에 긴급구속한 것임을 사실상 시인했다. 정교수는 지난 78년 독일 보름대로 유학을 떠나 독일노동운동사를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고 86년부터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해 왔다. 정교수는 평소 역사관련단체와 여성권익을 위한 여성단체에 관여해 왔으며 재야운동 및 진보적인 인사들과 많은 친분을 갖고 있다고. 또 이태훈씨는 6년전 독일유학, 오는 9일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부인 하이케씨와 함께 한달여전에 귀국했다.

정교수등 3명은 모두 서독유학을 했거나 서독유학중인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한편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고철환)은 정교수등 3명 이외에도 연행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7일 집행위원회를 열어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
제 일 128-10-131017 예금주-서준식
농 합 011-01-404581 예금주-서준식
국 민 015-21-0723-021 예금주-서준식

다음주중 김형영씨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고발

5일 강기훈씨 출옥환영회 및 출판기념회

'유서사건' 강기훈씨 출옥환영회 및 강씨 어머니 권태평씨의 '너를 위한 촛불이 되어' 출판기념회가 5일 오후7시 민가협 회원, 백기완, 박용길, 김근태씨등 1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출옥환영회 및 출판기념회에서는 김형영(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씨에 대한 고발장이 발표되어 진실규명을 위한 첫걸음을 알리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강씨의 변론을 담당해온 이석태변호사는 "재심에 앞서 강기훈씨사건의 유일한 단서가 되는 감정서 제출 및 법정진술을 한 김씨의 증언이 위증임을 밝혀야 한다. 재심을 위해 다음주 중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다. 여기서도 밝혀지지 않

는다면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까지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국내법의 억울함을 호소가 가능한데 이번 사건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이 문제를 제출해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재심을 받을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행사는 함세웅(강기훈공대위 위원장)신부의 인사말에 이어 권태평씨의 강연, 강기훈씨의 강연순으로 계속되었다. 강씨는 "출소된 3년동안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91년 사건발생 당시 나는 명동성당에서 고립되어 있었고 무척 외로웠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오히려 세상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진실을 믿어주고 이

끌어준 사람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 '역사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소박한 사실을 3년 2개월의 감옥생활을 통해 조금은 알게 된 것 같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일에 노력할 것이며 때로는 지치고 좌절할 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심을 말했다.

또한 김종배(「참여연대」 공동대표, 전한겨레신문사장)씨는 '너를 위한 촛불이 되어'를 읽고 "우리의 어머니는 '진실은 하나다'고 외치고 있다. 너를 위한 촛불이 되겠다는 그의 말은 이 땅의 거짓과 폭력, 억압에 시달리는 수많은 '너' 위한 촛불이 되어 살아갈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강씨의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때가 경사다운 경사를 맞이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사형폐지법, "흉악범죄 근절은 극형 아닌 철저한 범죄예방으로"

사형수 15명 사형집행

법무부는 6일 강도살인 등으로 사형이 확정된 조현철(35)등 사형수 15명에 대해 이날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형집행은 지난 92년 12월 이후 2년만에, 김영삼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날 사형집행은 최근 '지존파' 사건, 택시기사 은보현의 부녀자 상대 강도살인사건 등의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정부의 단호한 범죄행 의지를 통해 모든 범법자들의 법의 엄정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사회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형집행은 교수형으로 치러졌으며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서 10명, 부산구치소에서 2명, 대구교도소에서 3명이 각각 집행됐다.

한편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회장 이상혁)는 6일 성명을 통해 "사형집행을 그동안 자제해온 문민정부가 1년10개월만에 '법에 의한 살인'을 한데 대해 좌잡한 심경을 억누를 수 없다"며 "흉악범죄의 근절은 극형이 아닌 철저한 범죄예방책을 통해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가협 55차 목요일회

민가협 제55차 목요일회가 6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열렸다.

태계준(전대협 6기회장)씨의 어머니가 나와 신공안정국에서 국가보안법의 무분별한 적용등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얘기했다. 다음주 목요일회는 서울대 대동제기간의 기금마련장터로 대신한다. 20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갖게될 목요일회부터는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그로인한 인권침해등을 주제로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현중노조간부에 대한 구인장 발부는 민주노총 건설 방해의도"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동대표 양규현등)는 6일 현대중공업 노조간부 26명에 대한 전격적인 구인장 발부가 민주노총 건설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에 타격을 가해 민주노총 건설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전노대는 성명에서 "노사간의 자율적인 타결로 파업이 마무리된지 1달넘게 지나고, 노사관계가 정상으로 되찾고 있는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구인장을 발부받아 연행 및 구속을 강행한데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차원이 아닌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제4차 유엔 세계여성대회와 한국여성의 발전전략 세미나

때 : 10월 7일(금) 오후 1시
곳 :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

제1부 (13:20)

I. 제4차 유엔 세계 여성대회의 의의와 민간단체의 역할-김현자(한국 YWCA연합회) / II. 한국여성의 지위와 발전전략-박보희(한국사회정보연구원)

제2부 실천계획의 분야별 토의(14:30~16:00)

- 1) 여성과 발전
 - ①환경공해 : 박영숙(한국 환경사회정책연구소)/②직업개발 : 김준희(한국 YWCA연합회)/③여성노동 : 정경자(한국여성민우회)/④농촌여성 : 고은실(전국여성농민회)/⑤여성건강 : 변영순(대한간호협회)
- 2) 여성과 정치세력화
 - ①정치참여 : 손봉숙(한국여성정치연구소)/②정치발전전략 : 김정숙(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 3) 여성과 인권·문화
 - ①성폭력 : 신혜수(한국여성의 전화)/②정신대문제 : 권희순(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③종교와 성차별 : 한지현(원불교여성회)

제3부 전체토론

비정부단체(NGO) 한국위원회

고 발 장 (요약 1) 허위감정서 작성

고발인-‘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 공대위원장 함세웅 / 피고발인-김형영

편집주: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 석방을 위한 공대위는 6일 김형영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혐의로 다음주에 고발할 뜻을 밝히면서 고발장사본을 공개했다. 먼저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을 요약, 게재한다.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유죄판결이 의존한 유일한 직접증거는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이 검찰의 요구에 따라 필적감정을 시행하고 작성한 감정서 및 그의 법정에서의 진술이었다. 이에 강기훈씨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하여 전력해온 우리는 다음과 같이 김형영을 허위공문서 작성(형법 제 227조), 동 행사(형법 제 229조) 및 위증죄(형법 제 152조)로 고발한다.

1. 허위 공문서 작성

가. 감정 일반(생략)

나. 김기설씨 명의 유서와 김씨 가족 등이 제출한 김씨 필적의 이동(異同)여부에 관한 감정

(1)김형영은 91. 5. 15자 감정서에서, 김씨명의 유서 2매(91. 5.경 작성), 김씨 가족이 제출한 필적 2매(81. 경 작성) 및 김씨의 주민등록 분실신고서(89. 10.경 작성) 필적의 이동여부에 관하여, 유서필적과 후 2자의 필적은 차이점과 유사점이 공존하고, 후 2자의 필적이 정서로 기재된 반면에 유서필적은 속필로 기재되었으며, 필기구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정서와 속필 및 다른 필기구에 의한 변화상태를 알 수 없어서 이동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이라고 감정하였다. 즉 유서필적과 이동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그 대조 자료가 속필로 기재되고 같은 필기구(싸인펜)으로 쓰인 대조자료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5. 25. 자 감정서에서는 대조자료로서 위 후 2자의 필적의에 이력서(90. 9.경 이후 작성), 김기설씨의 친구 안해정씨 김씨로부터 받은 편지봉투와 그 내용(87.11.경 작성) 및 카드(87. 11. 경 작성) 등 필적과의 이동여부에 관하여는, 유서필적과 나머지 필적을 비교할 때 양자는 “기재된 형태가 정서로 기재된 형태와 싸인펜에 의하여 속필로 기재된 형태의 차이가 있으므로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조자료로서 부

적합하지만, 현재에 나타난 상태에서 대조한 바, 일부 받침과 연결부분, 자음의 구성에서 유사성은 있으나, “필의 구성과 운필각도, 직선적이고 곡선적인 운필형태, 모음의 연결부분 등에서 다수의 차이점이 관찰”된다는 이유로 양자는 상이한 필적이라고 감정하였다.

그러나 대조자료가 부적합 하면 감정을 유보해야지, 어떤 근거로 상이한 필적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도 모를지 이해할 수가 없다. 또 91. 5. 15자 감정에서는 대조자료가 유서글씨와 같은 속필체도 아니고 싸인펜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동불능이라고 판단하였는데, 뒤에 추가된 김씨의 이력서, 김씨 친구 안해정씨 보관하고 있던 편지 등의 필적 또한 싸인펜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정서체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처럼 상반된 감정결과를 기재하게 된 것인지, 그 논리적 비약과 비과학성에 아연할 따름이다.

(2)이 사건 2심 변론 종결후, 검찰이 김기설씨의 필적을 은폐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즉 91. 5. 13.-14.경 검찰은 김씨가 복무하던 군부대로부터 김씨가 동료 사병인 서기선하사의 수첩에 써준 필적을 입수하였는데, 검찰은 수사당서는 물론 공판과정 내내 이를 숨겨 왔던 것이다. 당시 변호인단이 위 사실을 지적하며, 공판적자 재개신청을 하자 검찰은 마지 못하여 위 필적을 공개했다. 위 김씨 필적은 한눈에 보아도 그동안 경쟁이 되 온 김씨의 속필체와 정자체가 섞인 중대한 물증이었다. 따라서 법원은 당연히 공판적자를 재개하여 위 필적의 작성 및 압수경위, 감춘이유, 유서필적과의 이동여부를 심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단의 재개신청을 기각하고 서둘러 강기훈씨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제 검찰은 위와 같은 전후 사정과 위 필적과 유서 끝씨와의 이동여부를 철저히 수사하여 김형영의 감정서가 내포하고 있는 감정상의 중대한 오류 및 궁극적으로 유서가 김기설씨 본인에 의하여 쓰여진 것이라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다. 업무일지에 대한 감정

김형영은 91. 5. 15. 자 감정서에서 김씨 명의의 유서와 진민련에서 제출한 업무일지는 동일한 필적이라고 감

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뒤에 강기훈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업무일지는 3인이 작성한 것으로 밝혀 졌다. 이동진이 맨 앞장(“경수노련관련 경기도경 항의방문 및 대공분실 방문”기재 부분)을 쓰고, 둘째장 다섯째칸과 관글씨(“4월 혁명 기념대회 준비” 기재 부분)는 임무영, 둘째장의 나머지 부분과 셋째장 부분은 김기설씨가 쓴 것이었다. 김형영 스스로도 특히 위 부분을 지적하여 나머지 업무일지 필적과 상의하며, 업무일지는 여러 사람이 쓴 것임을 법정에서 인정했다. 위 업무일지가 적어도 여러사람에 의하여 쓰여졌다는 사실은, 동 일지가 조작된 것이 아니며, 김기설씨 명의의 유서를 강씨가 대필하지 않았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따라서 업무일지가 여러 사람에 의하여 쓰여진 것이 틀림 없는 이상, 유서와 업무일지는 한 사람이 쓴 동일 필적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김형영은 양자를 동일 필적이라고 감정하였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감정이다. 특히 김형영은 법정에서 “검찰로부터 업무일지가 여러사람에 의해 쓰였을 지도 모르나 그중 유서와 같은 필적만 감정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더욱 분명하게 어느 부분이 유서와 동일필적이고 그렇지 않은지를 기재하여야 옳지 않은가. 상식적으로 그가 만일 위 감정 당시 업무일지에 위와 같이 여러 사람 필적이 섞여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동일 필적이라고 감정하였을리 만무하다. 그러므로 91. 5. 15자 감정서는 허위감정이고, 엉터리 감정이다. 검찰은 스스로 업무일지가 3인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따라서 유서 필적과는 동일 필적이 아님을 선언하여야 한다.

라. 김씨명의의 유서와 강기훈씨 필적과의 감정

(1)김형영이 유서와 강기훈씨 필적을 대비하고 그 결과를 회보한 91. 5. 17. 감정서 및 7. 4. 자 감정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형영은 아무런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일부 글자만을 비교하여 유서필적과 강기훈씨 필적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감정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감정은 유서에서 특히 눈에 띄는 “ㅎ” 필법의 특성, 전체적으로 강기훈씨의 필적이 유서의 글씨와는 반대로 오른쪽 아래와 기울어지는 경향 및 글자폭의 정도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허위 감정이다. (2)(생략)

(= ‘위증’ 부분은 260호에 게재)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동아시아 여성포럼 행동강령 준비

7일 NGO한국위원회 제4차 세계여성대회 발전전략 세미나

95년 9월4-15일까지 북경에서 열리는 유엔 최대의 여성행사인 제4차 세계여성대회를 앞두고 NGO한국위원회는 한국여성발전전략 세미나를 가졌다.

7일 오후1시부터 한국여성개발원에서 1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제4차 세계여성 대회와 한국여성 발전 전략 세미나’는 1부 ‘제4차 UN 세계여성 대회의 의의와 NGO(비정부간단체)의 역할’과 ‘한국여성의 지위와 발전전략’에 대해 발표를, 2부 실

천계획의 분야별 토의, 3부 전체토론으로 이뤄졌다.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은 10월 20-23일 일본에서 갖게 될 ‘동아시아 여성포럼’에 반영되게 된다.

김원자(대한 YMCA연합회)씨는 ‘제4차 세계여성 대회의 의의와 NGO의 역할’에서 지난 세계여성대회의 배경과 의의 그리고 NGO의 역할과 참여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이번 세계여성대회가 “85년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3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여성발전 전략의 이행상황을 평가,

새로운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75년 이래 여성에게 일어난 변화를 총평가하는데 있다”고 목적을 설명했다. 또한 냉전종식후 처음 갖는 여성대회라는데 의의가 있는데,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 극대화된 만큼 빈곤여성의 문제가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바라보았다.

2부 분야별토의는 △여성과 발전 △여성과 정치세력화 △여성과 인권·문화 등 3분야로 나뉘어 분반토론 시간을 가졌다.

주제 ‘여성과 발전’은 환경공해·직업개발·여성노동·농촌여성·여성건강의 소주제로 분류되었다. 주제 ‘여성과 정치세력화’는 정치참여·정치발전전략으로, 주제 ‘여성과 인권문화’는 성폭력·정신대문제·종교와 성차별의 등으로 세분화되어 발전과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95년 9월4-15일까지 열리는 제4차북경여성대회는 제4차북경여성대회는 NGO포럼과 함께 2-3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평등·발전·평등’의 주제로 열린 제1차 세계여성대회는 46년 UN경제사회

이사회 산하기구로 발족된 유엔여성지위위원회가 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가진 것이다. 멕시코에서 개최된 이 대회에서는 여성행동강령을 채택하고 현상이 극대화된 만큼 빈곤여성의 문제가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바라보았다. 2부 분야별토의는 △여성과 발전 △여성과 정치세력화 △여성과 인권·문화 등 3분야로 나뉘어 분반토론 시간을 가졌다. 주제 ‘여성과 발전’은 환경공해·직업개발·여성노동·농촌여성·여성건강의 소주제로 분류되었다. 주제 ‘여성과 정치세력화’는 정치참여·정치발전전략으로, 주제 ‘여성과 인권문화’는 성폭력·정신대문제·종교와 성차별의 등으로 세분화되어 발전과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95년 9월4-15일까지 열리는 제4차북경여성대회는 제4차북경여성대회는 NGO포럼과 함께 2-3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평등·발전·평등’의 주제로 열린 제1차 세계여성대회는 46년 UN경제사회

한편 NGO한국위원회는 국내 54개단체 연합으로 구성되었으며 ‘대한여성간호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 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 YMCA연합회’등 8개단체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더 많은 사형집행 우려 국제사면위 본부, 한국지부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한국지부(대표 허창수)는 6일 있었던 15명 사형 집행에 대해 즉각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15명의 사형집행에 대한 우려’라는 성명서에서 한국지부는 “사형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로서 범죄예방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또한 사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비인간화 시키고 오히려 가능성을 방지할 수 없으며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으로 정부가 이용하는 형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지부는 “용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 가치인 생명권을 보장해줄 것을 바라고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지부는 이번 사형집행에 대해 “정부가 최근 사회범죄에 대한 국민감정을 이유로 범죄에 대한 정부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형집행을 실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제사면위원회 국제사무국에서도 긴급 논평을 통해 “어떤 나라에서도 범죄의 제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 사형을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고 한국정부 사형집행에 대한 입장을 반박하면서, 다른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 유엔은 사형폐지를 담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 ‘제2선택의정서’를 채택, 비준을 권고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

제 일 128-10-131017 메금주-서준식
농 협 011-01-404581 메금주-서준식
국 민 015-21-0723-021 메금주-서준식

고 발 장(요약 2) 위증

고발인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 공대위위원장 함세웅 / 피고발인-김형영

가.감정방법에 관한 위증

앞서 인용(편집주:<인권하루소식> 제259호 참조)한 바와 같이 김형영은 1심법원에서 감정자료와 대조자료를 비교감정함에 있어서, "동일필적이 70퍼센트 이상이면 동일필적, 45퍼센트 이하이면 상이필적, 45-60퍼센트이면 이동식별불능, 60-70퍼센트면 동일, 불능중 택일한다"고 증언하고, 위와 같은 비율계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감정서에 그 계산자료를 첨부하지는 않았으나, 개개 감정할 "그 당시 계산하고 분석하여 그렇게 판단"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하여 2심법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감정인이 전문인으로서 그 일만을 하고 있는데, 감정을 하나하나 특징 비율을 비교 검사하는 상황에서 벌써 다 특징의 퍼센트가 나오는 것이지, 다 일단 체크한 것을 수치를 계산해서 몇분의 몇 그렇게 하는 감정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감정하면서 특징 비율은 감정인의 가슴에서 벌써 '이것은 어디부분 어느부분에서 이것은 70퍼센트 이상이 된다' 그러는 것입니다. 감정인의 오랜 경험, 능력, 객관적인 판단을 종합해서 그런 것이 퍼센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언은 1심증언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계산없이 어떻게 특징비율이 '감정인의 가슴'에서 퍼센트로 나타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김형영은 대비되는 문자들에 있어서 "각각 그 문자들이 총 몇개가 있고 그 중에서 동일부분이 몇개가 발견되어서 비율이 몇 퍼센트 이상이다, 이렇게 감정한 바는 없"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대비한 숫자가 몇자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답변한다).

2심법정에서 변호인이 "위 책(편집주:정창용의 『문서감정의 연구』, <인권하루소식> 제259호에서는 생략)에 의하면... 이동비율은 필순 혹은 자획 구성별로 특징을 찾아 동일 특징수/대조 특징수×100이라는 산식에 따라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김형영은 "예"라고 답변하였으면서도, 뒤에 가서는 "필적

감정이라는 것은 수학하듯이 71퍼센트다, 72퍼센트라고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창용씨 책에도 그렇게 나왔다는 설명은 없고, 일본책에도 없습니다"라고 터무니 없는 위증을 하는 한편, 다시 "그렇기 때문에 필적감정이라는 것은 감정인이 특징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그때 이미 그 특징이 어느 부분에 있고 또 어느 부분에 있으므로 마음속에 수치가 계산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적어도 이것은 70% 이상이 된다'라고..." 증언하는 등 상식적으로 도무지 수용하기 어려운 증언을 하였다.

나.업무일지의 감정에 관한 위증

(1)생략 / (2)앞서 인용(편집주:<인권하루소식> 제259호 3연)한 바와 같이 김형영은 91.5.15자 감정서에서 유서 2매와 업무일지 3매는 동일필적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강기훈씨가 구속된 이후 업무일지가 3인이 작성한 것이 밝혀졌으므로, 변호인은 1심에 이어 2심법정에서 위와 같은 객관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김형영에게 "그러면 (업무일지가) 한 사람의 필적인가, 아니면..."이라고 물어 보았던 바, 김형영은 "한 사람의 필적은 아니라고 감정서에도 나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즉 김형영의 위 증언에 의하면, 91.5.15자 감정서에 업무일지가 여러 사람이 쓴 것으로 감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증언은 거짓이다. 그의 감정서는 단지 유서와 업무일지가 동일필적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다.

(3)김형영은 또 업무일지에 대한 감정착오를 변명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윤경사가 위 감정서의 당시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 와서 "여러 사람이 썼을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몇 사람이 썼는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이 썼는지 여러 사람이 썼는지는 모르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감정해 달라"라고 했다고 증언하였는 바, 위 증언은 사실이라고 믿기 어렵다. 즉 유서사건 공판과정에서 검찰은 위와 같은 의뢰내용을 시인한 바 없었 뿐 아니라, 유서를 누가 썼느냐를 가리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리고 당시 이 사건이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에 비추어, 김형영이 검사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듣고,

또 실제로 그의 감정과정에서 업무일지가 여러 사람이 쓴 것임을 알게 되었다면,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어서는 아니될 감정서에 위와 같은 중대한 사실을 생략한 채 단순히 유서와 업무일지가 동일 필적이라고 감정소견을 기재하였을리 만무하다.

(4)구체적으로 김형영은 1심법정에 이어, 2심법정에서 업무일지내의 필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문:증인은 1심 공판에서 위 업무일지 3매 중 맨 앞장 연필글씨와 둘째장의 다섯째칸 파란 글씨로 기재된 부분은 유서필적과 다르고, 감정 당시에 유사 비율이 45퍼센트 이하로 판정이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

답:예.
문:그렇다면 업무일지에 3사람의 필적이 섞여 있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인가요.

답:그 당시 두 사람인지 세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유서와 같은 것인지를 기준했기 때문에 필적 감정을 한 것인데, 그것이 두 사람인지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그것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김형영의 위 증언을 요약하면, 업무일지에는 적어도 2인 이상의 필적이 섞여 있고, 맨 앞장 글씨와 둘째장의 다섯째칸 파란 글씨로 된 부분은 그 밖의 업무일지 필적과 다르다는 부분은 진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을 그가 위 감정당시에 알고 있었다는 것은 거짓이며, 또 업무일지가 유서를 쓴 사람이 쓴 것인지 여부를 기준했기 때문에 업무일지가 몇 사람에 의해 쓰여진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감정당시 구분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위증이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유서를 누가 썼느냐를 밝히는 것이 쟁점의 전부인 이 사건에 있어서, 유서와 동일필적이 들어 있는 업무일지가 몇 사람이 썼는지 중요하지도 않고, 구분하지도 않았다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김형영의 말은, 그가 감정인으로서의 물론 도덕적으로도 이미 정상인의 윤리 감각을 상실했다는 불행한 사실을 극명하게 상징한다. 이 부분에 관한 김형영의 증언이야말로 그가 한 이 사건 필적감정의 오류 및 나머지 모든 증언의 허구성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단체탈방 32 /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오 고가는 사람과 차의 호환이 가뻔기만 한 도시 한복판을 걸어본다. 제 밧걸과 뉘새와 모양을 한껏 자랑하는 물건들이 즐비한 시장통을 둘러본다. 그러면서 주머니속의 지폐와 동전을 만지작거리며 무언가를 사야만 겠다는 욕구와 계속 씨름을 한다. 결국 덤석 사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필요를 잊어버리고 처박아 버리는 일도 많고 필요한 것을 아무리 찾아도 사지 못할 때도 많다.

다. 장삿군의 말과는 달리 화려한 광고와는 달리 헛점 투성이인 물건을 살 때도 많다. 이런 소비행위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내가 산 물건이 또 하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바로 "법률소비자"라는 말이다. 국어사전을 찾아도 나오지 않고 법률사전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는 왜 소비자일까? 법률소비자연맹을 찾아 들어본 대답은 이렇다.

국민은 납세자로서 국가에 대하여 공공의 서비스 특히 공적, 사적 법률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법률소비자의 개념이다. 이런 개념을 이끌어낸 근거는 첫째, "국가와 공직자와 법과 제도"는 바로 개개인의 자유, 생명, 행복, 사생활, 사유재산, 기회균등의 보장 등에 그 존재가치가 있다고 할진대 국민은 이러한 천부적 인권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지위에 있으며, 둘째, 국민은 대통령, 국회, 내각,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모든 공직자를 직접, 간접으로 선출하여 국사를 위임한 선거권자, 주권자이며 최고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으며, 셋째, 국민이 국가의 일체 살림과 공직자의 의식주 생활을 부담하고 있는 납세자로서 공정하고 성실한 공공(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할 소비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법률소비자연맹 간행 『인권과 국권』 중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은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94년 2월에 공식 출범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시민단체의 활동과 헌법, 사법제도 등을 연구하고 헌법재판소, 각급법원, 국회, 지방의회 등의 방청모니터 활동 등을 해왔다.

서초동의 사무실 벽면에는 각종 신문에서 법률감시운동이나 사법비리에 대해 다룬 기사들이 잔뜩 붙어있다. 몇가지만 훑어 보아도 총체적으로 씩었다는 흔하디 흔한 말이 가득하다. 이것을 보며 법률소비자연맹이 생각한 활동들은 무엇일까?

국민은 납세자로서 공정하고 성실한 공공(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할 소비자의 지위에 있다

짧은 먹글씨로 씌여진 '내의 삼대 공약'과 '5대 시민운동'이라는 목표가 사무실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다. 내의 삼대 공약이란 내삼약-예의 엄치(예절질서, 정의, 청렴검소, 회계 개혁을 말한다), 재경협력(재정자립 없이는 고매한 이상과 사업도 실현, 성취될 수 없다), 실전연수(공공체의식, 교육과 연수)와 외삼약-은건준법(평화적, 민주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추진한다), 공정추구(어떤 이해나 주장에 편파, 동조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공정성을 감시, 견제, 촉구한다), 총력지원(불공정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모든 방법으로 지원 구제한다)이고, 5대 시민운동이란 국민의 의식개혁운동, 시민입법운동, 공정추구운동, 피해구제운동, 법률교양운동을 말한다.

이중에서 기초가 되는 일은 국민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라고 김대인 상임대표는 목소리를 높인다. 국가나 공직자, 법률제도 등은 할 수 없이 순종, 복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성취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자는 것이다. 고지서나 출두요구서만 날라들어도 주눅이 드는 데서 벗어나자고 한다. 이를 위해 제대로 된 헌법공부를 하자고 한다. 우리 역사속에서 국민의 인정을 받지 아니한 비합법기관들이 국민의 입을 막고자 권리를 제한해온 독소조항들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 최고법인 헌법이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을 제대로 알고 권력자들을 위해 하위법이 상위법을 감아먹고 있는 모순을 뒤집어 보고자 한다. 그래서 국민의 책임과 의무는 '감시'와 '견제'와 '촉구'와 '요구'이다. 위의 내용을 법률소비자연맹에서는 "민주입국론"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다. 그 동안의 활

동은 "법률소비자"나 "민주입국론"을 설명하고 전파하는 강연과 글, 자료집 제작등을 통해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데 가장 큰 목표를 두었다고 한다. 대표적인 발간물에는 『인권과 국권』과 『민주입국』이 있다.

한편, 전화와 내방상담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병행해 왔는데 하루에 30여건, 일년간 800여건에 이르는 상담을 했다. 이 속에서 느낀 것은 일반시민들이 상담하는데 부담스러운 변호사 사무실을 찾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 일반시민들이 가장 기초적인 법률지식에서도 상당수 문의한이 경우가 많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사건의 해결과정을 살펴보면 변호사선임등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시민들이 상담을 통해 얻은 조언과 간단한 법률지식만으로도 스스로 뛰어나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법률소비자라는 말도 처음이지만 법정모니터제도 법률소비자연맹이 처음 실시했다고 한다. 94년 4월부터 서울의 주요대학 법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실시되었고, 법률소비자연맹에 참여하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수업의 연장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법정모니터요원이 관찰한 사항들은 법정의 분위기에 대한 전체적 느낌, 법정에서 단위시간당 부과된 사건의 숫자, 변호사 선임시와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차이(변론의 기회에 있어서의 평등여부), 피고인의 인권에 대한 개선점 파악, 재판중인 부장판사 또는 단독판사의 태도, 국선변호인에 대한 소감, 법정 정리의 방청객에 대한 간섭정도등에 걸쳐 있다.

그리고 법률시민대학강좌를 올 하반기에 열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헌법 등 기본법과 소송절차법에 대한 공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의료법, 교통사고, 보험사건, 건축, 세무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된 법률 및 규정과 시민운동에 관한 공부등이다. 법률소비자운동이라는 것은 아직도 생소하기만 하고, 처음인 만큼 벌여야 할 일들이 많지만 할 것 같다. 그 많은 요구와 일들을 성숙된 자세로 이끌어가기 기대해본다.

인권운동 시랑방 류은숙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404-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제도교육에서 밀려난 어린이의 꿈과 희망 담아

8일 '민들레의 합창' 어린이·교사·지역주민등 225명 출연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회장 이명희, 서울공부방연합)는 8일 6시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7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시빈민 아이들의 문화복지 '민들레의 합창'을 개최하였다.

서울공부방연합 소속 30여개 공부방 어린이들, 교사, 지역주민은 그동안 같고 닮은 솜씨를 서로 나누며 이번 행사에 주인공이 되었다. 경제·사회·문화면에서 소외된 산동네 아이들이지만 나름대로 그들의 건강한 대안문화를 창조하는데 이번 행사의 의의가 있다. 전체 기획을 담당했던 심상구(한국도시환경연구소 연구원)씨는 "민들레의 합창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어린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제도교육권에서 밀려난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그들이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으로 설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실제로 이번 행사는 전문 문화인들보다는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의 한마당이였다. 희망의 집(성동구 행당

동), 푸른하늘(금호동), 어깨동무(성수동), 새날맞이(구로구 시흥 2동), 꽃망울(관악구 봉천3동), 밤골아이네(성북구 하월곡3동), 상계동 어머니 학교(노원구 상계3동) 어린이, 교사, 지역주민등을 포함해서 행사에 참여한 총출연자가 2백 25명이나 된다.

전체행사는 연합풍물패 길놀이로 시작되어 첫째마당 '아침을 여는 사람들', 둘째 마당 '다시 일어서는 봄들', 셋째마당 '꿈과 희망'으로 구성되었고 대동풀이 한마당에서 진도 강강술래를 부르며 아이들과 청소년, 관객 연희자가 함께 어우러졌다. 첫째마당에서는 가난한 이들의 평범하고 따뜻한 삶, 둘째마당에서는 달동네의 철거바람에서도 겨울을 인내하는 새순의 모습, 셋째마당에서는 좁고 허름하고 지저분한 귀퉁이에 자라난 민들레의 수많은 흙씨들의 꿈을 형상화 하였다.

행사장에는 '무기장난감, 불법비디오, 폭력만화 바꿔주기' 사업을 통해서 수거된 물품으로 조형물이 전시되었다. 조형물을 제

작할 최태원(민미협 회원)씨는 남자 아이들의 장난감이 대부분 총인 것에 착안하여 평화와 전쟁방지를 상징하는 설치작품 "아이와 목마의 비밀"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는 "물질이 풍요로운 사회는 아이들에게 질과 양에서 많은 장난감을 자제다주었지만 아이들의 정서는 어릴수록 오�히려 황폐화 되었다. 설치작품은 목마를 투명한 아크릴 판으로 제작하여 그 안에 총을 넣어 목마의 몸속에 자본의 이익이 숨어있도록 했

다"고 설명했다.

민교협, 안기부장 공개 사과요구

민교협은 최근 안기부가 자수간첩사건을 수사한다며 대학교수 3명을 긴급구속한 것과 관련, 10일 성명을 내어 김택 안기부장의 대국민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민교협은 성명에서 "안기부는 뚜렷한 혐의사실도 없는 교수들을 안기부가 북한의 공작원으로 지목하고 있는 사람과 독일 유학시절에 이웃에 살았거나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긴급구속장을 발부함으로써 수사권을 남용하고 대학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말했다(민교협 성명 전문 2면 참조).

◆ 공 판 안 내 ◆

- 10월 11일(화)
 - 조무하, 국보법, 10시, 422호, 선고, 형사2부
 - 조두현, 국보법, 10시, 317호, 속행, 1단독
 - 한영환, 국보법, 10시, 319호, 2회, 형사23부
 - 김재용, 국보법, 2시, 318호, 1회, 형사25부
 - 이종욱, 국보법, 3시, 318호, 1회, 형사25부
 - 우조교(성회룡사건), 3시, 405호, 항소심3회, 합의2부

- 10월 12일(수)
 - 안재구(구국전위), 국보법, 10시, 311호, 2회, 형사21부
 - 정몽준의 3, 폭력행위등, 11시, 424호, 속행, 9단독
 - 김진국, 국보법, 2시, 311호, 1회, 형사21부
 - 안병일, 국보법, 2시, 421호, 8단독
 - 신광수외1, 국보법, 5시, 424호, 속행, 9단독
 - 백근화, 국보법, 2시, 425호, 1회, 형사22부

- 10월 13일(목)
 - 설훈,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3시, 422호, 속행, 항소2부

- 10월 14일(금)
 - 김민철, 국보법, 10시30분, 321호, 선고, 6단독
 - 홍중희, 국보법, 10시, 319호, 2회, 형사23부
 - 류낙진, 국보법, 10시20분, 1회, 형사23부
 - 신학철, 국보법, 3시, 422호, 속행, 항소5부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

재 일 128-10-131017 예금주-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서준식
 국민 015-21-0723-021 예금주-서준식

해외한청련, 국보법 철폐시위 재미 한청련, 10주년 기념식

「해외한국청년운동연합」(공동의장 정민, 해외한청련)들은 지난 9월3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 앞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집회를 벌였다.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을 위한 미국운동본부」, 「해외한청련」, 「재미한겨레민족민주운동연합」 등 3개단체가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미국 각 지역과 호주, 캐나다, 유럽등 해외 각지역에서 1백50여명이 참가했다.

정민 한청련 회장은 "미국도 국가보안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까지 합의했던 김영삼정부가 국가보안법의 독선 칼을 휘두르며 기본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우매한 일이고 전세계로부터 지탄을 받을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했다.

재미 한청련 10주년 맞아 기념식, 문화행사등 가져

84년 1월1일 발족된 재미한국청년연합(회장 심인보, 재미한청련)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10월1일 로스앤젤레스 콘서트 연합감리교회에서 기념식과 기념강연회를 가졌다. 기념식에서는 해외민족민주운동발전회 이바지해온 조용환 변호사, 이주영, 데이빗 이스티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가진 기념문화제에서는 재미한청련의 지난 10년을 노래, 시, 춤, 슬라이드 상영등 문화공연을 통해 되돌아보며 직접 활동에 참여했던 이 들로부터 당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에서 재미한청련은 이후에도 평화통일운동, 국내운동지원, 국제연대운

동, 미국내 동포사회운동과 타소수민족운동과의 연대활동등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것임을 밝혔다.

엠네스티,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침해 사례 캠페인 10.15-23 각 대륙에서 14명 선정

국제엠네스티는 오는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유엔협약 채택 5주년을 맞아 각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캠페인을 벌인다.

매년 10월 세계주 '엠네스티 주간'에 벌이는 이 활동에서 엠네스티는 부당하게 침해당한 각지의 사례를 선정해 해당정부를 상대로 탄원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엠네스티는 또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유엔협약 5주년이 되는 11월 20일에는 보고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엠네스티가 선정한 사례는 경찰에 의해 고통과 가혹행위를 당한 인도네시아의 9세 소년 Junyonto등 아시아지역 4명, 아버지가 콜롬비아의 게릴라들을 돕고 있다는 이유로 잡혀가 실종된 베네주엘라의 14세 소녀 Yolando Landino등 미주지역 5명, 유럽과 아프리카 2명등 모두 14명이다.

수많은 민간단체와 유니세프등의 유엔기구에 의해 10여년의 기초과정을 거쳐 채택된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94년 4월 현재 1백58개국 이 가입하고 있다.

연락처 : 053-426-2533 (엠네스티 한국지부)

편집주 : 안기부가 대학교수를 연행·긴급구속하고 언론에 흘리는 과정은 '간첩 관련자'가 받는 대우, 인신구급 절차의 자의성, 언론의 '따라 춤추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된 민교협 성명 전문을 실는다.

안기부의 부당한 구속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국가안전기획부는 지난 5일 밤에 현직 대학교수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한 뒤 혐의점이 없자 7일 오전에 석방하였다. 안기부는 자수간첩사건을 수사한다며 이들이 뚜렷한 혐의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현재 안기부가 북한의 공작원으로 지목하고 있는 사람과 독일 유학시절에 이웃에 살았거나 몇번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이미 10여년이 지난 일에 대해 긴급구속장을 발부하였다. 안기부는 이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긴급구속장을 제시하지 않고 혐의사실을 고지하지도 않는 등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무시하였다. 이처럼 안기부는 기껏해야 참고인에 불과할 이들을 피의자로 몰아 긴급구속장을 발부함으로써 수사권을 남용하고 대학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게다가 안기부는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단계에서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대부분의 언론은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이들 3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다. 일부 언론은 '붉은 장학금' 운운하며 근거도 없는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최소한의 양식도 저버리는 행태를 다시 한번 보여 주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번 사건이 "북한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대학교수가 된 사례가 있다"는 서강대 박홍 총장의 발언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내용이다. 이는 안기부가 박 총장의 발언에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간첩사건을 꾸민다는 의혹을 주기에 충분하다. 안기부가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적용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안분분위기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러운 것이다.

지난 여름 이후 우리 사회는 이른바 '조문파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심한 공안판파의 몸살을 겪고 있다. 우리는 이 공안판파가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수구세력의 몸부림이었다고 보며 행여 이번 사건이 그러한 기도의 연장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이에 이 사회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우리 교수 일동은 이런 사건을 통해 단주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안기부의 책임자인 안기부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1. 무책임한 보도를 한 언론은 반성하고 본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1. 이번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박홍 총장은 북한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교수의 이름을 밝히고 밝힐 수 없다면 총장직에서 용퇴하라.
1. 정부는 그간 인권유린의 대표적인 법장지였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문민정부의 의지를 밝혀라.

1천3백여명의 우리 교수 일동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94년 10월 10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한국인권침해에 대해 유엔을 어떻게 활용할까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23-27일 광주·서울·부산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날 경우 어떻게 유엔을 활용할 수 있을까. 복잡해 보이기만 하는 유엔기구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문제와 관련, 국제인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한 교육이 국제인권봉사회(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IS)와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 광주·부산 인권단체 주축으로 열린다.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광주(10월 23일), 서울(24-25일), 부산(26-27일)에서 진행되는 「국제인권제도 교육프로그램」은 한국 인권운동이 외국의 민간단체와 연대하여 유엔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드리안 플라우드 줄라 국제인권봉사회 소장등 2명의 외국인과 국내인권단체 활동가들이 강의 및 사례발표에 나설 이번 교육은 유엔인권기구 및 제도에 대한 소개, 민간단체의 국제인권제도 활용 사례연구, 한국인권단체의 국제제도

활용 사례 등으로 이뤄진다. 특히 광주에서는 국제인권제도 소개 이외에도 국제사회에서 불처벌에 대한 논의의 진행과정과 국제법적 고찰, 광주문제를 주제로 한 유엔활동방향등이 주로 다루질 예정이다.

이 교육프로그램의 준비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권협의 장소영씨는 이번 교육에 대해 "지난해 유엔세계인권대회에 참가하고 올 2월 유엔 인권위원회 정기회의의 모니터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노동, 여성, 환경, 아동, 교육등의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들과 공유하려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또 장씨는 "평소 인권문제와 유엔인권기구 및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 노동, 여성, 환경, 아동, 교육분야등의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 관심있는 변호사, 연구자, 언론인, 학생등이 참가하기를 바란다"며 "사전에 유엔인권관련제도에 대해 미리 공부를 하고 교육에 참가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인권제도 교육프로그램 참가신청은 15일까지 가

능하고 당일에도 가능하다. 참가비는 1만5천원으로 자료집이 제공된다. 서울은 19일 저녁 7시 인권운동사랑방에서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24일은 오후 1시부터 밤 10시, 25일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광주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진행되고, 부산은 26일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27일 아침 6시부터 밤 늦게까지 진행된다(신청 및 문의는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이번 교육프로그램의 공동주최단체인 국제인권봉사회는 84년 설립,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증언을 돕고 인권단체들이 국제기구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분석보고서 제출, 교육활동등을 하고 있으며 제네바에 있다. 국제인권봉사회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각국의 민간단체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계간지 「Human Rights Monitor」를 발간하고 있다.

또 한국인권단체협의회는 94년 6월 창립된 한국인권단체들의 협의체로 9개 단체들이 참여하여 국내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대한 협의 및 조정, 인권정보의 수집·배포, 인권교육 방법의 개발 및 실천, 국제기구의 활용 및 국제·해의 민간단체들과의 연대활동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우주교 항소심 3차공판 조교임면권 싸고 공방

11일 오후 3시 서울 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주심 박중훈 판사)는 서울대 신묘교수에 의한 유아무개 조교 성희롱사건의 항소심 3차공판을 진행하였다. 이날 공판은 당시 학과장을 맡고 있었던 증인 최명인씨에 대해 피고인측 신문과 원고측 반대신문이 있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최명호씨는 유아무개 교수의 우주교에 대한 임면권행사 여부에 대해 "신교수는 NMR기기 담당 조교의 추천과 임명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반면 원고측 소송대리인 박원순 변호사의 "NMR기기 조교의 경우 피고가 추천하면 대체로 학과장이 동의하여 그대로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 보통이나"는 질문에 "보통이라고 대답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뽑는다"라고 대답했다.

조교임용기간에 있어서 피고측은 "유급조교의 경우 대부분 1년간의 임기를 끝내고 자동면직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2차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아무개는 "1년이 지난 후 내가 힘들어서 자직"하였고, 전임자 조아무개는 "1년이 지난 후 연임이 되어 1년 3개월을 근무하였다"라며 유급조교는 대부분 1년임기후 자동면직된다는 주장과는 다른 증언을 한 바 있다.

성폭력위기센터 제3기 지킴이 공개모집

10.10-22 선착순 접수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는 '성폭력위기센터 제3기 지킴이'를 10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자원활동인 지킴이는 1, 2기에 걸쳐 1백2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성폭력위기센터에서 진행하는 24시간 상담활동을 30여명의 전문상담원, 20여명의 사무직원활동가(나눔이)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맨 처음 내담자의 전화를 받아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고 피해자를 경찰이나 법원, 상담원에게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지킴이는 3주에 걸쳐 7회의 교육을 받고 활동을 시작할 수 있으며 접수자격은 남녀전문대 재학자 이상이며, 구비

서류는 이력서와 재학(졸업)증명서이고,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접수후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을 통해 선발, 11월 11일부터 26일까지 7회의 교육을 실시한다. 주소 : (137-600)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45호 / 전화 : 576-7127-8

인터뷰

비정부단체(NGO) 한국위원회 실행위원 이미경씨

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를 앞두고 NGO(비정부단체) 한국위원회는 첫사업으로 지난 7일 '제4차 세계여성대회와 한국 여성발전 전략 세미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실천계획의 분야별 토론을 통해 NGO 한국위원회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었다. 54개 단체가 참여하고 「대한여성간호협회」, 「한국 여성단체연합」등 8개단체 실행위원위원회로 구성된 NGO 한국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실행위원 이미경(45·「여연」 공동대표)씨로부터 듣는다<편집자주>.

▲북경여성대회의 배경과 목적은.
=75년 유엔총회에서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의 제안으로 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정하고 76-85년까지를 유엔여성10년으로 제정했다. 75년, 80년 세계여성대회가 열렸고 85년 제3차대회에서는 3천72개항에 달하는 '2천년을 향한 나이로비 여성발전전략'을 채택, 2천년까지의 여성정책 방향을 잡았다. 2천년을 향한 여성발전전략을 점검하고 21세기 여성의 지위를 높이자는 요구에 의해 4차 세계여성대회는 마련되었다고 본다.

▲NGO 한국위원회의 결성과 활동은 어떤지.
=지난 3월 31일 NGO한국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첫번째 사업이 지난 7일 열린 세미나와 10월 20-23일 일본 가나가와역에서 있게될 동아시아여성포럼이다. NGO한국위원회는 한국정부와 UN에 행동강령을 반영토록 하는 활동을 벌일 것이다. 정부는 나이로비 여성발전전략에 대한 이행 최종보고서를 지난 4월 제출한 것으로 안다. 이 과정에서 NGO한국위원회의 몇몇이 참가해 검토했을 뿐 NGO위원회 차원의 참가가 없었다. UN에서도 정부측에 NGO 의견을 듣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한국정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

정부의 태도와는 달리 국제적으로 NGO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정부보고서에 문제가 많다면 이후 국가보고서를 구해 반박보고서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NGO한국위원회 중에서 국가대표로 참석해 민간단체의 의견을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NGO간의 유대강화를 통해 정보교류등의 통로를 마련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경여성대회 참가계획은, 구체적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이 있다면.
=95년 9월 4-15일 정부대회가 열리고 8월30일-9월8일 NGO포럼이 개최되는데 NGO포럼에 중견위안부 문제를 갖고 워크샵을 준비하고 있다. 언어의 장벽을

고려해 극, 춤등의 형식을 빌린 시각적 효과를 적극 살릴 것이다.

▲NGO준비위원회는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등 5개 지역별 모임으로 나눠있는데 각 지역마다 주요 쟁점사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며, 아시아태평양지역 상황은 어떤지.
=각 지역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진 못하다. 과거엔 이태올로기간의 대립에 따른 문제였다면 이제는 각국 여성간의 유대 속에서 환경·경제·종교등의 문제가 나가고 있다. 아·태지역의 경우 동아시아여성포럼은 정보를 교환하고 행동강령을 내오는 좋은 장이 되리라 본다.

▲북경여성대회의 성과가 가져오는 국내 파급효과는.
=75년 첫대회에서 20년이 지난 지금 여성운동의 참가층은 넓혀졌다고 본다. 초기에는 참가수도 20명안팎이었고 여성운동 실무층과의 교환도, 국제 파급효과도 적었다. 95년 참가수는 1-2백명으로 짐작되는데, 여기서 여성운동의 참가층 확대를 볼 수 있다. 특히 북경여성대회를 준비하면서 NGO의 주체적 참여모습은 눈에 띄었다. 단 아쉬움이 있다면 외국의 경우 노조나 여성노동조직의 자체적 논의와 참여가 많은데 비해 우리는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NGO는 우리의 문제를 국제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시각의 확대를 가져오리라 본다. 또한 정부에 결정된 협약이행 촉구와 여성문제를 풀어가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와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제간의 연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NGO한국위원회의 어려움은.
=무엇보다 경제적 문제가 크다. 재정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사무실이나 상근자가 없어 정보공유나 활동에 제약이 받고 있다. 대회 참여도 경제적 문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평소 국제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은 것도 있으나 언어 문제로 인해 우리의 문제를 알리고 다른 나라의 정보를 얻는데도 문제로 나가고 있다.

▲북경여성대회를 계기로 국내 54개 단체가 모이게 되었는데 NGO한국위원회 후속사업이 잡혀있는지
=지금 잡힌 것으로는 동아시아 NGO위원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올 10월 일본대회를 시작으로 내년엔 북경여성대회를 통해 중국에서 만나게 되고 96년엔 우리나라에서 있을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

제 일 128-10-131017 예금주-서준식
능 협 011-01-404581 예금주-서준식
국 민 015-21-0723-021 예금주-서준식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고문방지협약 가입 추진하면서도 고문은 여전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창립 1주년

문국진모임 창립1년 기념모임

지난 9월22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유엔고문방지협약 가입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올해안으로 유엔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할 전망이다. 또한 10월 7일에는 김근태씨가 국가를 상대로 고문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소식은 고문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듯 보인다. 그러나 신통안정국의 돌풍 속에서 불법연행과 무차별 연행, 고문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고문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나서는 속에서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대표 박정기, 문국진모임)이 13일로 1주년을 맞았다. 문국진모임은 이날 오후7시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에서 문국진씨등이 참석하는 속에서 창립 1주년 기념모임을 진행한다.

6번째 발병후 고문후유증 인식

고문후유증으로 인한 국가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문국진(연세대 79)씨는 80년과 86년 두 차례 고문을 당했는데 작년 6월, 6번째

발병이 하기전까지는 고문에 의한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과거 군사정권시절 고문관련 소송이 무조건 기각당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신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고문피해당사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차마 소송을 제기할 엄두를 못내었다고 한다. 그러나 문민정부를 맞아 무언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문씨 가족들은 문제제기에 나섰다. 문씨의 아내 윤연옥씨가 인권단체와 연세대 민주동문회등을 찾아나선 끝에 박정기 대표, 박래군(문국진모임 총무)등 고문문제에 관심을 가진 인사들을 만나 작년 10월 13일 향린교회에서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창립하였다. 창립직전 문씨 동기생들이 연대79학번을 중심으로 기금을 마련하기도 하였고, 무엇보다 고문피해자들의 호응이 컸다.

고문후유증 인정계기되어야

이들 뒤인 93년 10월 15일 서울민사지법 국가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11월 3일 5차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문씨의 재판이 갖는 의미에 대해 박총무는

“고문후유증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고문후유증 판정을 받은 뒤 국가책임문제와 공소시효의 문

제를 거론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고문피해자의 경우 고문증거와 공소시효 문제가 큰 어려움으로 떠오르는데 재판을 제기할 경우 최대 10년이라는 공소시효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문씨의 책임문제와 공소시효의 문

피해자 및 증인의 입장에서 보호 위한 입법 필요 성폭력의 경우 친고죄 폐지도 필요

지난 10일 경기도 수원과 광주군에서 잇달아 발생한 증인 연쇄보복살상 사건과 「지존파」를 붙잡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이어무개의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및 증인보호에 관한 논의가 일고 있다. 검찰은 「범죄신고자등 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협의자와 피해자, 증인의 분리신문, △혐의자가 목격자를 볼 수 없는 시설 설치, △어린이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법정증인 대신 진술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 제출 등의 방법등을 검토하고 있음 밝혔다.

피해자 및 증인자 보호를 위해서는 법정이나 수사과정에서의 세부적인 증인보호 방법 뿐만 아니라 혐의자의 유죄판결시 피해자 및 증인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고 형사절차에 대한 통고, 심리적 두려움

에 관한 대책이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경우 친고죄를 폐지하는 것이 피해자보호의 측면에서도 당연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인섭(경원대 법학과) 교수는 “피해자 및 증인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사, 개명등의 지원방법이 검토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법원의 혐의자에 대한 피해자 및 증인과의 접촉금지 명령, △유죄로 판결될 경우 피해자 손해에 대한 배상, △피해자 및 증인이 관련된 형사절차에 대한 통고 및 심리불안, △피해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순한 원상회복차원이 아닌 피해액의 2-3배에 이르는 징벌적인 손해배상등의 타국의 「피해자, 증인보호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희롱’ 재판, 재판부 기피신청 내기로 공정한 성희롱에 맞지 않은 ‘응인’ 발언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11일 성희롱 사건 3차공판을 담당했던 재판부(민사지법 합의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를 상대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출한다. 공대위는 “현 시점이 재판의 진행과정이고 재판장은 중립성을 지켜야함에도 성희롱 문제에 대한 자신의 왜곡된 인식과 선입견을 표명했다”며 “담당재판부가 3차 공판시 드러난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재판 진행은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피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피고측의 증인으로 나왔던 당시 학과장이던 최모씨가 피고측의 주문에 답변하는 중 이미 준비한 문건을 보고 ‘낭독’하는 태도를 보였고 원고측에서 계속적인 이의제기를

했지만 재판부는 “이제 겨우 다 끝나가는데 그냥 지 뭐”라는 말을 하였다. 또한 원고측 대리인이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때 “반대신문을 너무 길게 한다, 지나치니까 좀 짧게 하라”고 하는 등 피고측과 원고측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재판 후반부에 최명언 증인에 대한 신문이 모두 끝나고 피고 대리인이 “원고측에서 침해당한 법익이 인격권인지 무엇인지 밝혀라”는 질문에 재판장은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인격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인 한계를 그어야한다. 그리고 사회생활상 상식적인 선에서 누구나 참을 수 있는 것은 위법으로 볼 수 없다”며 마치 성희롱이 상식적인 선에서 인정될 수 있는 문제라는 분위기를 짙게 풍기는 발언을 하였다.

[> 1면에서 계속]

경우 배기영(동교신경정신과 원장) 박사가 고문후유증으로 인한 것임을 증언했는데 다른 고문피해자의 경우 의사소견서가 없어 겪는 어려움이 크다.

고문백서 발간할 계획

한편 문국진씨등 고문피해자 재판지원과 치료비, 생계비 지원을 목적으로 생겨난 이 모임은 현재 고문백서 발간사업을 벌이고 있다. 가족들은 물론 고문피해자 당사자조차도 후유증이 크지 않으면 문제삼고 싶어하지 않는 ‘고문’사업에는 연구자도 활동가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신체적 고문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정신적·심리적 측면에서 더 강화되고 있어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의 필요성은 더욱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인식 속에서 일단 56공시절 있었던 고문사례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연구과제를 제기하고 고문피해자들의 만남을 갖자는 취지로 고문백서 작업은 시작되었다. 올 연말까지 신문기사, 논문등 자료수집과 고문피해자 증언취재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이 자료는 고문피해, 재판기록, 학술자료, 문화행사들로 분류되는데 전문가와의 결함을 통한 연구작업까지 포함해 1년을 고문백서 작업기간으로 잡고 있다. 결국 이 작업은 고문추방운동과 고문피해자 재활운동, 고문가해자 처벌운동의 근거가 되리라고 박총무는 내다보았다.

◆ 인 권 간 행 들 ◆

□ 국제엠네스티(94년9월호)-AI한국지부(☎053-426-2533)
 ·주요내용:논설-국가보안법과 인권/2천년까지 평등해질 수 있을까?(제4차 유엔세계여성대회의 행동강령을 위한 엠네스티 권고사항)/인권교육과 지구시민학습/국가별 캠페인-인도네시아·동티모르 캠페인/난민캠페인:영국, 강제추방과 인권침해/인권교육-비사법 처형과 ‘실종’/남북한에 대한 국제엠네스티의 관심/인론·홍보-브룬디에서의 학살, 정치적 살인(20쪽)

□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제8호(☎796-8364)
 ·주요내용:고문족들이 벌이는 인간말살의 방법들/고문후유증 사례(윤여연씨 경우)/신통안정국에서 부활하는 고문(8쪽)

□ 평화의 일꾼(94년 10월)-천정연(☎719-2172)
 ·주요내용:임범이의 하루주점/인물탐구-조창순선생님등

□ 제4차 세계여성대회와 한국여성 발전전략세미나-NGO한국위원회(☎428-8070)
 ·주요내용:제4차 세계여성대회의 의의와 NGO의 역할(김현자)/한국여성의 지위와 발전전략(영문, 박보희)/여성과 환경 및 지탱가능한 발전(박영숙)/여성의 직업훈련과 개발(김준희)/남녀평등에 장애가 되는 한국여성의 고용 불안정 현황(정강자)/UR과 여성농민(고은실)/한국여성 근로자의 건강실태(변영순)등 (89쪽, 5천원)

□ 학내 성폭력에 관한 공청회-학내성폭력의 개념과 대책-서울대조교성희롱사건 공대위
 ·주요내용:학내성폭력 개념과 대책/서울대 학내성폭력실태 조사결과/참고자료-서울대조교성희롱사건 1심 판결문 요약, 미국고용기회평등위원회 규정등(44쪽)

□ 우리네 아이들(8·9월합본)-지탁연(☎275-8505)
 ·주요내용:지상강연-지방자치, 지역운동, 여성운동(이미경)/기획논단-보육사업의 현황과 과제(최현숙), 보육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이기우), 보육사업 확충·내실화 방안(보사부)/일본보육연수기, 독일탐방기/어린이 수업영상물 심의, 이대로 안된다등 (88쪽)

□ 한미행협의 문제점과 개정방향-미군범죄근절본부
 ·주요내용:형사관할권 개정방향(배금자)/민사청구권 개정방향(장주영)/미군시설과 기지의 사용문제와 개정방향(임재홍)/노무조항 관련 개정방향(한이봉)등(☎744-1211)

□ 시민과변호사(94년10월)-서울지방법원변호사회(☎522-9413)
 ·주요내용:시민의 소리-박홍중장의 발언에 유감있다(박승룡)/경찰관의 인권(박병국)/인론의 편향보도에 대하여(방정배)등/함께하는 광장-사법시험제도에 관한 개선의견(유종원)/독자리포트-헌법재판소의 평가 및 인신관정에서의 시민참여(한인섭)/법률교실-시민을 위한 법률강의등(290쪽)

□ 지방자치제, 우리에게 무엇인가?-(☎521-5364)
 ·주요내용: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김병준)/지방자치와 사회복지(이인재)/지방의회의 현실과 과제(이상목)/부록-지방자치제와 장애인의 역할, 지방자치법 (97쪽)

□ 녹색교통(94년 10월)-녹색교통운동(☎720-7879)
 ·주요내용:장애인에게 이동할 권리는 없는 것인가/국도 지방도 교통사고, 방치할 수 없다(김기홍)등 (120쪽)

□ 고난함께(94년 가을)-고난(☎393-4662)
 ·주요내용:양심의 피난처를 찾아서-외국인노동자피난처(박승복)/현대판 마녀사냥의 끝은 어디인가(강희석)/미주 이민사회가 가야할 길(한호석)등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

제 일 128-10-131017 예금주-서준식
 농 협 011-01-404581 예금주-서준식
 국 민 015-21-0723-021 예금주-서준식

◆ 전경사망 억울한 옥살이 배병성 항소심 선고공판 ◆

일시 : 94년 10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 서울고법 309호 법정
 담당재판부 : 서울고법 항소1부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유엔인권소위 위안부 진상조사단 내년초 남북한 방문 생존자면담, 민간단체와 보고대회등 예정

유엔인권소위원회 일본 군대위안부 진상조사단이 내년초 남북한을 동시 방문, 생존해 있는 남북한 군대위안부 피해자 증언을 청취하는등 조사활동을 벌일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외무부의 유병우 아 태국장은 이날 열린 국회 외무통일위 국정감사 보고를 통해 "전시노예제도에 대한 유엔차원의 일본 군대위안부 진상조사단이 내년 초 방한, 국내 생존피해자들 만나 증언을 듣고 관련

민간 단체와 보고대회등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국장은 "북한의 경우도 이미 유엔조사단의 방문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고

말하고 "유엔조사단은 남북한 동시조사활동을 마무리 지은후 조사보고서를 작성,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 2회 반핵아시아포럼 개최

10월14-21일 원폭피해자와 일본 전후청산등

올해로 2회를 맞은 반핵 아시아포럼이 오는 14-21일까지 일본·대만·필리핀등 아시아 8개국의 시민운동가 40여명이 참가하는 속에서 한국에서 열린다.

14일 오후에는 연대와 친교를 나누는 '연대의 밤'이 흥대 가은누리 찻집에서 오후7시30분부터 시작된다. 15일에는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개막식을 갖는다. 이날 오후2시부터는 '아시아의 비핵지대화과 평화군축'의 주제로 토론이 열리며 '핵문제와 종교' '원폭피해자와 일본의 전후청산'등의 주제로 오후7시30분부터 분과토론이 마련되었다. 17일부터 21일까지는 영광·울진등지에서 지방행사를 가질 예정이다(문의 ☎ 325-5676).

오판사례를 해부한다 김기웅순경 사건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수사·재판의 적법·공정성 검토

권위와 권력의 상징처럼 존재했던 사법부를 시민들이 국민의 주인으로 참여하고 감시하는 행사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오재식, 홍성우)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는 10월 27일 '살인혐의를 덮어 쓴 김기웅 순경 사건'이란 주제로 열린법정을 개최한다.

'열린법정'은 수사과정의 적법성, 재판과정의 공정성, 잘못내려진 판결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 체험자가 직접 참여하여 시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매월 한번씩 열린다. '사법감시센터'는 첫번째 사례로 '김기웅씨 사건'을 선정했다. 그 이유는 진범이 나와 무죄선고를 받기까지 13개월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과 수사를 받는 동안 고문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법감시센터는 서너차례의 오판 발표 이후 공무원, 재벌, 특권층에게 행해지는 공정하지 못한 검찰권 행사에 대해 문제제기도 기획하고 있다.

사법부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한 국민이 기댈 최후 보루라고 하지만 아직도 권위주의와 인권침해, 절차의 지연, 엄청난 소송비용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문제진(사법감시센터 간사)씨는 "법원과 검찰이 권력행사 기관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 하는 기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사지법 합의9부 재판장 박상용 부장판사)를 상대로 13일 고등법원 민원접수계에 내기로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지않기로 했다. 이에대해 공대위는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구두로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대위는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 토론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이성재)는 '지방자치제와 각 영역별 장애우복지의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21일 오후2시 연구소 강당에서 연다.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복지"라는 주제아래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자치시대의 의료'(장세운 전문의) '권리로서의 의료보장'(김용익서울대교수)의 주제발표가 있다. 참가비 5천원(교재포함) 문의☎ 521-5364

성희롱 항소심 재판부, 공정재판 노력 약속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성희롱 사건 항소심 재판부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나길동)는 13일 대구시 남구 대명6동 1021의 2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 전경사망 억울한 옥살이 배병성 항소심 선고공판 ◆

·일시 : 94년 10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 서울고법 309호 법정
 ·담당재판부 : 서울고법 항소1부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긴급구속에 유린된 현직 대학교수의 인권 "명예훼손혐의 소송불사" '안기부 긴급구속과 인권'등 긴급토론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안기부가 현직교수 3명을 긴급구속한 사건에 대해 긴급토론회등을 조직, 이를 여론화하려는 노력을 하고있다.

'교수의 인권마저 유린되는 현실을 염려한다'는 주제아래 19일 변호사회서초 별관에서 갖는 긴급토론회는 박세경변호사가 '안기부의 긴급구속과 인권'의 주제발표를 하고 김남석(경남대 신문방송학) 교수가 '왜곡된 언론보도와 인권'을, 강경선(방송대 법학) 교수가 '교수의 인권과 시민의 인권'을 발표한다. 토론에 앞서 정형택(성균관대 사학) 교수가 직접 경과보고를 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오후 귀가중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긴급구속되었던 정교수는 32시간 조사를 받고 7일 무혐의로 풀려났는데 당초 안기부는 "독일 유학중 북한공작원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친북조직에 참여한 용의점을 찾고 있다"고 긴급구속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교수는 안기부에서 풀려난 후 사실확인도 않고 보도부터 내보낸 무책임한 언론태도와 수사과정에서 내용을 흘려보낸 안기부의 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일을 계기로 "국가권력이 국민의 인권을 얼마나 일방적으로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고 심정을 전했다. 나아가 언론사에 정정보도 요청과 명예훼손 혐의등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긴급토론회 주제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사건으로 긴급구속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형사소송법(70조, 206조)에 의하면 긴급구속영장은 "3년형의 금고형을 받았거나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 중범죄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해 검사가 발부하도록 되어 있는 '긴급구속영장'제도는 긴급구속영장 남발과 함께 심각한 인권침해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긴급구속영장에 의한 연행과 구속은 형사소송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8, 9월달만해도 고대 프락치 혐의자 사망 사건, 이창복(전국연합 의장)·황인성(전국연합 집행위원장)씨 구속 사건, 노동자민족문화운동연합회 사건, 청소년단체 '생' 사건, 성남지역 노동자회 사건, 부천 한누리 노동청년회 사건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철도지하철 노동자들 위한 하루찾집

16일, 불교인권위
 '불교인권위원회'(운영위

원장 진관)는 '조계사에서 62일간 농성한 철도 지하철 노동자 돕기' 하루찾집을 13일 산중다원에서 연다. 불교인권위측은 "이번 행사는 지난 7, 8월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이 조계사에서 62일간 농성한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새롭게 태어나야 할 한국불교의 앞날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에도 불교인권위원회는 당시 조계사에서 농성중인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제일은행 128-20-303720 박용모(진관)

외대생 배병성씨 1심대로 무죄 선고

김순경사망사건 항소심 "발로차 숨지게 한 물증없고 배씨 부인해 증거인정 못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경일 부장판사)는 14일 김충도 순경 사망사건으로 기소된 배병성(22, 한국의국어대 경영정보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에 대해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김순경을 발로 차 숨지게 했다는 물증이 없고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검찰조사과정과 법정에서 이를 부인한 만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씨가 시위에 참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등을 적용해 1심 형량인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해 6월12일 한총련 시위를 막던 서울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김순경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배씨의 어머니는 배씨의 1심공판 진행중 검찰측 증인에 대해 폭행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이날 징역2년을 구형받았다. 선고는 11월 2일.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

제 일 128-10-131017 예금주-서준식
 농 협 011-01-404581 예금주-서준식
 국 민 015-21-0723-021 예금주-서준식

생명존중을 위한 불교인 모임

사형폐지, 생명존중 운동 시작

사형폐지와 생명존중을 확산시키기 위한 운동을 불교인권위원회(운영위원장 진관)와 동국대속립동문회(사무총장 지원)가 함께 준비한다. 가장 '생명존중을 위한 불교인 모임'은 생명을 가버어 여기는 이 땅의 현실을 직시하고 생명존중에 대한 책임을 우리사회가 함께 지도를 한 취지에서 만들어질 예정이다.

진관 불교인권위 운영위원장은 "생명경시풍조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저야할

책임이며, 생명을 침해한 사람은 반드시 사법처리를 받는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민주화 운동으로 희생된 모든 생명에게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정부가 생명에 대한 존중을 먼저 지킴으로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첫 모임은 18일 오전 10시 불교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있다.

문의 : 745-1852-4(불교인권위)

◆ 행사 안내 ◆

□바다가 보고싶은 사람들-빈민장애인 그 삶의 모습

·일시 : 10월 17-20일(월 오후6시)
·장소 : 명동 유네스코 회관10층 '유네스코 화랑'
·주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한국사회의 변동: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한국산업사회연구회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일시 : 10월 15일 오전10시-오후6시
·장소 : 이화여대 인문관
·참가비 : 2만원(10주년 기념논문집2권, 점심식사비, 리셉션비용 포함)
·주최 : 한국산업사회연구회(☎ 888-4725)
·내용 : 총론 '한국의 사회변동과 사회과학'(김진균)

1부 한국의 민주주의 '권위주의정권의 해체와 민주주의로의 이행'(김호기)/ '민주주의 이행과 진보정치세력화-브라질과 한국의 비교연구'(조희연, 김영범)

2부 한국자본주의의 특집과 국제화 '한국자본주의의 재생산구조의 특질과 전망'(김형기)/ '세계경제의 변화와 국제화'(정태인)

3부 한국의 사회변동과 이데올로기 '한국자본주의의 성격과 지배질서-안보국가, 시장, 가족'(김동준)/ '대중문화의 정치경제학과 노동력 재생산'(강내희)

□소비자보호법 개정 공개 토론회

·일시 : 10월18일 오후2-6시
·장소 : 홍사단 2층 강당
·주최 :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793-8081,790-4050)
·내용 :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소비자문제, 소비자운동'(박세일 서울대 법대교수)/'소비자보호법개정안'(이용철변호사)

14일 고난 운영위

'고난 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대표 신경하, 고난)은 14일 운영위원회를 갖고 상반기 사업보고를 듣고 하반기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상·하반기로 나뉘어 1년에 2번 열리는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고난의 하반기 주요사업으로 11월 고난중창단 공연과 12월 달력사업 등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외국인노동자 주제로 10월 월례기도회

고난은 오는 27일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와 공동으로 '외국인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기도회'라는 주제로 10월 월례기도회를 연다. 27일 오후 7시 장소 감신대.

문의 : 393-4662

조정식 열사 12일 추모비 개막

89년 노동현장에서 산재로 사망한 조정식(서울대 물리학과 82)씨를 기념하는 추모비 개막식이 지난 12일 서울대에서 있었다. '조정식 열사 추모비 건립 추진위원회'는 "물리학과 학생들이 그의 삶을 이어 받고자 추모비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가족, 학생, 유가족 회원을 비롯하여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약력 : 82년 서울대 물리학과에 입학, 84년 제직, 84년 10월 노동현장 투신을 결심하고 인천 진도(주) 취직, 86년 '반체통명사건'으로 구속 3년 선고 1년 9개월 동안 수감, 88년 광복절 특사로 출소, 89년 서울영전기계에 취직, 89년5월24일 산재사고로 사망.

여성문제 요약한 여성수첩 95년판 발행

95년 여성수첩이 25일 발간된다. 여성수첩에는 기존수첩의 형식에 성폭력문제와 가사노동문제, 사무직여성노동, 환경 및 통일문제등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비디오·도서목록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실렸다.

여성의 전화는 여성수첩 단체구매팀을 받고 있다. 단체주문시 약간의 추가비용으로 수첩포지에 단체인쇄가 가능하며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의 전화'(대표 이문우, 여성의 전화)는 86년부터 일반여성들에게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 여성문제 개론서의 성격을 담은 여성수첩을 발간해 왔다.

보통수첩과 장수첩 두 형태가 있고 색깔은 자주색·남색·녹색 3가지이다. 가격은 3천원. 문의 ☎269-2962

전국여성대회 열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연숙)는 14일 이화여고 류관순기념관에서 제31회 전국여성대회를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절반인 여성의 참여 50%를 목표로 하되 우선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의회 선거에서 여성의석 20% 확보를 위해 모든 여성이 힘을 합쳐 노력을 경주할 것을 결의한다'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또 '국회는 남녀평등 정신에 위배되는 호주제도 및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철폐할 것을 촉구한다'등의 건의문도 채택했다.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긴급구속

경찰, 검찰, 법원의 공조로 유지되는 인권사각지대

"인권침해 없도록 신중기해야한다"는 집무규칙은 어디로
법원, 오용되는 긴급구속에 정식영장 발부로 면죄부

긴급구속영장이 남발되고 있다. 특히 웬만한 '공안사건'은 대부분 일단 긴급구속부터하고 있다. 임의동행을 가장한 불법연행이라는 비난을 벗고 합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기 때문이다. 법원도 정식영장을 발부할 때 긴급구속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가는 전혀 따지는 일이 없으니 긴급구속의 남용을 막을 길이 없다. 형사소송법에 긴급구속의 요건은 ▲구속자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구속을 요하고,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로 제한하고 있다.

긴급구속만 하면 '합법'

이런 '까다로운' 긴급구속은, 구속영장없이도 경찰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는 관행이 인권침해라는 비난과 법원으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은 뒤 사문화되다시피한 '긴급구속영장'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2월 김영삼정부 출범 뒤 긴급구속된 사람은 1만3천7백32명으로 검사가 사후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사람이 5백46명,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경우가 4백30명에 이르는 등 전체 8%에 달하는 9백76명에 대해 사후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사실은 긴급구속영장제도의 남발이라는 문제점을 증명해 주는 예이다. 심지어 긴급구속영장조차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일어나기도 하며 긴급구속시 구타등 인권침해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 합법이라는 형식 갖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다.

긴급한 경우에만 발부하는 것

긴급구속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사유를 알리고 피의자의 인신을 구금할 수 있는 만큼 긴급구속장의 집행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긴급구속 요건지기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김철준 변호사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 긴급구속영장은 긴급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만큼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대표적 보기로 안기부가 지난 5일 연행, 긴급구속한 정현백(40,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등의 예를 들었다. 정교수등에 대한 마구잡이 연행이라는 비난에 대비해 '긴급구속'이라는 방어벽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인권침해 없게' 규칙은 전시용

긴급구속영장은 '긴급요건의 충족'이라는 자격조건만 문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경찰과 검찰에는 긴급구속이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규정한 '규칙'이 있다. 긴급구속장에 대한 규정은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27조 1-2항), '검찰사건 사무규칙'(24조)에 명시되어 있다.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살펴보면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6조에 의해 긴급구속을 할 때에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긴급구속영장을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경찰과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긴급구속 요건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을 미리 알고 내부의 규칙을 만들었음이 틀림없다. 아니면 자신들이 편법으로 이용할 것에 대비해 '우리도 이만큼 주의할 기을 하고 있소'하고 전시용으로 내놓으려고 마련한 규칙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검찰, 지휘권방기 의혹

긴급구속영장제도가 일반화됨에 대해 검찰측이 지휘권을 일정정도 방기하거나 포기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도 일고 있다. 긴급구속의 집행절차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긴급구속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지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긴급구속 즉시 사후송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사후송인을 요식절차일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불법목인하는 법원, 제각제각 정식영장 발부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긴급구속의 남발과 오용을 정식영장의 심사과정에서 철저히 가려야 할 법원이 이에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8월 범민족대회와 관련하여 긴급구속된 이창복(전국연합 상임의장)·황인성(전국연합 집행위원장)씨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적부심 때 긴급구속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주장과 수사기관의 명백한 법 위반은 간단히 무시되었다. 이씨등은 변호인을 통하여 자신들에 대한 긴급구속은 긴급구속요건이 충분하지 않

[2면에 계속]

담요 씌운채 구타하며 강제연행

국제사회주의 구속자 후원회원 20명 연행

15일 8시경 서울지방경찰청은 「국제사회주의자(IS) 구속자 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혜숙(학원강사, 26), 양효식(대학강사, 38)씨를 연행, 긴급구속하였다. 또한 최일봉(38, 전 의대강사)씨를 포함한 19명을 긴급구속영장으로 연행하거나 영장없이 강제연행 하였다.

가족들에 따르면 경찰은 영장제시를 안한 것은 물론이고 영장제시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구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경찰 수사 도중 구타등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연행자된 정원현(27, 외대중퇴)씨는 “영장제시를 요구하며 강력히 저항하였으나 8명 정도의 경찰이 수갑을 채우고 담요를 뒤집어 씌운채 구타를 하면서 연행

하였다”고 말하였다. 연행됐다 풀려난 정종남(25)씨도 “영장제시를 요구했으나 확인한 구속영장에는 이름, 날짜, 사유 등이 알아보기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희미했고 도장만 찍혀있었다”고 밝혔다. 또 정씨는 “조사도중 구타를 하는등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총 21명의 연행자중 지금까지 10여명이 조사를 받고 나왔으며 나머지 연행자들은 도봉서와 중랑서, 노원서에서 각각 나누어 조사 받고 있다. 같은 날 오문환(서울지하철 노동조합 지측 공격청 지회장 직무대행)씨도 집에서 긴급구속장으로 연행되었으나 영장이 기각 당해 풀려났다.

한편, 부산지방경찰청도 「국제사회주의자(IS) 구속자 후원회」에서 활동하던

김동철(25)씨 등 회원 10명을 연행, 긴급구속하였다. 연행자 명단 서울지역(10명) : 최일봉(38, 전 의대강사), 남수경(26, 고대졸), 이해숙(26세 학원강사), 정원현(27, 외대중퇴), 국경화(25, 동덕여대졸), 안우춘(21, 단국대재학), 한규환(22, 시립대재학), 한은솔(21, 시립대재학), 박순봉(30, 출판사대표), 이택규(26, 외대중퇴) 영남지역(10명) : 김동철(25, 외대중퇴), 한은희(25,

동아대졸), 서수진(24 국제신문사), 정도근(31, 봉생병원), 정은경(25, 대우정밀), 임유현(30, 노동자), 박정주(25, 학원강사), 정동섭(32, 현대자동차), 2명은 신원파악 못함. 풀려난 사람 : 김성학(20, 시립대재학), 임미정(25, 시립대재학), 정종남(25, 대학중퇴), 양효식(38, 대학강사), 송계순(22, 고대재학), 김은주(24, 대학원재학), 4명은 신원파악 못함.

경찰발표 그대로 쓴 동아일보사 언론중재위 제소 '고교에 주사파 침투' 기사

청소년 단체 「셈」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발표한 피의사실만을 가지고 보도한 동아일보사(발행인 김병관)를 「셈」 회원이 언론중재위에 지난 10일 중재를 신청하였다. '고교에 주사파 침투'란 제목의 9월 9일치 기사는 동아일보 사 회면으로 셈의 활동을 "주체사상에 입각한 고교운동조직"으로 표현하고 "1주일에 1-3회씩 서울 당산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체사상을 학습시키고, 주체사상이 우리쪽 사상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고교생에게 가르쳐왔으며, 김일성을 미화하는 내용을 강연" 하였다고 기술하였다.

강찬규(청소년단체 셈회원, 20)씨는 중재신청이유서를 통해서 신문에 보도된 사실과 다른 생활동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고영국(셈 회장, 구속)의 2명은 실제 고교생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친 사실이

없으며 주체사상을 가르칠 목적으로 셈을 만든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민족문화에 대해 배우며, 진로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셈은 고등학생들에게 공개된 단체"라고 말하였다. 또한 "보도내용은 조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셈을 이적단체로 만들기위해 고영국씨에게는 '우리는 열렬한 공산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강압적인 분위기속에서 배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씨는 문제가 된 동아일보 9월9일치 보도로 인한 피해사실로 "셈에 출입하던 학생들은 자진휴학등의 징계를 받고 있으며 수업 시간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또한 경찰의 일방적인 보도로 많은 국민들이 청소년 단체 「셈」에 대해 주체사상을 교육한 이적단체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 공 판 안 내 ◆

- 10월 18일(화)
 - 김용우(청소년단체 「셈」사건), 국보법, 2시, 317호, 1회, 1단독
 - 김재용, 국보법, 11시, 318호, 2회, 합의25부
 - 안영민, 국보법, 2시, 318호, 2회, 합의25부
 - 박래군(구국전위사건), 국보법, 3시, 318호, 2회, 합의25부
 - 이종욱, 국보법, 3시30분, 318호, 1회, 합의25부

1면에서 계속

고, 설사 그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도 48시간내에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못할 경우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되어있는 형사소송법 207조를 판사에게 상기시킨바 있다.

'인신구금 범원권한', 법원이 찾아야

'공안사건'에 있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긴급구속제도를 합법화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유선호 변호사는 "법원이 구속영장 요건을 엄격히 심리해 위배가 될 경우에는 기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긴급구속이 사법당국의 자의적 인신구속장치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집행자의 인권의식이 가장 중요

긴급구속영장제도의 규정을 완화한 긴급체포장제 도입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를 검사가 발부한 체포장으로 구속한 뒤 48시간 안에 사후영장을 받는 제도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만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긴급구속 요건충족에 나서는 문제점을 일정정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권보장이라는 기본인식이 자리 잡지 않는 한 이로 인한 피의자들의 인권침해는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우려된다. 왜냐하면 지난 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국제사회주의자 구속자 후원회」 회원들을 긴급구속장을 발부받았다면서도 영장을 보여주기는 커녕 '수갑을 채우고 담요를 뒤집어 씌운채 구타를 하면서 연행'한 사례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들 인정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공포분위기에서 경찰조사 받았다”

청소년단체 「셈」 첫 공판 주체사상 교양여부 쟁점

고교생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키고 범민족대회에 고등학생들의 참석을 배후 조정했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등으로 기소된 청소년 단체 「셈」 회원 김용우씨에 대한 첫 공판이 김씨의 동료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8일 서울형사지법 1단독(판사 변진장)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모두진술과 검찰신문이 진행됐다. 김씨는 모두진술에서 “경찰에 연행된후 조사를 받던 동안 줄곧 강압적이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특히 “인격모독을 심하게 당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했던 내용중 검찰에 불리한 것은 삭제되고 유리한 것은 적곤하여 재판 을 통해서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근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셈」의 성격, 「다시 쓰는 한국 근현대사」, 「한국 근현대 민족해방운동사」등의 이적표현물 소지와 자주, 민주, 통일의 정치의식을 회원에게 교양시킨 사실, 「사람과 세계」에 나오는 주체사상에 대한 인지도, 범민족대회와 청수입개발반대집회 참가용우씨에 대한 첫 공판이 김씨의 동료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8일 서울형사지법 1단독(판사 변진장) 심리로 열렸다.

와 자주, 민주, 통일의 정치의식을 회원에게 교양시킨 사실, 「사람과 세계」에 나오는 주체사상에 대한 인지도, 범민족대회와 청수입개발반대집회 참가용우씨에 대한 첫 공판이 김씨의 동료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8일 서울형사지법 1단독(판사 변진장)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모두진술과 검찰신문이 진행됐다. 김씨는 모두진술에서 “경찰에 연행된후 조사를 받던 동안 줄곧 강압적이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특히 “인격모독을 심하게 당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했던 내용중 검찰에 불리한 것은 삭제되고 유리한 것은 적곤하여 재판 을 통해서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없고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라는 내용은 동의하지만 이것 자체가 주체사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판중에 변진장 판사는 재판중 「셈」을 커피송어부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김씨는 답변에서 “「셈」은 청소년이 민족문화 연구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만든 단체”라고 말했다. “우리는 주체적이고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며 실천적 삶을 살고자 한다”고 진술했다. 또한 “회원들에게 정치사상을 교양한바

학교비리 다룬 소식지 낸 고등학생에 징계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학칙으로 제한

18일 동일학원(이사장 김동섭)은 동일여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발행한 소식지 「감초들의 이야기」를 문제삼아 학생들을 징계,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징계당한 학생은 송경진(19, 3학년), 김순주(18, 2

학년), 김윤희(19, 2학년)씨로, 징계내용은 퇴학에서부터 2'3주에 이르는 무기징계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징계사유를 “송씨등이 만들었던 소식지 「감초들의 이야기」에 학교

와 교사들을 비방하는 기사를 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순주씨는 “징계시 학칙에 있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징계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 이것은 명백한 학칙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감초들의 이야기」에는 동일여고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실었다. 예를 들어, 교사들이 학생들의 정기적금을 중간에 가로채고 자율학습 금액을 터무니없이 많이 징수한 내용들이다”라고 설명했다. 동일여고의 이 같은 징계는 지난 9월 영등포여상이 청소년단체 「셈」 행사에 참가한 것을 문제삼아 학생 2명에게 자진휴학형식을 빌은 사실상의 퇴학조치를 내린데 이어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를 학칙으로 가로막은 예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91년도에 비준,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에 갖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2조에는 청소년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모든 문제에 의견을 표명할 자유를 가지며, 13조에는 표현의 자유권을 가진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 바로 잡 습 니 다 ◆

<인권하루소식> 266호(10월 18일자) 1면 머리의 '긴급구속' 기사에서 '긴급구속영장'을 '긴급구속장'으로 정정합니다.

'검찰사건 사무규칙'에는 긴급구속장으로,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에는 긴급구속영장으로 규정되어 있는등 그간 용어상 혼란이 빚어 왔으나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긴급구속장으로 통일해 사용하겠습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

제 일 128-10-131017 예금주-서준식
 농 협 011-01-404581 예금주-서준식
 국 민 015-21-0723-021 예금주-서준식

가평교육청 90년 『가평교육』에 분교통폐합 반대글

교육예산의 효율·학력향상에 통폐합은 장애

경기도교육청이 복식수업의 비효율성과 예산의 비경제성 등을 들어 두밀분교 폐교 결정을 내린데 반해 90년 경기도 가평군 교육청이 1년에 1회 발행하는 기관지 『가평교육』에 따르면 현재 교육청의 의결과는 상반되는 글이 실린 것이 확인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가평교육』 편집위원장으로 이은복(가평군 교육청 학무과장)·이영구(편집위원)씨 등 6명의 가평군 교육청 장학사와 조남욱(가평북중학교장)·장내운(상천국민학교교사)씨 등 참여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가평교육』 창간호에 실린 김영배(90년 당시 상색국민학교 두밀리분교장, 현 상면국민학교 교감)씨의 글 '소규모 학교교육은 분교통폐합을 반대하고 해결방안과 분교 경영의 개선점을 상세히 신포고 있다. 김씨의 주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두밀분교 폐교철회소송에서 두밀리 주민들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비춰보아 두밀분교 등 소규모 학교 폐교에 대한 교육자 및 관계기관의 의사 개진과 업무진행이 자율성을 살리기 보다 명령하달식 방법에 의해 조변식개식으로 진행되는 것

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사고 있다. 당시 김씨는 "국가적 차원에서 농촌문제와 함께 농촌 생활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분교통폐합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벽지 교육투자자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농현상과 도시집중의 과밀화 현상의 해결점을 찾고 있다. 현재 경기도 교육청이 복식수업에 대해 비효율성을 들어 폐교명분을 찾는데 비해 김씨는 "학력향상 이유로 분교 통폐합이 문제된다면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심신의 피로, 정서적 불안, 학부모들의 위화감·비협조는 학력향상에 더 큰 어려움으로 나설 문제"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분교아동의 학력향상은 연구기관이나 연구학교의 연구에 따른 학습방법, 학습자료 개발을 통한 소규모 학교 지원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점에 대해 조용환(속대 교육학)교수도 "최근 열린 교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소규모 학교와 복식학급 운영방안 등에 대한 교육학적 연구와 교육적 실천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통폐합 반대이유로 도서벽지의 문화적 낙

긴급토론회 : 교수의 인권마저 유린되는 현실을 염려한다

·일시 : 10월 19일(수) 오후5시
·장소 : 서초동변호사회관 5층대회의실(전화 : 522-9814)
·차례 : 경위보고 - 정현백(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주제발표 - 안기부의 긴급구속과 인권(박세경) 왜곡된 언론보도와 인권(김남식) 교수의 인권과 시민의 인권(강경선)
·주최 : 기자교수협/민교협/참여연대/학단협/한교협인 권위/여연

두밀학교살리기 기금마련 한마당 인형극, 슬라이드, 노래 등 다채로와

‘두밀학교살리기 기금마련 한마당’이 20일 오후 7시 30분 장충동 경동교회에서는 두밀학교살리기에 뜻을 같이하는 예술인들과 함께 펼쳐진다. 「두밀학교 학무모회」와 「두밀학교 살리기 연대모임」이 마련한 공연은 슬라이드 ‘두밀리의 하루’, ‘두밀리 어린 친구들에게 띄우는 김광석 아저씨의 노래’, ‘인형극과 노래’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된다. 이날 초대손님으로는 노래패 ‘노래마을’, 민중가수 윤선애씨, 뮤지컬 배우 나윤선씨, 연극인 이두성씨들이 출연한다. 「두밀학교살리기 연대모임」은 “작은 학교의 중요성을 알리는 자료집 제작과 농촌교육환경 개선에 보탬이 될 기금을 마련하고자” 한마당을 열게 되었다고 말했다. 입장료 1만원. 문의 : 766-7327(조혜영)

후성을 들면서 벽지학교는 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유일한 국가기관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교육예산 투자의 비경제성을 들어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에 반대의견을 제기했다. 나아가 국가는 지역간 고른 발전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자기가 살고자 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터전인 고향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으로부터 미풍양속 전통이 살아 숨쉬는 도서벽지 진흥없는 물질적 풍요속에 정신적 빈곤의 사회병폐가 커지리라는 인식에서부터 분교통폐합의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했다.

유초하교수, 안기부에 자진출두

사민청 정치학교장 활동과 관련해 안기부 수배를 받은 유초하(46, 충북대 철학과) 교수가 18일 오후 안기부에 자진출두했다. 유 교수는 이날 오전 충북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기부의 수배를 납득할 수 없다. 하지만 안기부가 일반적으로 발표한 혐의사를 반박하기 위해 출두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교협 9개 단체로 구성된 「유초하 교수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유 교수의 자진출두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수배 및 직위해제조치철회를 요구했다.

◆ 공 판 안 내 ◆

- 10월 19일(수)
 - 안재구(구국전위사건), 국보법, 4:30, 311호, 3회, 합의21부
 - 정화려(구국전위사건), 국보법, 2:40, 2회, 311호, 합의21부
 - 안병일(김정동 사건), 국보법, 2시, 속행, 421호, 8단독
 - 신광수의 1, 국보법, 5시, 424호, 속행, 9단독
 - 이영기동 3(구국전위사건), 국보법, 2시, 425호, 합의22부
- 10월 20일(목)
 - 김진국, 국보법, 3시, 311호, 1회, 합의21부
 - 김병목, 국보법, 3시, 317호, 속행, 3단독
 - 김기현, 국보법, 10시, 321호, 선고, 5단독
- 10월 21일(금)
 - 김영광, 국보법, 10시30분, 321호, 선고, 6단독
 - 이봉근, 국보법, 10시, 311호, 1회, 합의23부
 - 심충서, 국보법, 2시, 311호, 1회, 합의23부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긴급구속후 영장청구 없이 석방될 때 당사자의 권리침해 보상은 어떻게?

긴급구속요건 미비 대부분 법원, 당연히 영장기각해야

긴급구속 이후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석방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당사자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 최근 부쩍 늘고 있는 긴급구속장으로 인신구속을 당한 피의자의 인권은 현실적으로 보장받을 길이 없음을 지적되었다. 민교협, 학단협, 한교협 인권위등 6개단체가 19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진행한 ‘긴급토론회-교수의 인권마저 유린되는 현실을 염려한다’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박세경 변호사는 이 같이 주장하고, 긴급구속의 요건을 위반하여 긴급구속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성, 객관적 혐의, 긴급성, 구속의 필요성등 요건을 충족못시키면 불법

박 변호사는 이날 ‘안기부의 긴급구속과 인권’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긴급구속제도는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범죄의 중대성, 범죄의 객관적 혐의, 긴급성, 구속의 필요성등 4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불법구속”이라고 지적했다.

긴급구속남발로 침해된 권리, 보장받을 길이 없다

박 변호사는 또 “검찰과 경찰이 긴급구속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긴급구속을 남발하여 있다”며 “현실적으로 피의자의 침해된 인권은 보장받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사후영장 청구시 긴급구속의 요건이 충족되었는가를 심사한다

우리시대 인권상황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인권하루소식> 합본2호』 발간

101호(94년 2월 5일)부터 200호(94년 7월 7일)까지의 <인권하루소식>을 책으로 묶어 발간했습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오재식 선생님의 ‘국제화와 인권운동의 과제’를 머리글로 실었습니다. 총 316쪽의 합본2호에는 관련 기사를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주제별, 사건별 색인을 달았습니다.

합본2호 가격은 1만원입니다.
합본1호와 동시에 구입하실 경우에는 1만5천원입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특히 “긴급구속 후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사후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한다”고 밝혔다. 또 “긴급구속후 영장청구 없이 석방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 긴급구속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긴급구속남발 막을 특별규정 필요

또 박 변호사는 “긴급구속후 압수수색을 통해 ‘이적표현물’을 찾아내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경우도 있다”며 “이는 명백히 긴급구속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의 범죄사실이 실사 구속사유가 되더라도 긴급구속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긴급구속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사건을 긴급구속이란 이름하에 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48시간 정도 법원의 통제없이 구속하는 제도적 장치로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명백히 긴급구속의 요건을 위반하여 긴급구속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형법이나 특별법으로 규제하고, 긴급구속시 영장청구기간을 현행의 48시간 또는 72시간에서 24시간 혹은 48시간으로 줄이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정련 회원, 기무부대에 연행

민정련 구로지부 회원 임영기(23, 육군 56사단)씨가 18일 오전 육군 제602 기무부대에 연행되었다. 임씨는 현재 수도사단 헌병단에 수감되어 있으며 현재 연행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임씨는 방위소집 해제일을 10여일 정도 남겨놓은 상태다.

「구국전위」 안재구씨 반국가단체구성등 공소사실 부인

“조선노동당 가입사실 없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국전위 사건 안재구(61)씨 2차공판이 19일 서울형사지법 합의 21부(주심 윤강렬판사) 심리로 열렸다. 지난 번 시간관계로 중단된 변호인 반대신문으로 진행되었다. 안씨는 변호인 신문을 통해 국가보안법상 ‘간첩죄, 반국가단체의 구성, 금품수수’ 등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안씨는 “피고인은 자주민주통일운동을 위해 일본에 있는 주체사상 연구조직의 도움을 받아 조직을 만들려고 여러 사람을 만나던 과정이었고 조직을 결성하기 전 구속된 것이냐”는 김계완 변호사의 반대신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며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등’(제3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자진지원 금품수수’(국보법 5조) 부분에 있어 93년 3월 정화려씨를 통해 3백엔과 서신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서신내용은 건강에 유의하고 무리하지 말라는 내용과 평등분부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는 내용이지 핵심인사를 배치, 배후조종의 내용은 없다고 진술했다. 안씨는 ‘회합통신’(국보법 8조) 등 혐의사실에 대해서 ‘구국전위결성 축하문’을 연락원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형법 98조 ‘간첩’죄 부분에 대해 전주교도

소 복역당시 임창하씨와 복역한 것은 사실이나 서로 다른 방에 있어서 대화

조선일보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대생 호스티스” 기사로 명예훼손 당했다”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졸업생 오영나(27,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씨 등 15명은 19일 여성지 <필>을 발간하는 조선일보사와 이 잡지의 신상근(31)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일반적으로 특정 취재원의 수기 형식으로 잡지 등에 기사를 게재할 경우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특정을 하거나 추상화시켜 일반인이 가사전체의 흐름을 통해 취재원의 동일성에 관하여 오인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월간 <필>은 지난 8월호 ‘호스티스 출신 서울대 여학생의 충격고백’이라는 기사에서 86학번 여학생 가운데 기사내용과 일치하는 인물이 없는데도 허위사실을 기재해 원고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8천5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장에서 이들은 “이 기사로 인하여 전주들 모교로한 여학생을 물론이고 서울대 사회대 86학번인 원고들은 대부분 미혼의 신분으로 주위로부터 사실확인요구를 받는데 시달리고 있다”

조차 나는 사실이 없다고 대답해 교도소 내에서 조선노동당 입당을 한 것처럼 안기부 조사당시 자백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증거조사로 이뤄지며, 26일 오후 2시 30분.

고 밝히고, “이 사건의 판결결과를 <필>지에 게재할 것도 요구했다.

인권침해 우려 많은 긴급구속제도 보완하라 민교협등 6개단체 성명

민교협, 학단협, 한교협 인권위, 여연동 6개단체는 19일 ‘교수의 인권마저 유린되는 현실을 염려한다’는 긴급토론회에서 채택한 성명에서 “안기부가 지난 5일

성균관대학교 정현백 교수 등(40, 사학과) 3명을 단지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긴급구속하고 밤샘조사를 한 것은 인권유린행위”이고, “안기부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언론에 연행사실을 흘려, 연행된 교수들이 ‘북한 장학금’을 받은 것처럼 보도하게 하여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안기부의 이런 처사는 박홍총장의 발언, 유초하 교수 지명수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반공이데올로기를 통해 양심적, 비판적 지식인들을 사회의 발전노점에서 배제하려는 처사”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또 △안기부는 정교수 등에 대한 조사내용을 호리지 말고 그 결과를 반드시 공표할 것,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긴급구속제를 보완할 것, △박홍총장의 주사과 발언이 증명되지 못할 경우 그를 사법조치 할 것 등을 요구했다.

◆ 행사 안내 ◆

□두밀학교 살리기 기금마련 한마당
·일시 : 10월 20일(목) 오후 7시
·장소 : 경동교회(장충동)
·내용 : 두밀리의 하루(슬라이드)/두밀리 어린 친구들에게 띄우는 김광석 아저씨의 노래/인형극과 노래등
·출연 : 노래마을(노래패)/윤선애(민중가수)/나운선(뮤지컬 배우)/이두성(연극인)등
·주최 : 두밀학교 학부모회/두밀학교 살리기 연대모임
·문의 : 766-7327(조혜영)

□'94 장애인 가정을 위한 평화교육 강좌
·일시 : 10월 21일(금) 오후 2시
·장소 : 천주교 종로성당(전화 765-6105)
·내용 : 강연1, '인권과 인권교육'(서준식)/강연2, '장애우, 가정, 평화교육'(김성재)/전체토론
·주최 : ACRP 서울평화교육센터(전화 823-3961)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 발족기념식 및 토론회
·일시 : 10월 21일(금) 오후 6시30분
·장소 :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내 대동강회의실(전화 820-0802)
·토론주제 : 우리 시대의 진보란 무엇인가
·토론차례 : 주발계(김진균)//보조발계(양재혁, 최갑수, 문성현, 김철준)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

제 일 128-10-131017 예금주-서준식
농 협 011-01-404581 예금주-서준식
국 민 015-21-0723-021 예금주-서준식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철제수갑과 포승에 결박당한 채 식사 대한변협 영등포교도소 재소자사망사건 조사결과 보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지난 7월 영등포 교도소에서 발생한 재소자 사망사건 조사결과보고서 및 교도행정업무개선을 촉구하는 서한을 20일 법무부장관 앞으로 보냈다. 대한변협은 “숨진 재소자 이종식씨는 철제수갑과 포승으로 결박당한 채 징벌방에 분리수용되었고 수용된지 하루만인 20일 밤 11시30분경 순찰중인 교도행형법 개정을 통한 교도소내 가혹한 징벌제도와 열악한 환경개선을 요구했다. 안상수·차병직변호사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7월 20일 재소자 이종식(19)씨의 죽음은 검찰과 교도소 측의 주장대로 이씨가 자살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열악하고 가혹한 교도소 환경은 이씨의 또하나의 자살 원인이 아닌가 의문을 나타냈다. 이씨는 사고발생 하루전인 7월 19일 같은 사방내 재소자 2명과 다른 것이 발각되어 철제수갑과 포승으로 결박당한 채 징벌방에 분리수용되었고 11시30분경 순찰중인 교도관에 의해 목맨 사체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숨진 이씨는 협소한 시설에서 상당한 이유도 없이 포승결박과 수갑을 채워 감금당하고 그 상태에서 식사와 생리현상을 해결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한 변협은 “이러한 조치가 정

상인들 조차 견디기 어려웠던 지난 여름의 이상고온현상아래 취해졌던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훈령 지침서등 공개되어야 또한 징벌대상자가 징계위원회의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온몸이 결박당한 채 독거실에 수용된 것은 중전의 약속을 되풀이 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교도행정의 기준이 되는 행형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외한 훈령, 규칙, 지침등이 대외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는 현실 아래 발생한 것은 밀실행정의 병폐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의 즉각적인 공개와 인권침해 요소 시정을 요구했다.

우리시대 인권상황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인권하루소식> 합본2호』 발간

101호(94년 2월 5일)부터 200호(94년 7월 7일)까지의 <인권하루소식>을 책으로 묶어 발간했습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오재식 선생님의 ‘국제화와 인권운동의 과제’를 머릿글로 실었습니다. 총 316쪽의 합본2호에는 관련 기사를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주제별, 사건별 색인을 달았습니다.

합본2호 가격은 1만원입니다. 합본1호와 동시에 구입하실 경우에는 1만5천원입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구독료를 10월 현재 10만원 이상 내주신 분에게는 기증하고 있으며, 현재 우송중에 있습니다.

동일하고, 무기정학 학생에게도 퇴학처분 학교비리 다룬 소식지 내 2명 퇴학당해

소식지 「감초들의 이야기」에 학교비리를 다루었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무기정학과 퇴학을 내린 동일하고 사건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송경진(19, 3학년) 학생이 퇴학당한데 이어 2주 무기정학당한 김순주 학생에게도 학교교육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학조치 했다. 학교측은 무기정학 및 퇴학조치를 서로 공개하지 않고 해당

학생에게만 일방적으로 전했다. 김씨는 “무기정학을 당하고 나서도 학교에 나가 청소와 반성문을 써야 했다. 그러나 나는 잘못된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하지 않았다”며 퇴학취위를 밝혔다. 또한 그는 “앞으로 계속적인 등교투쟁과 항의교육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학조치 했다. 학교측은 무기정학 및 퇴학조치를 서로 공개하지 않고 해당

인터뷰 : 긴급구속을 해부한다

박세경 변호사

편집자주: 19일에 열린 「교수의 인권마저 유린되는 현실을 염려한다」는 긴급토론회에서 '안기부의 긴급구속과 인권'을 발표한 박 변호사와 서면인터뷰를 가졌다.

* 긴급구속에 관해 법률적 인권적 측면에서 소개한다면?

- 현행법상 인신구속은 사전 구속영장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후 구속영장에 의하는 경우는 현행법(준현행법)의 경우와 긴급구속의 경우 2가지가 있다. 긴급구속이라 함은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이 아닌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 영장주의의 예외인 위 긴급구속제도는 현행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에서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제도 자체만으로는 인권을 유린한다고 말할 수 없으나 사전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하고 그 적용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이를 남용함으로써 국민(중개는 피의자)의 권리를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 형사소송법 제206조에 규정된 긴급구속 요건은?

- 제206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고하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범죄의 중대성, 범죄의 객관적 혐의, 시간의 긴급성, 구속의 사유등 4가지 요건이 필요하고, 만일 이중 어느 하나를 결한다면 불법구속이 된다.

* 현재의 긴급구속이 법률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몇가지 사례를 든다면?

- 그동안 소위 '임의동행'의 형식을 빌어왔기 때문에 긴급구속제도는 사문화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에 '임의동행'이 여론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사법부로부터도 불법이라는 판단을 잇달아 받게 되자 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긴급구속'제도를 활

용하고 있다. 즉 본래 취지가 아닌 강제수사의 필요에 의하여 과거의 불법적인 '임의동행'에 합법의 옷을 입히려는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92년 김영삼 정부 출범 이래 긴급구속된 사람이 모두 13,732명에 이르고 이중 특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도 않고 석방한 사람이 546명,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사람이 430명에 이른다는 사실만 보아도 명백하다.

*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긴급구속, 사후영장을 청구할 때 법원은 이를 기각할 수 있는지요.

- 피의자는 긴급구속된 이후 검사가 판사에게 사후영장을 청구할 때 예야 비로소 긴급구속의 요건이 충족되었는가에 대하여 심사받을 수 있다. 문제는 긴급구속 당시에는 긴급구속의 요건이 결여되었으나 사후영장의 심사 당시에는 법 제201조의 구속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판사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위법한 긴급구속을 판사가 승인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된다. 입장에서 사후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으며, 이러한 현실이 우리나라의 현 인권의식에 대한 지표이다.

* 긴급구속시 사후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 이러한 경우 피의자로서는 긴급구속이 정당한 것이었는지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받을 기회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의자가 받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막히게 된다. 일본의 경우 체포장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석방할 경우에도 체포장을 법원에 청구하여 긴급구속의 요건을 충족하였는가에 대한 사후심사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 통설이다.

* 현재 많이 이용되는 긴급구속이 피의자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가?

- 말할 것도 없이 헌법상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침해이다. 나아가 적법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녹을 먹는 국가기관(법집행기관)이 스스로 법을 파괴하는

행위인 것이다.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긴급구속을 당한다면 피의자는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 법논리적으로만 말한다면 요건이 충족된 채로 긴급구속한 수사기관은 형법상의 직권남용죄, 체포·감금죄 등에 해당할 것이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위와 같은 구제방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국민 전체의 인권의식, 특히 인권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법원의 높은 인권의식이 필요하다.

* 긴급구속의 남용, 오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 (1)현재 형법상 직권남용죄 등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그 실효성이 의문이므로 아예 특별법을 정하거나 혹은 긴급구속 조항 자체에 특별조항을 넣어 수사기관이 명백히 긴급구속의 요건을 위배하여 긴급구속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처벌조항을 둬으로써 수사기관을 간접감제하는 방법과 (2)수사기관의 긴급구속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강화하여 긴급구속시 영장발부 기간을 현행의 48시간 내지 72시간에서 24시간 정도로 단축하고 사후영장 발부시 법원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피의자신문을 하게 하는 방안, 즉 필요적 영장실질 검사에 도입되어 있었다.

*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체포장제도와 긴급구속을 비교한다면?

-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행의 긴급구속제도는 그대로 두고 새로 체포장제도만을 도입하였다. 즉 제200조의 2를 신설하여 체포장 제도를 두었고, 제201조의 2에서 "체포,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청구시 필요하다 인정하는 때 피의자를 심문 후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하여 구속전 피의자 신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개정안 체포영장제도의 실시를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임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체포전치주의 불채택), 또 체포장의 발부요건도 구속영장의 요건보다 훨씬 완화되어 있어 도리어 수사기관의 편의대로 구속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을 넓혀 놓았고, 영장실질심사제 역시 필요적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하게 되어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면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요컨대 국민의 인권보장에 그 촛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의 편의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의문사 진상규명 조사특별위 구성 요구 유가협 국회 의사당 앞 시위 청원 제출 예정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전국민주의민족통일 유가협회의'(회장 박정기, 유가협)의 활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유가협 회원 10여명은 20일 오전 8시40분부터 9시40분까지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의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회내 의문사진상규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의

문사 전면 재조사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국회의원들의 출근시간을 이용해 진행될 홍보작업은 다음주 24-28일까지 계속되며, 28일에는 위의 내용으로 국회청원을 할 예정이다. 그뒤 청와대 앞으로 자리를 옮겨 의문사문제 해결촉구 작업을 벌이게 된다.

자기와 타인을 긍정적으로 존중하는 인권교육을 서울평화교육센터 '장애인·가정·평화' 강연회

'서울평화교육센터'(이사장 김삼룡)에서는 '장애인·가정·평화'란 주제의 제2회 평화교육강좌가 21일 오후 2시 종로성당에서 종교인·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강연에서는 서준식(인권운동 사랑방)씨가 '인권과 인권교육'을, 김성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교수가 '장애우, 가정, 평화교육'을 발표하였다.

서씨는 "우리나라에서 인권교육은 30여년의 군사독재와 고질적인 대입제도도 발불일 틈이 없었다. 91년 정부는 어린이 권리조약에도 가입했지만 그 사실을 현실을 진단하며 "자기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배우

는 인권교육은 다른 삶의 권리를 또한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인권교육에 관해서는 "인간의 심성을 사랑하는 인성교육과 자기의 권리를 지키는 실천교육이 변증법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도교육의 도덕·윤리교과를 인권과목으로 바꾸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자"고 제안했다(23면에 발표문 참조).

김교수는 평화교육이란 "평화적 체제를 구현하고 평화적 인간성의 실현이 동시적으로 완성된 형태"라고 정의하였다. 이어 사회의 편견으로 인한 장애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장애

아에게 동등한 권리를 구현해야 함을 역설했으며 평화교육은 "자기와 타인을 긍정적으로 존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평화교육센터'는 86년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종교인 평화회의 제3차 총회에서 아시아의 종교인들이 모여 인류평화를 구현하겠다고 취지로 설립한 교육단체이다.

AI 조사단 활발한 활동 인권단체등 방문 실례 조사

지난 9일 우리나라를 방문해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조

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제사면위원회(AI)는 20일 청소년단체 '생',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양심선언 가족 등을 만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AI 조사관 클리어 맥베이, 피에르 로베르트와 유카안자코씨는 10일 '한국인권단체협의회'를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13일 법무부, 19일 외무부등 정부기구를 찾았다. 또한 민가협, 사형제도폐지위원회, KN-CC 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등 인권단체와 유서사건 강기훈씨·정현백교수등 양심수, 사노맹사건가족, 류낙진씨등 장기수감자들을 비롯한 양심수의 가족을 만나 인권실태를 조사했다.

AI 조사단은 25일까지 머물 예정이며, 22일에는 영등포교도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알림

□ 국제인권제도 교육프로그램

- 일 시 : 10월 23-27일
- 주 최 : 한국인권단체협의회·국제인권봉사회(IS)
- 일 정 :
 - 23일(광주 ☎ 062-232-5809)-강의 : 국제사회에서 처벌 'Impunity'에 관한 논의 진행과정과 국제법 기준 고찰/ 토론:광주문제를 주제로 한 대 유엔활동 등
 - 24-25일 정동성가수녀원(서울 ☎ 735-7832)-강의 : 민간단체의 국제제도의 활용에 대한 사례연구/ 토론: 한국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어떻게 대 유엔을 활용할 것인가 등
 - 26일(부산 ☎ 051-817-6460)-강의 : 유엔인권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다른 국제인권제도 소개/ 한국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어떻게 대유엔활동을 펼 것인가 등

□ 민중연대의 통일을 위한 한마당 '아리랑'

- 일시: 10월 22-23일 오후 5시30분
- 장소: 경희대 노천극장
- 주최: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747-4364/5)
- 출연진: 정태춘·박은옥·노래마을·소리물결·조국과 청춘·어린이 노래단등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

제 일 128-10-131017	예금주-서준식
농 협 011-01-404581	예금주-서준식
국 민 015-21-0723-021	예금주-서준식

ACRP 서울평화교육센터 제2회 평화교육강좌 '장애인·가정·평화'

어린이의 권리와 어린이에 대한 인권교육(발췌)

발표자 :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의 필요성

▲인권교육과 인권운동
어디서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만신창이인 우리 사회의 인권현실은 확실히 인권교육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인권의식은 결코 배우지 않는 직감이나 양식만으로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간혹 양식있고 지성적인 '민주인사'나 종교인의 무의식 속에서도 평균처럼 뿌리깊게 박힌 차별감정과 반인권사상을 감지하곤 한다. '인권교육'은 우리에게 매우 생소한 말이다. 그것은 세계적으로 새로운 영역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인류에 있어서 아주 오래된 문제들이다.

인권의 존재를 좌우하는 기본조건은 '자유'와 '평등'이다. 대체로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나 그러했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자유롭지도 않고 평등하지도 않다. 국제관계는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에 지배되고 있으며 각 국민국가들은 기본적으로 특권자들을 위한 강제적 통치기구를 그 본질로 하고 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커다란 힘이 항상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지구에서 '인간의 권리'라는 근본 혹은 인권의 이념이라는 것은 근간에 있어서 '진보이데올로기'일 수밖에 없다. '인간의 권리'를 배운다는 것, '인간의 권리'를 생각하고 그 의미를 추구한다는 것은 완성판인 하나의 진보이념을 통째로 배워 삼키는 일과는 다르다. 그것은 누구나가 동의하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라는 원칙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현상을 통하여 인권의 구현을 방해하는 이 세계의 억압구조를 깨닫는 것이다. 또한 그 억압구조가 끊임없이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만들어내는 그럴싸한 레틀릭(레벤)의 정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비판의식을 튼튼히 키워나가는 일이다. 이것은 국제적인 지배질서에 대해서도, 각 국민국가 내의 강제적 통치에 대해서도 진정하고도 근본적인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그런 까닭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독재국가에서는 인권교육을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이며 다른 일부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인권교육을 예외 '체제내화'시키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인권교육은 교육이면서 인권운동의 일부이다. 그것은 인류의 인권문제를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는, 인권운동의 핵심부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의 미래를 짊어져 나갈 많은 어린이들이 기본적인 인권의 의미를 깊이 받아들일 때 국제적 규모의 인권운동은 점차 더욱 분명한 정당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권교육은 그 본질에 있어서 변증법적 교육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참된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구조를 고쳐나가는데 참여할 스스로의 잠재력을 의식하면서 비판적 사고와 아울러 도덕적 헌신을 갖춘 인권옹호의 투사가 자라날 것이다.

인권교육은 항상 세계적인 규모로 전개되는 거대한 인권운동과 조화를 이루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어린이에 대한 인권교육

인권교육은 어른에게는 물론 어린이에게도 필요하다. 그러나 인권교육은 일차적으로 어린이를 위한 것이며 학교에서 제도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이 단순히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리는 권리. 이것이 '인권'의 정의다. 어린이(만18세 미만·어린이의 권리조약 1조)도 '사람'인 이상 인권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노릇이지만 이 당연한 노릇이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생소하기만 하다.

유구한 봉건시대, 일본제국주의의 통치 그리고 50년에 이르는 독재의 시대를 겪어온 우리의 교육은 어린이들에게 '진방지말 것'을, 자유가 방중에 흐르기 쉬움을, '악법도 법'임을 가르쳐왔고 '권리'라는 개념은 없이 의무만을 강요해 왔다. 많은 교사를 포함한 어른들 의식 속에서 '교육'은 어린이에 대한 '자비로운 관리'이다. 어린이를 교육과 인권의 주제로 인식할 수 없는 이런 풍토에서

'인권교육'이라는 발상은 위험천만한 것으로서 차가운 눈총을 받게 마련이다.

어린이의 권리 옹호론은 종전에 때로 무권리자인 어린이에게 얼마만큼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라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이런 전제는 원칙과 예외가 몰구나무 서 있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건대 어린이는 '사람'이다. '사람'인 이상 인권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어른과 똑같다. 인권에 있어서 어른과 평등한 어린이는 '나'라는 특수한 조건 때문에 그 인권에 불가피한 한도의 구체적 제한을 받을 뿐인 것이다. 어린이가 인권의 주체라는 이런 전제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인권교육'은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이 뻔하다.

누구나 국가나 장자의 인권침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이 보장받는 인권항목을 우선 알아야 하고 인권을 회복하려는 높은 인권의식이 있어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같은 이치로 어린이는 스스로의 인권을 국가나 어른들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공부와 연습과 놀이를 통하여 인권의식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다. 어린이의 단계에서 인권으로 배운다는 것은 어린이가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자신 주위의 인권침해 현상에 대하여 분노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런 어린이는 성장하여 험한 사회로 진출할 때 스스로 인권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 타인의 인권도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또한 어린이는 인권교육을 통하여 세계를, 인권의 구현을 가로막는 힘의 정체를,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가를 깨치고 사회의 권력구조에 관한 비판의식을 터득해갈 것이다.

어린이들은 그들에게 '의견 표명의 자유'(조약 12조)가 있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조약 14조)가 있고 '결사 및 집회의 자유'(조약 15조)와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조약 16조)가 있고 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조약 27조), '여가, 놀이 및 문화적 생활에 관한 권리'(조약 31조) 등등이 보장되어 있음을 알게 될 때 부모의 이혼문제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고 부모를 따라 주일마다 교회에 가야하는 현실에, 자기 친구가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현실에, 방과 후에는 빈틈없이 학원에 다녀야 하는 현실에 피로와 할 것이다. 어린이는 이렇게 해서 세상을 배우기

시작하고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시작한다.

권리의 주체이어야 할 어린이에 대한 인권교육은 그들 내부에 주체성을 키우는 교육이다. 왜 인권이 구현되기 어려운가를 진지하게 고민케 하는 인권교육은 어린이들에게 비판적 통찰력과 그것없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참된 이상을 선물할 것이다. 사회적 전망과 따라서 사회에 있어서의 자신의 역할을 깨닫게 할 것이다.

어린이에 대한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어린이는 유아부터 고등학생에 이르는 여러 단계에 걸맞는 방법과 강도로 '세계인권선언'과 '어린이의 권리조약'을 체계적으로 다양한 방법과 실습을 통해 되풀이 배워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나이에 맞는 여러가지 다양한 교재(장난감, 그림책, 비디오테이프, 만화, 놀이, 교과서 등)가 개발되어야 한다.

유아기·국민학교 저학년에는 자기를 인권의 주체로서 자리를 매기는 감성과 반차별의 이미지를 키우는 교육에 중심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즉 인간으로서의 긍지(자기긍정의 논리)는 인권의 주체로서 자라는 데 불가결한 조건이며 유(類)의 감성은 주위 사람을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느끼고 존중하게 되기 위하여 여러가지 놀이를 통해 성장해야 한다.

또한 직업, 신분, 피부색, 언어, 신체조건, 성 등에 있어서 평등을 남

'윤리·도덕'의 이름 아래 반인권적 이데올로기로 가득 채워진 과목을 '인권'이라는 과목으로 대체하기 위한 거대한 운동을 제안하고 싶다.
인권은 삶의 모든 영역에 걸친 인간권리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에게 대단히 유용한 교육이 될 뿐 아니라 그것은 매우 훌륭한 윤리·도덕교육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독할 수 있는 반차별의 이미지를 여러가지 놀이를 통해서 어린이 내부에 키워준다. 검둥이, 계집애, 문둥이 등 차별용어의 시정이 의식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학교 고학년·중학생에게는 이와같은 기초에 더하여 만화, 비디오 등에 풍부한 설명과 사례를 담아 '세계인권선언', '어린이 권리조약'의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어야 하며 서로 사이좋게 살아가는 '세계공동체'의 설계를 공동작업으로서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 속에서 개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하고 평화(생존권), 민주주의와 법, 차별, 사상·양심의 자유, 환경, 여성 등 개별주체에 대한 토론과 상황극, 모의 재판 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 무렵부터 어린이 스스로가 '어린이의 권리조약'을 토론, 비판하는 프로그램도 가능할 것이며, 어린이들 스스로가 '조약'에 의거하여 부당한 억압을 법원에 고소·고발하거나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영화를 함께 감상하면서 영화 속에 나오는 인권침해 사례를 짚어내는 토론도 나쁘지 않다.

고등학생에게는 이에 더하여 인권의 역사, 여러가지 인권보장제도의 메카니즘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에 진출하기 직전 마지막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적 약함, 부당한 공권력으로부터 자신과 이웃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실천적 지식(가령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등)이 필요하다. 인권이 구현되지 않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토론은 고등학생에게 필수라 하겠다.

이 모든 교육이 실제로 해보는 산 교육으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권리'는 일반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이해할 수도 지각할 수도 없다. 실습의 장은 가정이나 학교를 넘은 넓은 세상으로 열려 있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도덕' 과목을 '인권' 과목으로!

이제 우리는 정부에서 할 의사가 전혀 없는 인권교육을 우리 손으로 하나씩 시작하자. 중·고등학생들에게 서어클에서, 야학에서, 주변에서..... 그러면서 한편으로 과감하게 정부에 어린이에 대한 인권교육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나라 중학교 과정에는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으며 고등학교 과정에는 '윤리'라는 과목이 있다. 나는 '윤리·도덕'의 이름 아래 반인권적 이데올로기로 가득 채워진 이들 과목을 '인권'이라는 과목으로 대체하기 위한 거대한 운동을 제안하고 싶다. 인권은 삶의 모든 영역에 걸친 인간권리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에게 대단히 유용한 교육이 될 뿐 아니라 그것은 매우 훌륭한 윤리·도덕교육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인권교육은 '교육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권교육은 어린이에게 예언자의 예지와 성녀의 사랑의 정신과 반체제 지식인의 비판정신을 선물할 것이다. 어린이에 대한 인권교육, 그것은 우리에게 밝은 21세기를 약속해 줄 하나의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시대 인권상황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인권하루소식> 합본2호』 발간

101호(94년 2월 5일)부터 200호(94년 7월 7일)까지의 <인권하루소식>을 책으로 묶어 발간했습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오재식 선생님의 '국제화와 인권운동의 과제'를 머리글로 실었습니다.

총 316쪽의 합본2호에는 관련기사를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주제별, 사건별 색인을 달았습니다.

합본2호 가격은 1만원입니다.

합본1호와 동시에 구입하실 경우에는 1만5천원입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구독료를 10월 현재 10만원 이상 내주신 분에게는 기증하고 있으며, 현재 우송중에 있습니다.

<아동의 주제 - 아동의 권리 >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정현백교수, 언론사 상대 정정보도 청구

“북한장학금 수수, 친북활동등 보도로 명예와 신망 훼손”

지난 5일 안기부에 긴급 구속됐다가 7일 풀려난 정현백(41,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는 24일 지난 7일 안기부의 '북한 장학금' 수사 보도와 관련, 동아, 조선, 한국, 경향, 세계, 서울신문 등 6개 일간지와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서울방송 등 9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는 정정보도청구서에서 “본인은 북한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거나 어떠한 친북활동을 한 적이 없다”며 “북한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등 친북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로 대학교수로서의 명예

와 신망이 훼손됐으므로 정정보도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정교수등 3명의 교수 연합적후 일부 언론은 정교수등이 '북한에서 장학금을 받아 친북활동을 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스트레이트, 해설, 사설등을 동원하여 보도해

정교수등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아왔다. 이에 민교협, 학단협등 6개단체는 지난 19일 긴급 토론회를 열어 '왜곡된 언론보도와 인권'등을 주제로 정교수등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당사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제주지역대학생 6명 국보법 위반혐의 긴급구속

수색영장없이 몰품압수도

제주경찰청은 북한을 고무, 찬양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주체사상을 학습 및 조직원을 포섭하려 한 이른바 '새오름'이라는 단체

조직원들에 대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고창덕(27, 제주대 농학3)씨 등 제주

대 학생과 휴학생 등 제주대 출신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했다. 고씨등은 지난 23일 밤 11시경 집과 사무실에서 연행되었다.

한편 「민주주의민족통일 제주연합」은 이날 학생들 연행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서등을 통해 “경찰은 연행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뚜렷한 혐의도 고지하지 않은 채 연행했고 압부수색영장도 없이 검거했다. 디스켓등을 압수했다”면서 “경찰은 명백한 혐의도 없이 사건을 만들어간다는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불법으로 연행한 것에 대한 사과와 정확한 혐의가 없으면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연합은 또 “한반도에 탈냉정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이때 정권유지와 민주세력 탄압도구로 이용돼 왔던 국가보안법은 냉정의 유물로 폐지되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긴급구속자 명단 : 고창덕, 홍성우(26, 제주대 무역4), 양중호(제주대 국어교육과 3), 김병제(제주대 해양4), 이미영(제주대 식영4), 고동완(제주대 정보2)

공안탄압종식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일천인 선언

·일시 : 10월 25일(화) 오전 10시
·장소 : 백주년 기념관 (종로5가)

우리시대 인권상황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인권하루소식> 합본2호』 발간

101호(94년 2월 5일)부터 200호(94년 7월 7일)까지의 <인권하루소식>을 책으로 묶어 발간했습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오재식 선생님의 '국제화와 인권운동의 과제'를 머리글로 실었습니다.

총 316쪽의 합본2호에는 관련 기사를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주제별, 사건별 색인을 달았습니다.

합본2호 가격은 1만원입니다.

합본1호와 동시에 구입하실 경우에는 1만5천원입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구독료를 10월 현재 10만원 이상 내주신 분에게는 기증하고 있으며, 현재 우송중에 있습니다.

에이즈감염자 단체 「스톱에이즈 운동본부」 발족

감염자상담, 안식처제공, 에이즈예방등 활동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가 본격적인 국내 확산기에 접어들어 가운데 에이즈 퇴치사업과 감염자 권익옹호를 위한 에이즈 감염자 단체가 처음으로 결성됐다. 김형철(40.가명)씨 등에 의해 24일 오후 서울의 한 건물에서 「스톱 에이즈 운동본부」 발족 및 현판식을 가졌다.

이들은 설립취지문을 통해 “바로 지금이 에이즈 예방과 퇴치를 위해 행동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감염자들이 용기를 내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사회에서 도와줄 것”을 호소했다.

스톱 에이즈는 현재의 사무실을 '희망나눔터'로 이름짓고 감염자들을 위한 상담과 안식처 제공 등 권익옹호 활동과 '붉은 리본 달기', 홍보책자 발간 등을 통한 에이즈 퇴치사업에

필 계획이다. 이 단체는 또 보사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할 예정이며 이미 미국 워싱턴에서 발족한 스톱 에이즈 운동본부와 연대활동을 벌이는 등 국제 에이즈 감염자 단체와도 에이즈 퇴치를 위한 교류를 활발히 하기로 했다.

국제언론인연맹 권영길 언론인의장 사전영장 철회요구

국제언론인연맹(회장 엔스 리드, IFJ)은 23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권영길 언론노련 위원장에 대해 발부된 사전 구속영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언론인연맹은 이 편지에서 “국제 노동, 언론단

체들은 권 위원장이 철도와 지하철 노동쟁의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대화를 계속하려는 행동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김 대통령이 권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철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제언론인연맹은 이에

앞서 14~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한국정부에 대해 권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의 민주노조 세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세계 언론 및 국제노동관련 기구를 대상으로 권 위원장에 대한 지지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눈뜨고 당해야만 하는가

언론에 '북한 장학금'등으로 보도되고 당사자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력히 반발, 언론계 및 인권운동계의 관심을 끌었던 사건의 당사자가 24일 9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청구서를 냈다.

최근에만도 청소년단체 「셈」 회원들이 동아일보를 상대로, 고 김남주시인의 부인 박광숙씨가 월간조선에 상대로,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들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각각 정정보도청구서를 낸 바 있다.

그 동안 공안사건등의 경우 언론은 안기부나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거의 그대로 전제하고 해설기사까지 곁들이는 것이 관례였다. 물론 당사자나 가족의 주장은 끼어들음이 없거나 희미하게 처리되고 만 것이 관례였다. 이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의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는 피의사실공표죄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름아래, 대공사건이라는 칼날아래 묻혀버리기 일쑤였다.

시국사건의 편파적인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 외에도 관련정부기관과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죄, 피의사실공표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거나 민사상손해배상청구등의 적극적인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이번 정교수의 정정보도청구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당사자가 적극 나서서 안기부에서 조사받은 내용중 북한 장학금 운운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고, △민교협을 비롯한 학계등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불길히 쉽게 사그라들지 않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또한 언론과 안기부를 상대로 대해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한편 민사상의 손해소송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일 정도의 안기부의 실수(?)가 곳곳에서 명백해 언론이 함부로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하는 데 일침을 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

제 일 128-10-131017 예금주-서준식
농 협 011-01-404581 예금주-서준식
국 민 015-21-0723-021 예금주-서준식

◆ 공 판 안 내 ◆

- 10월 25일(화)
 - 이경수, 노동쟁의조정법, 10시, 421호, 1회, 7단독
- 10월 26일(수)
 - 최영준(구국전위 사건), 국보법, 10:30, 311호, 2회, 합의21부
 - 안재구(구국전위 사건), 국보법, 14:30, 311호, 4회, 합의21부
 - 이영기·유성찬(구국전위 사건), 국보법, 11시, 425호, 3회, 합의22부
 - 이공순, 출판물 명예훼손, 10시, 418호, 선고, 항소1부
- 10월 28일(금)
 - 고영국(샘 사건), 국보법, 10시, 424호, 1회, 10단독
 - 황인성, 국보법, 2시, 424호, 속행, 10단독
 - 이상철, 국보법, 10시, 311호, 1회, 합의23부(주심 이재성)
 - 홍중희(구국전위 사건), 국보법, 2시, 311호, 3회, 합의23부(주심 이재성)
 - 류낙진(구국전위 사건), 국보법, 5시, 311호, 2회, 합의23부(주심 홍승면)
 - 강재우, 국보법, 3시, 311호, 합의23부(주심 홍승면)
 - 백행록, 국보법, 10시, 318호, 속행, 항소10부(2심)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각계인사 1천여명 국가보안법 철폐요구

신공안정국 탄압종식, 구속자 석방등 촉구

학계, 종교계, 법조계, 사회운동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인사 1천여명은 24일 기독교백주년 기념관에서 '신공안정국 종식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공안탄압이 민간통일운동에 찬물을 끼얹고 UR국회비준등 반민중적인 정책을 강행하고 다가올 지방자치선거에 대비해 민주세력을 억압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음을 직시한다"며 헌정부가 시급히 취해야 할 개혁의 내용으로 "진정한 민주대개혁과 민족대단결정책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또 구체적으

로 "최근 벌어지는 탄압행위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활동에 대한 탄압으로 모든 구속자를 석방할 것, 통일일을 가로막고 공안탄압의 근거가 되는 국가보안법의

철폐, 민족대결정책을 중지하고 민족우선의 통일정책을 추진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시급히 개최할 것" 등을 촉구했다.

'현대판 노예 외국인 취업연수생 인권토론회' 27일 2시 종로성당에서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외국인노동자피난처, 참여연대 인권운동 사랑방, 경실련 불교시민연합등 12개 노동, 인권, 종교단체는 "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실태 토론회"를 27일 2시 종로성당에서 연다.

김재오(외국인노동자피난처) 사무국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취업연수생 정책으로 2만여명의 10개국 노동자가 금년 6월부터 입국하였으나 이들은 한국땅에 발을 딛는 순간 노예와 같은 처지로 전락한다. 취업연수생의 평균임금은 15만 9천 2백원에 불과하며 이들이 겪는 인권 침해는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보다 심각하다"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외국인 취업연수생 인권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조성하는데 의의가 있다.

27일 토론회에서는 김재오 사무국장이 '취업연수생의 인권실태보고와 개선방향'을, 윤우현(전노협 고용정책부장)씨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를 발표한다.

최근 정부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해지자 합법적인 외국

인력을 수입하는 방안으로 외국인 취업 연수생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들은 1년을 기한으로 기술을 배우는 연수생으로 한국에 왔다. 하지만 이들의 통상임금은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의 절반 또는 삼분의 일 이하이고 산재를 당했을 때 산업재해보험에서도 제외된다.

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반대 국제적 서명작업 시작

올 12월중 유엔 각국 외무장관들에게 보낼 예정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등, 정대협)는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반대를 위한 국제적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 20-23일 일본에서 열린 동아시아 여성아시아포럼에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국제적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함에 따라 아시아지역의 여성단체와 공동으로 서명활동을 벌이게 된다.

정대협은 "일본이 세계평화를 논의하는 국제적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아시아 여성들에게 한 전쟁범죄 및 비인도적 범죄를 청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여대협, 여성단체, 교회들 중심으로 지방에서부터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정대협은 서명을 12월 안에 각 UN 가입국 외무성과 UN 본부에 보낼 예정이다.

우리시대 인권상황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인권하루소식> 합본2호』 발간

101호(94년 2월 5일)부터 200호(94년 7월 7일)까지의 <인권하루소식>을 책으로 묶어 발간했습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오재식 선생님의 '국제화와 인권운동의 과제'를 머리글로 실었습니다. 총 316쪽의 합본2호에는 관련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주제별, 사건별 색인을 달았습니다.

합본2호 가격은 1만원입니다.

합본1호와 동시에 구입하실 경우에는 1만5천원입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구독료를 10월 현재 10만원 이상 내주신 분에게는 기증하고 있으며, 현재 우송중입니다.

가평군교육청, 폐교책임 떠넘기기 급급

두밀분교 폐교철회소송

지난 4월20일 서울고등법원에 폐교철회소송을 한 두밀분교 폐교문제가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피고 가평군교육청이 '경기도의회가 폐교책임의 당사자'라고 주장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혹을 사고있다. 두밀 폐교문제가 교육적측면에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자 도의회로 책임을 전가해 재판을 끌어들려는 속셈이라는 지적이다.

25일 오전 10시 민사20부 제1특별부(주심 김기동판사)는 피고측 주장에 대해 '경기도의회 조례만으로는 폐교가 되지 않는다'며 행정을 집행한 경기도교육청이 피고당사자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원고측은 두밀분교폐교가 주민과 학생에게 미친 영향력에 대한 보고서 조용환(숙대 교육학과)교수의 '두밀분교 폐교의 정상성과 정당성에 관하여'와 함께 가평군 교육청이 폐교의 부당성에 대해 밝힌 '가평교육'(90년 가평군 교육청 발행)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인권하루소식> 267호 참조). 다음 공판 : 11월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413호.

원진노동자, 재취업촉구 서명

원진레이온 비대위, 전노협, 전노운협, 민변, 환경운동연합등 21개단체로 구성된 원진레이온 살인기계 중국이전 반대 대책위원회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신촌로타리와 명동성당 앞에서 산재종합병원설립과 원진레이온 노동자 재취업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인다.

이번 서명운동에서는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원진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기회 보장, 직업훈련 이수자의 취업보장 그리고 이를 보장할 노동부,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원진비상대책위 4자의 합의각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우명규 서울시장(당시 부시장)은 당정협의회에 참가, 폐업으로 일터를 잃은 6백여명의 원진노동자들을 제2기 지하철공사에 재취업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1)

<인권하루소식>은 23일 광주, 24-25일 서울, 26일 부산에서 한국인권단체협의회와 국제인권봉사회가 공동으로 여는 '국제인권제도 교육프로그램'의 서울교육내용중 한국인권운동이 유엔인권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부분을 중심으로 지상중계한다. - 편집주

'한국인권단체협의회'(회장 고영구)와 '국제인권봉사회'(회장 아드레안 줄라)는 광주, 서울, 부산에서 유엔인권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23일 교육이 진행되었고 부산에서는 26일에 진행된다.

24-25일 서울에서 인권단체 활동가 등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교육에서 인권법을 대표한 이덕우 변호사는 인사말에서 "외세와 분단, 냉전이 아직도 존재하는 한국에서 인권은 더 이상 국가, 민족만의 문제가 아닌 인류보편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는 현실에서 유엔제도를 활용하여 인권침해사실을 제소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은 강의와 토론등으로 진행되었고 24일에는 아드레안과 레이첼씨가 '유엔헌장에 기초한 인권기구 및 제도', '유엔 조약에 근거한 인권기구 및 제도'에서 유엔인권제도를 소개했고, 천정배 변호사가 비엔나세계인권대회 참가경험, 윤미향(정대협 간사)씨가 정대협의 국제연대 활동에 대해 서로의 경험과 고민, 교훈을 나누었다.

레이첼씨는 24일 '한국의 인권침해에 대해 어떻게 유엔을 활용할 것인가?'라는 토론에서 무엇보다도 한국의 인권운동가들이 국제무대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가져야할 전략적 관점으로 "인권법의 조직적 토대위에 구체적이고 대표적이며 장기적인 인권침해가 있는 사건을 선택하여 유엔에 제소하고 성과를 얻어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사업을 끈질기게 잡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미덕이 있어야 한다"말했다. 또한 아드레안씨는 "유엔에 제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이해

비활동을 전개하고 유엔의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는 한국정부를 계속 비판하고 감시하며 국제인권단체와 정보를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5일에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고문, 장기수, 국가보안법, 의문사 등 인권침해사실에 대해 유엔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아드레안과 레이첼씨가 제시하고 참가자들이 토론했다. 그뒤 유엔문서 작성과 국제인권단체소개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이대훈씨가 '민간단체의 국제연대 사업방향과 실천적 대응'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각 주제별 유엔인권제도 활용 방안(편의상 문답형식으로 작성함)

<고문>

-고문방지협약으로 고문에 의한 인권침해 제소가 가능한가?

우선 한국이 가입하도록 압력을 취하는 것이 중요함. '개인제소권 인정과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제소는 90년 한국정부가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 협약)에 의해 할 수 있다. 따라서 90년 이후 발생한 고문은 B규약 7조 '고문·인체실험의 금지'에 의해, 제소할 수 있다. 또한 96년 한국정부가 보고서를 제출할 때 반박보고서를 통해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비록 고문방지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나 한국정부는 다른 조약에 가입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이용해서 개별제소는 불가능하지만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협약등을 철저히 배분해 매년 줄기차게 고문피해 사실을 제소할 수 있다. 특히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18세 이하의 사람들에게도 인권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인식아래 생겨났다.

-안기부등의 강압수사는 고문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가?

고문에는 육체적 고문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비인간적 대우가 포함된

국내의 조직적 토대위에 구체적이고 대표적이며 장기적인 인권침해가 있는 사건을 선택해 끈질기고 집요하게 활동해야 한다

다. 한국정부대표는 93년 비엔나인권대회 협의과정에 참여하여 고문방지협약에 명시된 광의의 고문개념을 인정했다. 스스로 인권이사회 회원국신청을 했고 지난 1년간 UN참여과정에서도 고문방지위원회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이미 한국정부가 광의의 고문개념을 인정했다. 고문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긴급호소, 고문특별보고관 방문, 근거있는 사안에 대한 집중'으로 나눌 수 있다. 고문특별보고관 니겔 로드리(Nigel Rodley)씨 앞으로 호소하는 긴급호소방법이 있다. 이때 정보제공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도록 요청이 가능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문특별보고관은 현지로 방문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방문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고문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방문할 필요성을 느낄 만큼 많은 제소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은 로드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나라이다. 이를 위해 인권단체간 전략과 조정이 필요하다. 인권문제에 있어 우선 순위를 정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소해야 한다.

<자의적 구금, 장기수>
구금중이라는 것은 그 사건이 현재 사건임을 말한다. 자의적 구금은 현재에도 부당하게 구금되어 있다는 것이다. 설혹 구금당시 위법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구금은 자의적이며 그 자체가 불법'이다. 이때 B규약 9조 '신체의 자유'에 의해 제소할 수 있다. 인권이사회는 한국정부가 첫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장기적 구금이 B규약에 위배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B규약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위배된다는 권고안을 낸 사실이 있다. 한국 인권단체는 선택의정서에 의해 강력한 제소가 가능하며 특히 96년 한국정부보고서에 지난 인권이사회 권고안이 어떻게 실행되었는가를 짚어가면서 반박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5명으로 구성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다른 그룹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 단순히 정부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결정은 정치적 권위와 같은 효과를 가지며 준 사법적 효과를 갖고 있다. 실무그룹은 인권위원회 제소전에 모임을 갖는데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는 8월말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합법적 절차를 받은 경우 자의적 구금이라 말하기 어려우며 제소가 어렵다. 그러나 절대적 예외가 있는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8조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장기수의 경우 18세 이하에서 구금된 경우 제기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UN결정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언론 역시 마찬가지다. 어떤 방법을 채택해야 하겠는가. 인권단체들이 어떻게 하는가 중요하다. 일단 언론을 통해 정부에 압력을 넣는 방법이 있다. 둘째 UN의 결정을 갖고 외무부를 통해 질의서를 보내는 방법등 직접 정부와 부딪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 한국정부에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나라 대사관을 통해 압력을 가하는 길이 있다. 이 방법들이 아무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

다른 나라의 비상사태 관련 법제와 연결시키는 국제적인 국보법캠페인을 생각할 수 있다

변호인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해석에 따라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인권소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재판에 관한 권리를 연구하는 과정에 있다.

<국가보안법>
국보법으로 국제적 캠페인을 벌인다면 다양한 각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안보이테올로기는 70년대 유럽등 여러나라에서 있었다. 이후 아시아지역에서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리라 본다. 따라서 냉전체제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국보법은 지속되고 있다는 제기가 있어야 한다. 단 한국의 문제만으로 전세계적 캠페인을 하는 것은 옳지 않고 국제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먼저 UN 인권소위원회에 국보법연구를 제안하는 것이다. 인권소위원회에서는 비상사태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 이 특별보고관의 연구에 국보법을 포함시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95년 8월 인권소위원회가 소집되기 전에 로비를 벌이는 것이 필요하다. 국보법에 관한 연구가 정해진다면 그 규모의 방대함을 깨닫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민간단체들과 공동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제적 세미나등을 통해 전세계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법을 모두 포괄하게 될 것이다. 이미 UN 보고서등 많은 보고서에 80년대 일어난 처형이나 실종등에 국가안보가 관련되었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이 세미나에는 세계적인 인권관련 연구조사기관과 큰 인권단체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또한 인권위원회에서 발언자격을 가진 제네바의 인권단체와의 연결 속에서 국보법문제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또 한 방법이다. 이때 인권위원회에서 일어난 다양한 조사사례와 연결지어 발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대 내 사망등 의문사문제>
의문사가 자살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수많은 자살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는가에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UN 인권이사회는 B규약 18조에 따라 국민이 군복무를 양심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린 바 있다.

더라도 이 사실 자체를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보고를 한다면 실무그룹에서는 다른 형태의 행동으로 압력을 취할 것이다. 실무그룹에 실무그룹의 활동에 관한 감사편지를 보내는 방법이나 아시아위치를 이용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 있다.

에서 한동련등과 접촉했다. 이윽고 이윽고 기소됐다. 원심재판부는 김은주씨에 대한 국가기밀 탐지 수집 부문에 대한 판결에서 "비행기안에서 읽기 위하여 구입한 한겨레신문과 말지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로서 김은주씨의 공소사실중 국가기밀 탐지, 수집 등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이 담긴 신문과 잡지를 탐지, 수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판결했다. 김은주씨는 93년 9월 일본

이날 대법원의 김씨 남매에 대한 원심판결의 확정판결은 국가기밀에 대한 대법원에 바뀌게 돼 앞으로 실제 공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5월 24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방북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석영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신문기사나 국내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6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된 양애리(22)씨에 대한 존속살인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고 다만 칼을 숨기려다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스스로 자해를 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범인과 수사기관의 진술, 당시의 상황, 상처의 깊이 및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살인의 뜻을 인정할 수

<p><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p>	<h1>인권하루소식</h1>	<p>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p>
--	-----------------	--

무엇이 국가기밀인가

대법원, 김은주씨에 국가기밀 무죄 원심확정
황석영씨 국가기밀 유죄선고와 다른 판결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26일 김삼석(29), 김은주(25)씨 남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로서 김은주씨의 공소사실중 국가기밀 탐지, 수집 등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이 담긴 신문과 잡지를 탐지, 수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판결했다. 김은주씨는 93년 9월 일본

에서 한동련등과 접촉했다. 이윽고 이윽고 기소됐다. 원심재판부는 김은주씨에 대한 국가기밀 탐지 수집 부문에 대한 판결에서 "비행기안에서 읽기 위하여 구입한 한겨레신문과 말지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로서 김은주씨의 공소사실중 국가기밀 탐지, 수집 등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이 담긴 신문과 잡지를 탐지, 수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판결했다. 김은주씨는 93년 9월 일본

이날 대법원의 김씨 남매에 대한 원심판결의 확정판결은 국가기밀에 대한 대법원에 바뀌게 돼 앞으로 실제 공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5월 24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방북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석영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신문기사나 국내

우리시대 인권상황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인권하루소식> 합본2호』 발간

101호(94년 2월 5일)부터 200호(94년 7월 7일)까지의 <인권하루소식>을 책으로 묶어 발간했습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오재식 선생님의 '국제화와 인권운동의 과제'를 머리글로 실었습니다. 총 316쪽의 합본2호에는 관련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주제별, 사건별 색인을 달았습니다.

합본2호 가격은 1만원입니다. 합본1호와 동시에 구입하실 경우에는 1만5천원입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구독료를 10월 현재 10만원 이상 내주시 본에게는 기증하고 있으며, 현재 우송중에 있습니다.

부친 살해혐의 여대생에 7년 선고

주벽 심한 부친 실랑이중 사망사건 양애리씨
밖에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아버지가 평소 주벽이 심해 가정을 돌보지 않아 파탄에 이른점과 피고인 등 동정상을 참작할때 원심형량은 다소 과중하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1월15일 밤 11시경 늦은 귀가를 나무라는 아버지(51)와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같은 동네 주민들과 동료학생들이 "우발적인 사건"이라며 서명운동 등을 통해 선처를 호소해왔다(<인권하루소식> 185호, 94년 6월 16일자 참조).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 (2)

편집주 : 25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 인권제도 교육프로그램중 이대훈 ('참여연대, 사무국장)씨가 발표한 '인권운동의 국제연대 방향과 과제'를 요약해서 실는다.

1. 현재 한국인권운동의 국제연대가 갖는 어려움

한국인권상황은 전통적으로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국제무대에 덜 알려져 왔는데 이는 우리의 언어장벽과 소극적, 수동적 사고등이 작용한 때문이다. 또한 한국이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 민주화된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한 것이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종이나 불법처형등 심각한 인권침해는 정도가 덜한 것으로 인식되어 국제적 관심의 우선순위를 벗어나고 있다. 그리고 UN등 국제기구에 대한 불신이 연대에 부작용으로 미쳤다.

2. 우리의 귀중한 성과

세계인권대회에서 인권단체공대위의 경험과 국제앰네스티의 한국인권 상황조사 때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의 안내활동,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안등을 얻어낸 노동조합의 국제연대활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등 여성단체들의 국제연대활동등이 우리의 국제연대 성과로 남아있다. 이제 국제연대에 관한 정보교환과 논의의 모임이 시작되고 있으며 자료축적의 진진과 국제연대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3. 인권운동의 국제연대활동이 취해야 할 기본원칙, 과제

국제연대활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성이다. 인권침해사실에 대한 절박함을 갖고 로비를 벌이는 헌신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한 외국 인권단체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속에서 이 관계의 확대를 통한 다자간 관계의 추진과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인권문제는 표면적 민주화와 경제화의 장벽에 막혀 있다. 한국의 인권문제가 우리만의 특수성이 아니라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보편적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광주학살문제를 '불처벌 문제'로 접근하는 것과 국가보안법문제를 냉전체제내 '국가안보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국제연대에서 전문적인 활동가 양성은 기본이다. 국내 단결과 협력을 기초로 한 해외활동을 펼쳐가는 전국적 협력체제의 네트웍이 제기된다. '인권, 국제연대, 운동'의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인권의 개념확장과 국제정세에 대해 깊이있게 알아야 한다. 또한 운동은 현장성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연대는 주고받음이다. 다른 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활동도 필요하며 평화, 여성, 개발, 민주주의, 참여 등 인권과 다른 주제와의 연관성 속에서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교류와 집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제조직에서 인권 문제는 정부간 관계라기보다는 민간단체간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역할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된다.

4. 해야 할 일

<국내>

국내인권운동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중 몇 개의 사항과 관련되어 있을 뿐이다. 누구나 설득 가능한 기준을 마련할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 각분야의 기본 인권기준의 설정과 대중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의정, 사법차원의 인권관련 사항 감시와 평가 그리고 여론화가 있어야 한다. 인권단체와 대중단체의 결합력을 보면 대중적 힘에 의거한 단체가 적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을 바탕으로 한 속에서 '권리'라는 이름아래에 연대가 가능하다.

<국제>

정보제공과 통보(Communication)의 확대, 지속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

히 관심주제의 전문가(UN 특별보고관)와의 관계를 증진시켜야 한다. 국제조약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작성제출 및 활동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 3-4년간의 국제연대 활동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언론 보도 확보와 국회 외무통일위원회등을 통한 정부의 국제활동을 감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UN 인권위원회 및 연대회의에 정기 참가와 모니터활동 및 보도, 정기적 분석이 되어야 한다.

5. 장기적 계획아래 해야 할 일

국내인권단체간 전략협의모임이 상설화되어야 한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역할이 더 중요하게 나가고 있다. 또한 국제법 및 국제인권법 전문법조인이 늘어나야 한다. 국제인권활동전문가와 인권국제연대 전문가 발굴과 양성훈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인권기구와 절차와 관련한 정보자료 집중과 체계화, 국제연대센터의 설치, 인권협 해외 대표자, 대표단체의 설치등이 과제로 나가고 있다.

안재구씨 공판, 피고7명 증인체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씨 3차공판이 26일 서울형사지법 합의 21부(주심 윤강렬 판사)심리로 열렸다. 검사는 김진국, 안영민, 정화려, 최명준, 유낙진씨를 포함한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여 11월 2일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했다.

◆ 행사 안내 ◆

□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 인권실태 보고 및 토론회

- 일시 : 10월 27일 오후 2시
- 장소 : 종로성당 3층강당
- 참여단체 : 전노대, 외국인노동자 피난처등

□판결의 그늘, 오판을 심판한다(살인혐의 덮어 썼던 김기웅 순경 사건)

- 일시 : 10월 27일 오후 5시
-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
- 주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내부비리제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에 관한 기자 간담회

- 일시 : 10월 28일 오전 11시30분
- 장소 : '참여연대' 사무실
- 주최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내부비리고발자 지원센터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현대판 노예-외국인 취업연수생

'외국인 취업연수생들의 인권침해 실태 토론회' 국가, 자본가, 브로커등에 3중착취 당해

'현대판 노예 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들의 인권 침해 실태'를 알리는 보고대회 및 토론회가 27일 종로성당에서 노동운동가, 종교인, 시민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전노대등 11개단체의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인사말에서 김영대 전노대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자는 국경을 뛰어넘어 계급적 연대를 해왔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국내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세계 어느 곳이든 노동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밝혔다.

김재오씨는 '취업연수노동자 인권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발표에서 "외국인 취업연수생은 한마디로 현대판 노예노동자이다. 이들은 국가, 자본가, 중간 부로커로부터 삼중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과제'란 주제로 발표를 한 윤우현씨도 "나찌의 대학살, 관동대지진이나 징용, 정신대 등 일제의 만행은 바로 외국인의 차별에서 비롯되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결국 역사적 범죄를 낳는다"고 주장하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밝혔다.

제안하였다.
종합토론에서 참석단체들

살인혐의 김기웅순경 사건, 오판 사례 재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열린법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가 매달 1번씩 여는 '열린법정'이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에서 살인누명을 쓰고 13개월을 복역한 김기웅순경 사건을 대상으로 열렸다. 열린법정에는 김기웅순경, 김순경의 누나 김기자씨를 비롯해 사법전문가로 차병직 변호사, 한인섭교수등이 참석했다. 또한 서울형사오 판사, 억울한 재판을 당한 경험을 가진 시민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열린법정은 사건당시 상황을 짚어보면서 지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김씨의 유죄선고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던 피해자 사망시간 추정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감정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무죄추정주의가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심하게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나가지 무죄선방이후 담당경찰관 12명에 대한 김기웅씨의 고소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은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김순경은 "이번 일을 겪은 뒤 어떤 사건이 발생하

는 스중간브로커 회사인 동양인력개발을 고발하고, △노동부, 법무부등 관계기관을 항의방문하며,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국민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캠페인 사업등을 계획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면 당사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들어보려고 노력하게 되었다"면서 변화상황을 말했다. "현재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을 앓고 있다. 곧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이번 열린 법정에서는 김기웅씨를 무죄석방케한 진범 서진현씨의 담당 판사가 참석해 "김기웅씨의 사건을 계기로 법원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관등이 모여 평가했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자리의 의의를 평가했다. 또한 형사소송경험이 있는 시민들이 참석해 수사과정, 재판과정의 불공정성과 억울함을 알리는 자리가 되기도 있다. 재판을 진행중인 김삼덕씨는 모든 재산을 다날랐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검사에게 매달린 사건이 너무 많다. 사법계가 너무도 보수적이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인섭(경원대 법학)교수는 "열린 법정"은 보다 민주적 인, 책임을 지는 인권옹호의 사법부를 만들어 가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총평을 내선했다.

우리시대 인권상황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인권하루소식> 합본2호』 발간

101호(94년 2월 5일)부터 200호(94년 7월 7일)까지의 <인권하루소식>을 책으로 묶어 발간했습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오재식 선생님의 '국제화와 인권운동의 과제'를 머리글로 실었습니다. 총 316쪽의 합본2호에는 관련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주제별, 사건별 색인을 달았습니다.

합본2호 가격은 1만원입니다.

합본1호와 동시에 구입하실 경우에는 1만5천원입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구독료를 10월 현재 10만원 이상 내주신 분에게는 기증하고 있으며, 현재 우송중에 있습니다.

지상중계-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침해실태 보고대회

외국인 취업연수노동자 인권실태와
개선방향-김재오(외국인노동자피난처)

취업연수생의 수입 배경

91년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할 무렵부터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하여 이중정책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해왔다. 즉, 국내 경기가 활발하면 음성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인력수입을 활성화 하고 불경기이면 외국인 노동자를 추방하였다. 이 방법은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많은 유사점이 있다. 최근에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임금체불이 심각해지고 이들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회 여론이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와 중소기업체에서는 저임금의 구조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 면에서 현실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필요로 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저임금의 구조에서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취업연수생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93년 11월 26일 정부산하 법무부, 노동부, 상공부, 경제기획원 4개 부처는 94년 5월까지 '해외취업연수생' 2만명을 10개국에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94년 말까지 1만명의 취업연수생을 추가로 들어오겠다고 발표하고 있어 올해만해도 총 3만명의 외국인 취업연수생이 새로 입국하게 된다.

취업연수생은 1년동안 기술연수 명목으로 왔지만 이들에게는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가 없다. 산재를 당해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열악한 조건에 있는 취업연수생들은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탈출을 시도하게 된다.

취업연수생의 수입경로

취업연수생은 우선 자국에서 한국으로 가기위해 자국 인력회사를 찾는다. 나라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 이들 인력회사는 자국정부와 긴밀한 협조 아래 한국의 인력회사와 연결되어있다. 취업연수생은 한국으로 올 때 인력회사에게 상당한 수수료(1800불)를 낸다. 한편, 국내 인력회사는 국내기업에게 노동자를 알선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 계속 감시하는 역할도 대행한다. 인력회사는 공장으로부터 임금을 직접 받아 80%는 본국으로 송금하고 20%는 출국 때까지 보증금 명목으로 관리한다. 현재

한국에는 23개 인력회사(브로커)가 있고 이들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산하로 편제되어 있다. 연수생 수입을 전담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8월말까지 입국한 2만명의 수입액가로 50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얻었다. 그리고 인력회사들은 보증금으로 거두어들인 돈 1백여억원을 예치하여 이자수익까지 올리고 있다.

취업연수생의 인권실태

-정시간,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환경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정한 취업연수생의 노동조건은 "월급여 210-260불, 일 8시간(주44시간)노동에 숙식제공, 산재시 상해보험 적용, 취업전 교육을 실시, 연수기간은 1년이며 1년까지 재연장" 등의 조건이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현지광고를 통해서 월급여 450-500불, 기술습득 가능, 숙식제공, 일 8시간(주 44시간)노동, 생필품 의료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고 알고 왔으나 한국 도착후 물거품같은 꿈에서 깨어난다. 실제 이들이 한국에서 노동하고 받는 댓가란 월급 210불, 일 8-12시간 노동에 월급은 210불에 불과하다. 물론 생필품은 제공받지 못하고 회사밖 외출도 금지당한다. 또한 임금은 매월 인력회사가 공장으로부터 직접 받아 80%는 본국으로 송금, 20%는 출국때까지 보증금으로 보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고 받으며, 매 월급 11불씩을 인력관리비로 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조건에서 기술교육은 없고 단지 한국말로 작업지침에 관한 설명을 들을 뿐이다.

-감시 감금노동

인력회사는 연수생의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떼어간 돈으로 무선안테나가 달린 차량과 무전기를 구입하여 취업연수생을 밤낮없이 감시한다. 공장안에서도 연수생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가능한 대문쪽으로는 못오게 한다. 고국에 편지를 쓰면 이것은 회사 쓰레기통으로 던져지고 전화 또한 쓸 수 없다. 여권은 공항에서부터 압수당한다. 노동부는 외국인 취업연수생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연수생이 이탈할 경우 "해당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과 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고 인력송출업체는 송출권을 박탈하며, 해당 송출국가에도 연수생 배정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매일경제 94.10.10).

이상은 정부가 취업연수생 제도에 적극적 관심을 얼마만큼 쏟고 있는

지 알 수 있는 발언이다.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과제'

-윤우현(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취업연수생제 폐지
현행법상 외국인 취업연수생은 노동자가 아니고 출입국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말이 기술을 배우러 온 연수생일뿐 공장의 생산라인에 투입되어 하는 일은 국내 노동자들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취업연수생이라는 이유로 노동법으로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로서는 사실상 무권리자이다. 또한 그들은 기업주와 중간인력회사가 정해놓은 일방적인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을 해야만 한다. 임금도 법적 임금이 아니라 연수비용이다. 따라서 임금체불이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어 있는 감금, 감시 노동상태도 근로 감독할 수 없다. 외국인 취업연수생이나 불법체류노동자 등 어떤 형태이든 외국인 인력수입은 노동자 자격을 주는 노동법 테두리 내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과 같이 출입국관리법 아래놓여 있는 편법적 무자격 노동자를 양성하는 노동력 수입은 금지되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에서 이주노동자로 개념 확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한 자는 국경을 넘어왔다고 해도 노동자임은 분명하다. 이들은 이주라는 형식으로 자본을 따라 이동한다. 이들에게는 노동권은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에 따른 주거권, 결혼권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제111호 조약에서 이주 노동자의 고용과 직업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 97, 66, 143호 조약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해 근로조건, 기회와 처우의 균등을 보장하고 있고 그 가족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국내 노동조합의 역할, 외국인 노동자들과 연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조합의 문을 개방하여 노조규약내 이들을 국내 노동자들과 동등하게 처우하도록 해야한다. 이에따라 조합원 의식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 설명이 병행되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지역 단위에서도 이들의 노조가 결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전경련은 일차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고문방지협약 가입결정, 알고보니 눈 가리고 아웅식 '개인의 청원권 인정' 조항등 핵심조항 유보

정부가 지난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 편집자 주) 가입 동의안"에 핵심 조항에 대한 유보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이 28일 확인되었다.

중요한 개인청원권 유보

정부는 이 동의안에서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정부의 확고한 인권보장 의지를 보이고, 인권존중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고양하며, 인권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면서도 "이 협약의 제21조(국가간 문제제기권) 및 제22조(개인의 청원권 인정)의 선택조항은 금번에는 수락하지 아니함"이라고 하여 가장 중요한 조항을 뺀 채로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정부의 의사를 밝혔다.

고문방지협약은 48년에 발표된 유엔의 세계인권선

언 제5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고문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잔혹하고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처벌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7조(B 규약) "어느 누구도 고문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고문을 받지 않고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받아서는 안된다"

협약을 위한 기초는 75년 12월 9일 제3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로부터의 모든 사람의 보호에 관한 선언"으로 마련되어 9년간의 국가간의 협의 끝에 84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이 협약의 약속에 따라 20개국이 가입한 지난 87년 6월 26일 정식 발효되었다(94년 6월 1일 현재 82개

국이 가입).

이 협약은 전문 및 본문 3부 33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협약의 전문에서 유엔헌장의 원칙 가운데에 연인류의 평등 및 불가양의 권리의 승인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로 되어 있는 것, 이들의 인권이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한 것임을 밝히고 있고, 유엔헌장, 특히 제55조에 따른 국가의 의무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 및 준수의 촉진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유어곡절 끝에 가입결정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6 공화국 시절부터 이 협약의 가입 의사를 밝혔고, 특히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한승주 외무부 장관이 지난해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열렸던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를 포함한 거의 모든 주요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금년(93년)내에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기 위하여 국내절차를 추진중이며, 나아가 이러한 제협약상의 모든 의무를 충실히 준수해나갈 것입니다"라고 국제사회에 약속하였고, 올해 8월 1일부터 26일까지 열

렸던 제46차 인권소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광범한 고문의 개념을 인정하는 본 협약의 가입에 따른 국내법과의 마찰, 국제적인 의무조항의 이행에 따른 부담 등으로 정부 각 부처간에 의견이 대립되어 올 때까지 넘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약가입 따른 국내법제 정비 필요

고문방지협약 가입 동의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하게 되며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이 되면 정식 유래한 것임을 밝히고 있고, 유엔헌장, 특히 제55조에 따른 국가의 의무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 및 준수의 촉진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명분만을 노린 협약가입 이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개인의 청원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당해 국가의 어떠한 개인도 청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협약 가입동의안에 대해서 인권전문가들은 핵심을 뺀 채 가입하였 국제적인 명분만을 얻으려는 기만술책이라는 비난이 높다. 인권단체들도 정부의 이러한 가입동의안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광범하게 논의하고 하고 있다(유보 8월 1일부터 26일까지 열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

제 일 128-10-131017 예금주-서준식
농 협 011-01-404581 예금주-서준식
국 민 015-21-0723-021 예금주-서준식

합세웅신부, 국과수 전 문서분석실장 고발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혐의로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위원장 합세웅, 강기훈 공대위)의 합세웅신부는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55)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죄등으로 28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합 신부는 고발을 통해 1심법정에서 필적의 유사비율을 '계산하고 분석'했다고 증언한 김씨가 변호인의 추궁을 받은 2심에서는 '특정비율은 필적(오랫동안의 경험을 가진) 감정인의 가슴에서' 나온다는 1심과는 모순되는 증언을 한 사실을 밝혔다. 또 합 신부는 세사람의 손에 의해 쓰여진 전민련 업무일지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유서와 동일'하다고 감강해 놓고도 나중에 그 부분을 추궁당하자 여러사람이 썼음을 알고 감정했다고 증언한 점은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강기훈 공대위는 이번 고발이 강기훈씨 사건의 재심을 준비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재심요건이 까다로운 사법절차에서 우선 강기훈씨 유조의 중대한 증거가 허위였음을 밝히는

참여연대, 내부비리제보자 보호법 청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한 발 진전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는 28일 내부자가 비리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부비리제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내부비리제보자 보호법)을 국회에 청원하였다.

공직사회, 민간기업체는 물론 사회단체까지 대상으로 하는 이 법률안은 감사원에 내부비리조사 및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리제보가 있을 경우, 철저한 조사후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사결과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관할 검찰에 고발하

단계를 밟겠다는 것이다. 김형영씨는 지난 91년 서강대학교 옥상에서 분신자살한 김기철씨의 유서필적과 강씨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감정을 함으로써 재판부가 강씨의 유서대필사실을 인정, 유죄를 선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도록 하고 있다. 또 공무원이 비리를 발견하였거나

외무부, 정신대문제 지원 요청서 '지원여부 검토'

「진상조사 촉구, 물질적 보상은 요구 안 해」 기존입장 재확인

외무부는 24일 정신대 문제를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하는데 있어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등, 정대협)에서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청할 경우 지원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정대협에 회신해왔다. 외무부는 정대협이 지난 5일 군대위안부문제와 관련해 김영삼대통령에게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국제중재재판소 제소건은 기본적으로 일본정부와 군대위안부 피해자간의 중재부탁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라며 이와 같이

제의를 받은 경우 이를 고발 및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리척결은 조직내부자의 제보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취지에서 성안된 내부비리제보자 보호법이 시행될 경우 국민들은 자신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들에 대해 보다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부분적으로는 비리의 사슬에서 벗어나 정의의 길을 추구하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밝혔다. 또한 일본의 민간위로금 지급안 반대 및 진상규명을 재촉하는 정대협의 요구에 대해 일본정부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가도록 요구했다고 밝히며, "정부차원에서는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린바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무부는 또한 65년 체결된 한·일간 제협정시 책임자처벌문제는 다루지 않았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우리시대 인권상황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인권하루소식> 합본2호』 발간

101호(94년 2월 5일)부터 200호(94년 7월 7일)까지의 <인권하루소식>을 책으로 묶어 발간했습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오재식 선생님의 '국제화와 인권운동의 과제'를 머리글로 실었습니다. 총 316쪽의 합본2호에는 관련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주제별, 사건별 색인을 달았습니다.

합본2호 가격은 1만원입니다.

합본1호와 동시에 구입하실 경우에는 1만5천원입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구독료를 10월 현재 10만원 이상 내주신 분에게는 기증하고 있으며, 현재 우송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고문방지협약'에서 유보하기로 결정한 조항 (정부의 가입동의안에서 요약)

제21조 · 당사국은 어떤 당사국이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다른 당사국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통보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이를 심리할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음.

· 이 조는 선언한 당사국간에만 적용됨.

제22조 · 당사국은 자기 나라의 관할권 내에 소제하는 개인이 당사국의 협약규정 위반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그 개인 혹은 대리인으로부터 통보를 수리하고 심리할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음.

· 이 조는 선언한 당사국간에만 적용됨.

인권하루소식

94년 11월

(제276호 - 제297호)